

KINU 연구총서 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 전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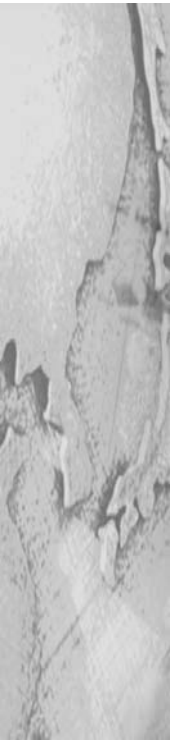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 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0-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ISBN 978-89-8479-562-4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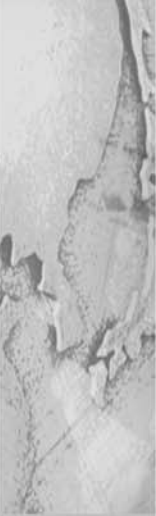
가 격 ₩8,5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인권의식의 개념 및 선행연구	7
1. 인권의식 개념	9
2. 북한 인권의식 선행연구	10
3. 인권의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14
4. 북한당국의 인권관	18
III.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21
1. 실태조사 개요	23
2. 실태조사 내용 분석	32
3. 기타 인권사안에 대한 인식	84
4. 소결	95
IV.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신소청원 사례를 중심으로	101
1. 신소청원법 제정 배경과 신소청원 과정	103
2. 신소청원 피면담자 개요	112
3. 신소청원 실상과 특징	116

V. 결론	149
참고문헌	153
<부록 1> 북한인권실태 기초조사 설문	157
<부록 2> 북한주민의 인권인식 설문	163
<부록 3> 북한주민의 신고청원행위 설문	17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9

표 목 차

<표 III-1> 설문응답자의 기본정보	24
<표 III-2>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단련대 수감 경험 여부	26
<표 III-3>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교화소 수용 경험 여부	28
<표 III-4>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 여부	29
<표 III-5> 면담조사자의 기본정보	31
<표 III-6> 북한에서 ‘인권’ 용어 인지 여부	32
<표 III-7>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인권교육 경험 간 상관성	34
<표 III-8>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성분차별 경험 간 상관성	34
<표 III-9>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재판 경험 간 상관성 ...	34
<표 III-10>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한국방송 시청중 단속 경험 간 상관성	34
<표 III-11>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휴대전화 사용발각 경험 간 상관성	35
<표 III-12>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 여부	35

<표 III-13> 북한인권교육 경험과 성분차별 경험 간 상관성	37
<표 III-14> 북한인권교육 경험과 한국방송 시청발각 경험 간 상관성	37
<표 III-15> 북한인권교육 경험과 휴대전화 발각 경험 간 상관성	37
<표 III-16> 북한인권교육 경험 여부(면접설문조사)	38
<표 III-17> 북한에서 받았던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39
<표 III-18> 북한에서 본인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	41
<표 III-19> 북한에서 생활할 때 생각했던 ‘인권’의 의미	43
<표 III-20> 북한에서 ‘우리식 인권’ 용어 인지 여부	45
<표 III-21> 북한 내 생활에 대한 평가	47
<표 III-22> 북한에서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차별(불이익) 경험	50
<표 III-23> 성분(토대) 차별에 대한 인식	52
<표 III-24> 북한 내 남녀평등 인식	54
<표 III-25> 북한 내 장애인 차별 인식	56

표 목 차

<표 III-26> 북한 내 고문 혹은 구타 경험	58
<표 III-27> 보안원·보위원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	60
<표 III-28> 공개처형 목격 경험	62
<표 III-29> 공개처형(총살)에 대한 인식	64
<표 III-30> 정치범수용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6
<표 III-31>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재판 경험 여부	68
<표 III-32>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국민의 기본권리’ 인지 여부	70
<표 III-33> 북한에서 알았던 ‘국민의 기본권리’ 조항(다중응답)	72
<표 III-34> 북한 내 불법행위 처벌 근거	73
<표 III-35> 북한 내 인지 개별법률(다중응답)	75
<표 III-36> 성별에 따른 북한 내 인지 법률(다중응답)	76
<표 III-37> 북한 내 형법책 접근 여부	76
<표 III-38> 불법행위 처리절차 인지도(다중응답)	78
<표 III-39> 성별에 따른 불법행위 처리절차 인지도(다중응답)	78

<표 III-40> 정치범죄 재판 인지 여부	79
<표 III-41> 변호받을 권리 인지 여부	79
<표 III-42>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80
<표 III-43> 법적용상 평등에 대한 인식	81
<표 III-44> 법적용상 불평등 요인	82
<표 III-45> 사회주의노동법상 근로시간 인지 여부	84
<표 III-46> 사회주의노동법상 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85
<표 III-47>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인지 여부	87
<표 III-48> 종교에 대한 인식	89
<표 III-49> 종교적 차별 경험	91
<표 III-50> 평양 종교시설 인지 여부	92
<표 III-51> 종교시설에 대한 인식	92
<표 III-52> 북한 내 지하교회 인지 여부	94
<표 III-53> 사안별 인식 비교	98
<표 IV-1> 헌법에서의 신소와 청원에 관한 규정	108
<표 IV-2> 신소청원 연구 면담대상 자료 (해결/미해결에 따른 분류)	113

표·그림 목 차

<표 IV-3> 신소청원 연구 면담대상 자료 (성별에 따른 분류)	114
<표 IV-4> 신소청원 연구 면담대상 자료 (시기에 따른 분류)	115
<그림 IV-1> 신소청원 단계	111

I. 서론

파악한 「인권이시
신태연구

기존의 북한인권 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 파악 및 분석에 치중하여 왔으며, 이를 근거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 및 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¹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실태조사』²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백서』³ 등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념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주민들의 제반 권리인식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원전 등 북한 문헌상에 나타난 북한당국의 인권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⁴ 실제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인권관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여 왔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북한인권의식 연구는 소수 국내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설문조사 분석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침해지역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개선전략을 구사하여 왔으며, 가장 효율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의식 제고 등 내부의 인권의식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도되는 법치(rule of law)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

1. 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통일연구원, 2009); 오경섭,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 이우영 외, 『북한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3.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4.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2007);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 연구: 대남, 대미,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I
II
III
IV
V

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왔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식조사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주요한 조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 개념을 어떠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010년 국내입국 전체 탈북자에 대한 기초설문을 통해 인권개념 인지 여부와 인권교육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인권관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권리의식을 크게 차별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법치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의식 형성과정상 계층별, 지역별, 성별, 외부정보 접근 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들(공개처형, 여행증제도, 생활총화, 비사회주의 단속, 몸수색, 종교행위 처벌, 공개재판 등)에 대해 탈북 이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출신지역, 학력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대상을 선별하여 탈북 이후 인권관련 인식이 변화된 실태 및 계기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법기관에 의한 조사 및 재판 등을 경험한 탈북자들을 면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법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권리구제의 한 수단으로 북한 헌법에 규정된 ‘신소청원의 권리’가 실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소청원의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해 신소청원의 내용을 분야별(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상 및 계층별(당 간부와 행정 간부, 노동자와 농민, 핵심계층과 비핵심계층), 지역별(평양시와 지방도시,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로 구분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및 형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II. 인권의식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인권의식 개념

‘인권의식(human rights consciousness)’은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권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사안별 인권실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의식조사’⁵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량조사는 인권의식관련-우리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관련 사안에 대한 의식,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인식,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과 대응,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기관별 및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과 대응, 간접적인 차별의 경험, 인권현안 관련-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비정규직 문제관련, 개인정보 보호관련,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인권교육의 실태-인권교육의 경험, 인권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인권실태-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정성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 대응 분야 및 방안,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및 대응방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사회권분야의 과제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의 인권위 통합문제, 제2기 국가인권위

⁵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민인권의식총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가 시급하게 대처할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 의식은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인식, 직접적인 인권 침해 경험 및 대응, 간접적인 인권 침해 경험, 인권 구제 수단에 대한 인식, 인권 구제 기관에 대한 인지 등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 의식은 인권 개념 및 인권 침해 대응에 대한 인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인권은 인간 존엄 차원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써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 인식도 인권 개념에 대한 논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개별 국가들도 인권을 국내법으로 제도화하면서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 관계 현실에서 여전히 자유권과 사회권 중 어떤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인권이 대외 정책의 주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가되기도 한다.

2. 북한 인권 의식 선행 연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북한 인권 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 인권 침해 현황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인권 침해 현황 파악과 함께 부분적인 북한 인권 의식 조사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좋은벗들은 제4차 중국 내 체류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⁶ 2000년 2월 26일~3월 31일(1개월)까지 길림성 연변

과 매하구시, 요녕성 심양시, 흑룡강성 영안시에서 좋은벗들 활동가 7명과 조선족 조사자 20여 명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자 521명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증언기록 278건이 수집되었다. 북한주민들이 바라보는 식량난의 원인 및 해결 전망, 북한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의 폐해 및 시정에 대한 요구 반영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좋은벗들의 북한주민 인권의식조사 주요항목⁷에는 북한 내 가족생활(행방불명된 가족 수와 원인, 식량난 속에서 어린이의 교육문제, 북한주민의 의료실태), 북한 내 경제생활(장마당에 대한 인식과 전망, 장사 경험 유무와 장사품목, 장사할 때 안전원의 단속 경험과 처벌내용), 북한 내 사회생활(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경험과 인식, 여행 중 처벌받은 경험과 처벌내용, 북한에서 도둑, 강도피해 경험과 치안문제에 대한 인식), 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식량난의 원인과 해결과제 및 전망, 식량난과 경제위기의 자체 극복 의지, 식량난 해결 이후 재건되어야 할 분야 인식), 북한사회제도에 대한 인식(북한사회에 대한 만족도, 북한사회에서 개혁되어야 할 경제, 사회제도), 북한난민의 생활(난민의 월경시점과 월경이유, 난민의 귀향의사와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좋은벗들의 2000년 탈북자조사는 북한주민 인권의식조사라기보다는 북한의 사회경제 실태조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좋은벗들이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을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실패와 더불어 북한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

6-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p. 21.

7- 좋은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I
II
III
IV
V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 북한인권백서』에 북한인권의식 조사항목을 포함하였다. 동 조사는 2000년 이후 입국자 100명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의식 설문조사항목⁸은 ‘인권’ 또는 ‘우리식 인권’ 용어 인지 여부,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지 내용, 인권교육 혹은 비슷한 교육 경험 여부, “이것도 인권의 삶인가?” 회의 경험 여부,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북한 내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한 사안,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 대처양식, 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남북분단 상황이 북한주민의 삶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여부,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여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규범 및 유엔총회 결의안 등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파급효과 인식, 북한 내 정부기관의 행정 및 사회생활 법 실행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항목(연령, 성, 출신지역, 직업, 학력, 당원 여부, 결혼 여부)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입국 탈북자 조사를 북한주민 의식과 동일시 하는 것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각 설문항목에 대한 단순빈도 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개념이 미성숙 되어 있고⁹ 침해의식도 미흡¹⁰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삶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는 점을 들어, 향

⁸ 대한변호사협회, 『2008년 북한인권백서』, pp. 39~44

⁹ 북한인권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인권’ 혹은 ‘우리식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경우(‘예’ 28명, ‘아니다’ 69명) 인권교육 혹은 유사한 교육 경험(‘예’ 7명, ‘아니오’ 92명, ‘모름’ 1명).

¹⁰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0%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후 외부요인에 의해 인권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¹¹ 설문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 ‘표현의 자유’이며,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김정일 정권 교체라고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의식조사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인권의식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외부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북한인권 현황 파악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다.¹²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용역연구는 주로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대한 침해인식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사의 주요항목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관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¹¹ “이것도 인간적인 삶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63%)를 가진 적이 있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 -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삶’(23), 생존권 위협(12), 이동여행의 자유 제한(11), 성분 차별(5), 사회적 감시(3), 연좌제(3), 공개처형(2) 정치범수용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채롭다는 지적 - 이유를 일반주민들과 소개되어 있어 인권참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화가 나지만 대부분 신세한탄이나 하는 정도로 인내, 잘못 대처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뇌물을 써서 인권침해 상황 모면

¹²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2004),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2005),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직업실태를 중심으로(2007),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2008),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2009), 북한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2009).

I
II
III
IV
V

3. 인권의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홍우택은 개인의 인권의식¹³ 성장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자각” 혹은 “나의 삶이 사회구조적 제한이 없다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상태¹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에 대한 검토차원에서 국가의 체제변화와 인권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체제변화의 주요변수로 주로 경제적·정치적 요인을 다루어 왔으며, 이는 사례연구에서 인권의식에 대한 개념의 조작화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변동 및 체제변화가 근본적으로 정당성의 위기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위기의식이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할 때, 인권의식의 자각과 확산이 정치경제적 요인과 체제변화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인권문제는 여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에 부수하는 요인으로 작동¹⁵하게 된다.

인권의식 형성 및 발전의 개념을 근대화, 민주화, 체제전환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근대화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과정이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권위주의적 문화 및 제도 등으로부터 변화를 주도하는 중산층 세력의 장은

¹³-Betty Reardon, “Human Rights Learning: Pedagogies and Politics of Peace” (UNESCO, 2009).

¹⁴-홍우택 외,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외교의 방향』 (통일연구원, 2009), p. 445.

¹⁵-박재복, “EU의 대북인권외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문제의 연계,”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근대화의 전제조건이며, 정치발전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정치발전을 위해 경제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산층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근대화과정에서 경제적 성장은 국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기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식을 형성시키며 점차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로 발전된다.¹⁶ 최소한의 경제적·물질적 안정과 성취가 달성되면 점차 인간은 정신적·심미적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기본권 실현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화이론은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 등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의식이나 욕구는 경제적 풍요를 전제로 발전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권보호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⁷

민주화이론은 제3세계 권위주의 체제들의 민주화과정에 기초하여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민주화 및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은 정치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사회비판 및 민주화 요구, 인권의식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사회주의 체제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효율성의 저하로 상대적 우위를 상실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게

¹⁶-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에 따르면,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물질적 풍요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급격히 변화시키게 된다.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홍우택 외,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 외교의 방향』, p. 51 재인용.

¹⁷-위의 책.

I
II
III
IV
V

되었다. 서방과의 교류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강압적인 통제와 탄압이 지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체제 개혁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과정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부각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서방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이 초기에는 자유선거 실시와 국가기구의 개혁 등 정치개혁으로 이루어지다가 실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자, 특정국가 내부의 사회성원들의 자체적인 개혁요구가 형성되지 않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역량형성을 통해 특정국가의 사회변혁을 추구한다는 서방의 입장은 주로 지원을 통해 지역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역량을 형성해나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역량형성과정은 기존 시민사회의 토대가 남아있는 경우와 시민사회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경우 간에 차이를 보인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는 법률교육 등을 통한 세력화(legal empowerment)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법치확립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등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 역량형성을 위해서는 빈곤층이나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권리교육이 필요하다.

서방국가들은 특정지역에서 시민사회 형성 차원에서 외부의 정보를 유입시켜주기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여 왔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는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 독재지역이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 혹은 미국의 소리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동향과 내부의 움직임 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에

망명체류 중인 특정국가의 지도자들을 지원하거나 내부에서 활동하는 반체제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및 물적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외부세계의 노력은 특정사회 내의 사회변화를 주도할 지도자들을 형성시켜 나가기 위한 것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사회를 주도할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중차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형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사회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외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나게 된다. 특히 외부방송, 전화, 인터넷 등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정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가 보다 용이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또한 사회 내부의 통신 및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주민이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특정국가의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적교류를 활용하여 왔다.

I

II

III

IV

V

4. 북한당국의 인권관

사전상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¹⁸로 규정되었다. 1970년 『정치용어사전』은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인권의 물질적 조건을 들어 발전권을 강조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권주체를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권리’¹⁹로 정의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참다운 인권은 인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자주적 권리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은 인권개념은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권리가 인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¹

북한당국의 인권관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식 인권’²²은 집단주의

18.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p. 213,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36에서 재인용.

1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920,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37에서 재인용.

20.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21. “공정한 인권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7년 3월 25일;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7년 8월 17일,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38에서 재인용.

22. 최의철 외, 『북한인권 종합대책개발』 (통일연구원, 2004), p. 61.

적 차원에서 국가주권과 자결권을 강조하고, 서방식 인권개념의 일방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역설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자본주의체제 내의 인권상황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브로쵸야민주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²³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생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체 인민이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가는 집단주의 사회이다.”²⁴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집단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반대로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은 무력하며 그러한 개인의 삶은 본질에서 짐승의 삶과 같다.”²⁵

북한은 인권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정치문화를 보여 왔다. 북한은 유교적 전통과 사회주의 체제 특성이 혼합된 권위주의 국가로 국제적

²³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5.

²⁴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83.

²⁵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2월호 (1990), p. 96;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인 규범과 절차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이다.²⁶ 법의 지배라는 전통이 미약하고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적인 조치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법보다는 윤리가 중요시되는 정치문화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을 법과 제도적 보장보다는 정치지도자의 관용과 시혜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인권관으로 인해 북한에서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처벌하고 사회주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⁷

²⁶ 최의철, 『북한인권 종합대책개발』, p. 67.

²⁷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Ⅲ.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 방법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 전원(1083명)에 대한 기초설문을 통해 인권개념 인지 여부 및 인권교육 참여 여부,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차별 경험, 구금시설 수용 경험, 고문 구타 경험, 성폭력, 강제추방, 인신매매, 종교활동 처벌, 장마당 단속 경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험, 통신자유 침해(휴대전화 사용 금지) 경험 등 21개 항목에 대한 기초설문을 실시하였다. 기초설문에는 조사대상의 출신지역, 성별, 연령, 학력 등이 포함된다.

기초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북한에서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침해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로 본인이나 가족이 구금시설 수용 경험이 있거나 북한 내 성폭력, 탈북과정에서의 중개인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의 인권침해 경험자를 중심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북한당국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여 단속하고 처벌하는 사안에 대해 실제 조사과정과 처벌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인식변화가 있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자에 대한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북한 내에서의 법 인식 및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입국 직후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탈북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I

II

III

IV

V

새로운 정보습득에 따른 의식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나. 조사대상자 특성

(1) 기초설문조사

북한인권 기초설문조사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총 1,055명으로 남성 20.7%, 여성 79.3%로 구성되어 있다.²⁸ 연령은 30대 30.2%, 20대 28.5%, 40대 21.5%, 10대 9.2%, 50대 8.0%, 60대 2.5%, 70대 0.3%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64.2%로, 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가 76.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29.1%가 한국에 이미 입국해 있는 가족이 있으며, 23.0%가 탈북으로 인한 강제송환의 경험이 있다.

표 III-1 설문응답자의 기본정보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55	100
성별	남	218	20.7
	여	837	79.3
출생년도	35년-39년	3	0.3
	40년-44년	7	0.7
	45년-49년	19	1.8
	50년-54년	25	2.4
	55년-59년	5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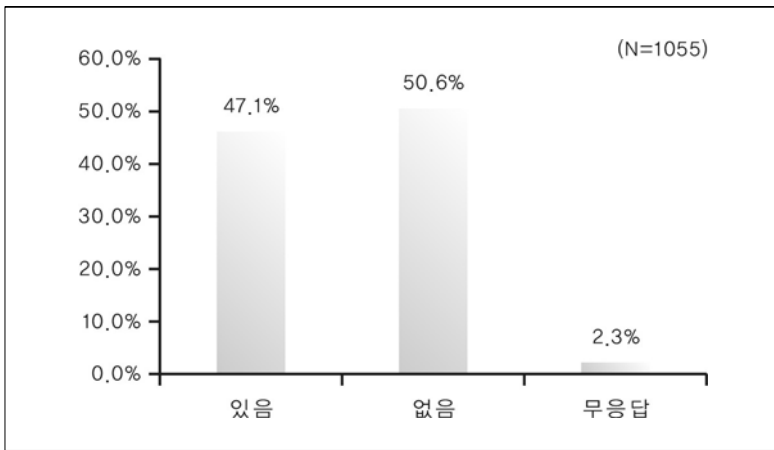
²⁸ 전체 설문대상은 1,083명이었으나,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응답은 1,055명이다.

	60년-64년	81	7.7
	65년-69년	146	13.8
	70년-74년	161	15.3
	75년-79년	157	14.9
	80년-84년	138	13.1
	85년-89년	162	15.4
	90년-94년	81	7.7
	95년-99년	16	1.5
학력	무학	21	2.0
	소학교	54	5.1
	고등중학교	806	76.4
	전문대	115	10.9
	4년제	59	5.6
출신지역	함경북도	677	64.2
	함경남도	75	7.1
	양강도	176	16.7
	자강도	7	0.7
	평안북도	15	1.4
	평안남도	51	4.8
	평양특별시	8	0.8
	강원도	23	2.2
	황해북도	11	1.0
	황해남도	12	1.1
국내입국 가족	있음	307	29.1
	없음	748	70.9
강제송환 경험	있음	243	23.0
	없음	812	77.0

I
II
III
IV
V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노동단련대에 수감 경험이 있는 비율은 47.1%, 그렇지 않은 비율은 50.6%, 무응답은 2.3%이다. 노동단련대 수감 경험은 남한입국 가족 존재 여부와 강제송환 경험 여부와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대부분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왔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표 III-2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단련대 수감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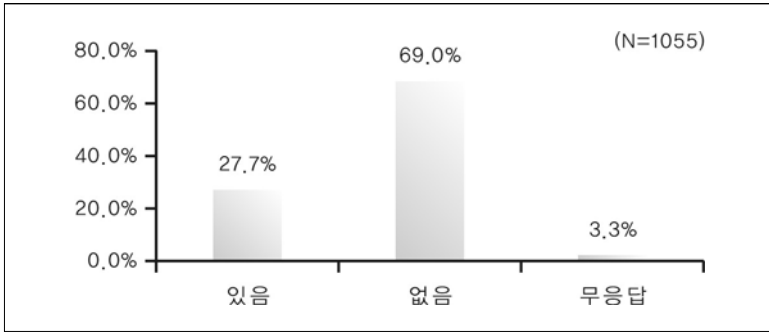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47.1	50.6	2.3		전체		47.1	50.6	2.3	
성별	남	52.8	45.9	1.4	p=0.132	학력	무학	47.6	47.6	4.8	p=0.733
	여	45.6	51.9	2.5			소학교	44.4	55.6	0	
35년-39년		66.7	33.3	0	고등중학교		46.9	50.7	2.4		
40년-44년		42.9	42.9	14.3	전문대		46.1	50.4	3.5		
45년-49년		42.1	52.6	5.3	4년제		54.2	45.8	0		
50년-54년		32.0	64.0	4.0	출신지역	함경북도	49.6	48.4	1.9	p=0.239	
55년-59년		39.0	52.5	8.5		함경남도	44.0	50.7	5.3		
60년-64년		38.3	59.3	2.5		양강도	42.0	55.1	2.8		
65년-69년		56.8	42.5	0.7		자강도	42.9	42.9	14.3		
70년-74년		52.2	44.7	3.1		평안북도	46.7	53.3	0		
75년-79년		50.3	47.8	1.9		평안남도	41.2	56.9	2.0		
80년-84년		47.1	52.2	0.7		평양특별시	0	100	0		
85년-89년		43.8	53.7	2.5		강원도	47.8	52.2	0		
90년-94년		40.7	59.3	0		황해북도	54.5	45.5	0		
95년-99년		43.8	56.2	0		황해남도	50.0	50.0	0		
국내입국가족	있음	53.7	44.0	2.3	p=0.020	강제송환경험	있음	80.7	17.7	1.6	p=0.000
	없음	44.4	53.3	2.3			없음	37.1	60.5	2.5	

본인이나 가족이 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중 수감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7%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69.0%, 무응답은 3.3%이다. 교화소 수감 경험도 강제송환 경험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후 한국입국 가족 존재 여부는 $p < .05$ 수준에서는 이 둘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으나 $p < .1$ 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교화소 수용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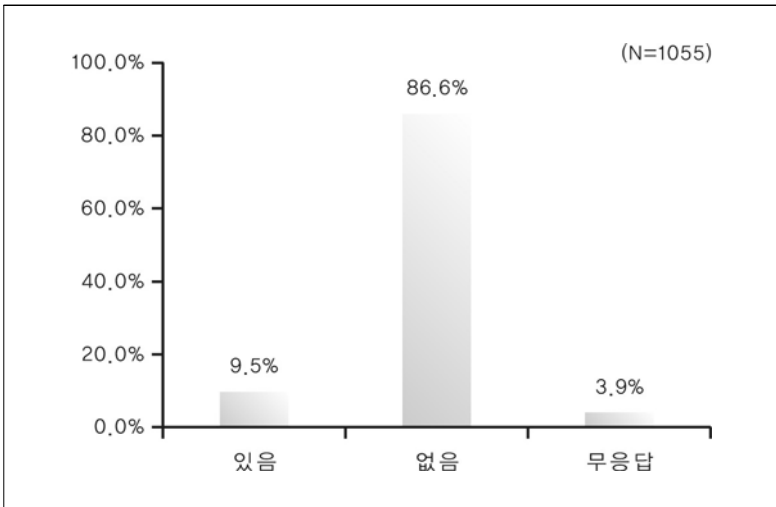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27.7	69.0	3.3		전체		27.7	69.0	3.3	
성별	남	27.1	69.3	3.7	p=0.931	학력	무학	38.1	52.4	9.5	p=0.203
	여	27.8	68.9	3.2			소학교	38.9	61.1	0	
출생년도	35년-39년	0	66.7	33.3	고등중학교		27.0	69.6	3.3		
	40년-44년	57.1	42.9	0	전문대		27.8	67.8	4.3		
	45년-49년	26.3	68.4	5.3	4년제		22.0	76.3	1.7		
	50년-54년	40.0	60.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30.1	66.9	3.0		
	55년-59년	40.7	49.2	10.2		함경남도	24.0	69.3	6.7		
	60년-64년	25.9	69.1	4.9		양강도	23.9	73.3	2.8		
	65년-69년	30.1	67.1	2.7		자강도	14.3	85.7	0		
	70년-74년	27.3	68.3	4.3		평안북도	20.0	73.3	6.7		
	75년-79년	28.0	70.1	1.9		평안남도	19.6	74.5	5.9		
	80년-84년	26.8	71.0	2.2		평양특별시	0	100	0		
	85년-89년	22.8	74.1	3.1		강원도	21.7	73.9	4.3		
90년-94년	22.2	76.5	1.2	황해북도		27.3	72.7	0			
95년-99년	25.0	75.0	0	황해남도		50.0	50.0	0			
국내입국가족	있음	32.2	65.5	2.3	p=0.065	강제송환경험	있음	39.1	56.8	4.1	p=0.000
	없음	25.8	70.5	3.7			없음	24.3	72.7	3.1	

본인이나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경우는 9.5%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86.6%, 무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 수감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6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타나며, 출신지역별로는 국경지역보다 평안남도과 황해남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함경북도 출신이며 타 지역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단순비율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수감 경험은 연령과 강제송환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II-4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 여부



- I
- II
- III
- IV
- V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9.5	86.6	3.9		전체		9.5	86.6	3.9	
성별	남	8.3	86.7	5.0	p=0.501	학력	무학	0	85.7	14.3	p=0.142
	여	9.8	86.6	3.6			소학교	13.0	83.3	3.7	
출생년도	35년-39년	0	100	0	p=0.000		고등중학교	8.8	87.2	4.0	
	40년-44년	28.6	71.4	0			전문대	12.2	85.2	2.6	
	45년-49년	26.3	68.4	5.3		4년제	13.6	84.7	1.7		
	50년-54년	16.0	84.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10.2	85.7	4.1	
	55년-59년	25.4	66.1	8.5			함경남도	8.0	85.3	6.7	
	60년-64년	11.1	85.2	3.7			양강도	6.8	91.5	1.7	
	65년-69년	8.9	87.0	4.1			자강도	0	100	0	
	70년-74년	13.7	80.7	5.6			평안북도	6.7	86.7	6.7	
75년-79년	8.3	89.2	2.5	평안남도	15.7		80.4	3.9			
출생년도	80년-84년	3.6	93.5	2.9	평양특별시	0	100	0			
	85년-89년	5.6	89.5	4.9	강원도	4.3	91.3	4.3			
	90년-94년	2.5	96.3	1.2	황해북도	9.1	81.8	9.1			
	95년-99년	6.2	93.8	0	황해남도	16.7	83.3	0			
국내입국가족	있음	9.4	87.6	2.9	p=0.587	강제송환경험	있음	11.5	79.4	9.1	p=0.000
	없음	9.5	86.2	4.3			없음	8.9	88.8	2.3	

(2) 인권의식 면접설문조사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조사는 2009년과 2010년 인권침해 면접조사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면접설문조사 대상자는 82명으로 여성 56명(68.3%), 남성 26명(31.7%)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대는 30대 42.7%, 20대 22.0%, 40대 17.1%, 60대 6.1%, 10대 6.1%, 50대 3.7% 순이다. 출신지역별로는 함경북도 53.7%, 양강도 19.5%, 함경남도 9.8%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별로는 69.5%인 고등중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경험자는 24.4%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면담조사자의 기본정보

		사례수(명)	비율(%)
전체		82	100
성별	남	26	31.7
	여	56	68.3
출생년도	35년-39년	2	2.4
	40년-44년	1	1.2
	45년-49년	4	4.9
	55년-59년	3	3.7
	60년-64년	1	1.2
	65년-69년	13	15.9
	70년-74년	21	25.6
	74년-79년	14	17.1
	80년-84년	9	11.0
	85년-89년	9	11.0
출신지역	90년-94년	5	6.1
	무학	1	1.2
	소학교	8	9.8
	고등중학교	57	69.5
	전문대	10	12.2
출신지역	4년제	6	7.3
	함경북도	44	53.7
	함경남도	8	9.8
	양강도	16	19.5
	자강도	2	2.4
	평안남도	4	4.9
	평안북도	3	3.7
	강원도	2	2.4
평양특별시	3	3.7	
구금시설 경험	있음	20	24.4
	없음	62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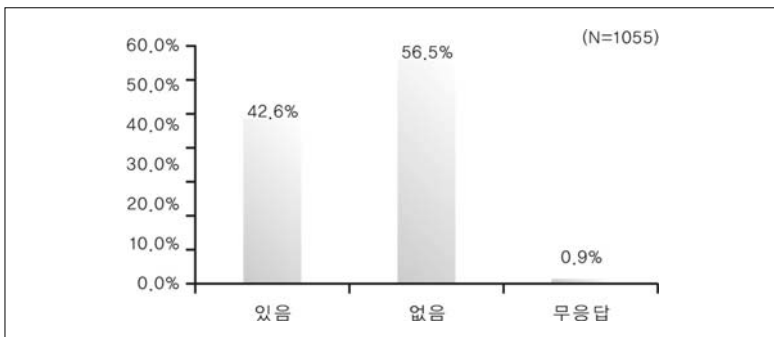
I
II
III
IV
V

2. 실태조사 내용 분석

가. 인권개념 접근여부 및 인식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6%, ‘모른다’ 56.5%, ‘무응답’ 0.9%로 나타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2008년 대한 변협조사 28%에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어떠한 경로로 ‘인권’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법기관 조사과정에서 법 일군들을 통하거나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가 서방의 북한인권 공세를 비판하는 경우를 통해서인 경우도 발견된다. ‘인권’ 용어를 접한 비율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인권’ 용어를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별,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혹은 나이가 많을수록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입국 가족 여부 및 강제송환 경험유무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III-6 북한에서 ‘인권’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42.6	56.5	0.9		전체		42.6	56.5	0.9		
성 별	남	52.3	46.8	0.9	p= 0.005	학 력	무학	9.5	90.5	0	p= 0.000	
	여	40.0	59.0	1.0			소학교	20.4	77.8	1.9		
출 생 년 도	35년-39년	66.7	33.3	0	p= 0.088	출 신 지 역	고등중학교	41.6	57.3	1.1		p= 0.743
	40년-44년	57.1	42.9	0			전문대	53.0	47.0	0		
	45년-49년	52.6	47.4	0			4년제	67.8	32.2	0		
	50년-54년	52.0	48.0	0			함경북도	41.2	58.1	0.7		
	55년-59년	50.8	47.5	1.7		함경남도	44.0	54.7	1.3			
	60년-64년	42.0	58.0	0		양강도	42.6	55.7	1.7			
	65년-69년	47.3	52.7	0		자강도	14.3	85.7	0			
	70년-74년	45.3	54.0	0.6		평안북도	60.0	40.0	0			
	75년-79년	38.9	59.2	1.9		평안남도	41.2	56.9	2.0			
	80년-84년	50.0	50.0	0		평양특별시	50.0	50.0	0			
	85년-89년	34.6	63.6	1.9		강원도	52.2	47.8	0			
	90년-94년	27.2	71.6	1.2		황해북도	72.7	27.3	0			
95년-99년	37.5	56.2	6.2	황해남도	58.3	41.7	0					
국내 입국 가족	있음	45.0	54.4	0.7	p= 0.517	강제 송환 경험	있음	42.4	57.2	0.4	p= 0.555	
	없음	41.6	57.4	1.1			없음	42.6	56.3	1.1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인권교육 경험 여부 간의 상관성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권’ 용어 인지 여부와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인권’ 용어 인지 여부와 재판 경험 여부, ‘인권’ 용어 인지 여부와 손전화 단속, ‘인권’ 용어 인지 여부와 한국방송시청 발각 경험 여부, ‘인권’ 용어 인지 여부와 휴대전화 사용발각 경험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

I
II
III
IV
V

●표 III-7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인권교육 경험 간 상관성

인권 단어 들음	인권교육 경험 여부			p***
	있음	없음	무응답	
있음(n=449)	25.4%	71.9%	2.7%	p= 0.000
없음(n=596)	0.8%	98.8%	0.3%	

●표 III-8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성분차별 경험 간 상관성

인권 단어 들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p***
	있음	없음	무응답	
있음(n=449)	44.3%	53.2%	2.4%	p= 0.000
없음(n=596)	24.5%	74.3%	1.2%	

●표 III-9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재판 경험 간 상관성

인권 단어 들음	재판 경험 여부			p***
	있음	없음	무응답	
있음(n=449)	36.5%	60.8%	2.7%	p= 0.000
없음(n=596)	27.3%	71.0%	1.7%	

●표 III-10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한국방송 시청중 단속 경험 간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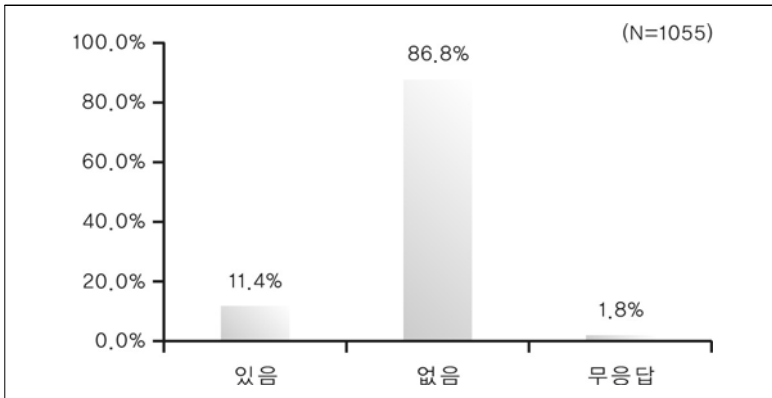
인권 단어 들음	한국방송 시청하다 발각된 경험 여부			p***
	있음	없음	무응답	
있음(n=449)	20.9%	77.5%	1.6%	p= 0.000
없음(n=596)	8.1%	89.9%	2.0%	

● 표 III-11 ‘인권’ 용어 인지 경험과 휴대전화 사용발각 경험 간 상관성

휴대전화 사용하다 발각된 경험 여부	있음	없음	무응답	p***
인권 단어 들음				
있음(n=449)	21.6%	77.5%	1.6%	p=0.000
없음(n=596)	8.1%	89.9%	2.0%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한변협의 7%에 비해서는 높으나, 아직도 북한주민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인권’ 용어 인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경우가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력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표 III-12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 여부



- I
- II
- III
- IV
- V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11.4	86.8	1.8		전체	11.4	86.8	1.8			
성별	남	16.5	80.7	2.8	p=0.011	학력	무학	4.8	95.2	0	p=0.018	
	여	10.0	88.4	1.6			소학교	5.6	90.7	3.7		
출생연도	35년-39년	33.3	66.7	0	p=0.198		고등중학교	10.4	87.7	1.9		p=0.607
	40년-44년	14.3	71.4	14.3			전문대	14.8	83.5	1.7		
	45년-49년	10.5	89.5	0		4년제	25.4	74.6	0			
	50년-54년	20.0	80.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10.0	88.2	1.8		
	55년-59년	11.9	84.7	3.4			함경남도	14.7	84.0	1.3		
	60년-64년	11.1	88.9	0			양강도	12.5	85.8	1.7		
	65년-69년	8.2	91.1	0.7			자강도	0	100	0		
	70년-74년	13.0	84.5	2.5			평안북도	26.7	73.3	0		
	75년-79년	12.1	85.4	2.5			평안남도	13.7	80.4	5.9		
	80년-84년	13.0	87.0	0			평양특별시	12.5	87.5	0		
	85년-89년	8.0	87.7	4.3			강원도	21.7	78.3	0		
	90년-94년	11.1	88.9	0			황해북도	9.1	90.9	0		
95년-99년	18.8	81.2	0	황해남도	8.3		91.7	0				
국내입국가족	있음	10.4	87.3	2.3	p=0.635		강제송환경험	있음	9.5	87.7	2.9	p=0.214
	없음	11.8	86.6	1.6				없음	11.9	86.6	1.5	

인권교육 경험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한국방송 시청 혹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된 경험 여부이다.

● 표 III-13 북한인권교육 경험과 성분차별 경험 간 상관성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인권교육 경험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n=120)	47.5%	50.8%	1.7%	p= 0.000
없음(n=916)	30.7%	67.7%	1.0%	

● 표 III-14 북한인권교육 경험과 한국방송 시청발각 경험 간 상관성

한국방송 시청하다 발각된 경험 여부 인권교육 경험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n=120)	16.7%	81.7%	1.7%	p= 0.000
없음(n=916)	13.1%	85.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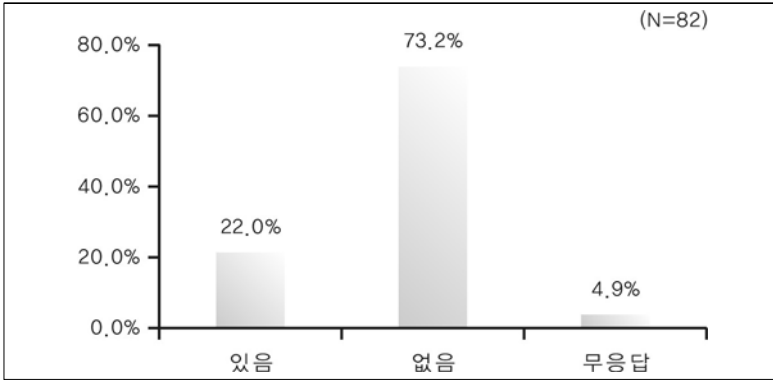
● 표 III-15 북한인권교육 경험과 휴대전화 발각 경험 간 상관성

휴대전화 사용하다 발각된 경험 여부 인권교육 경험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n=120)	24.2%	70.0%	5.8%	p= 0.000
없음(n=916)	13.1%	84.2%	2.7%	

면접설문조사의 경우 기초설문조사에 비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22.0%, 없는 경우 73.2%, 무응답 4.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 인권교육의 경험은 학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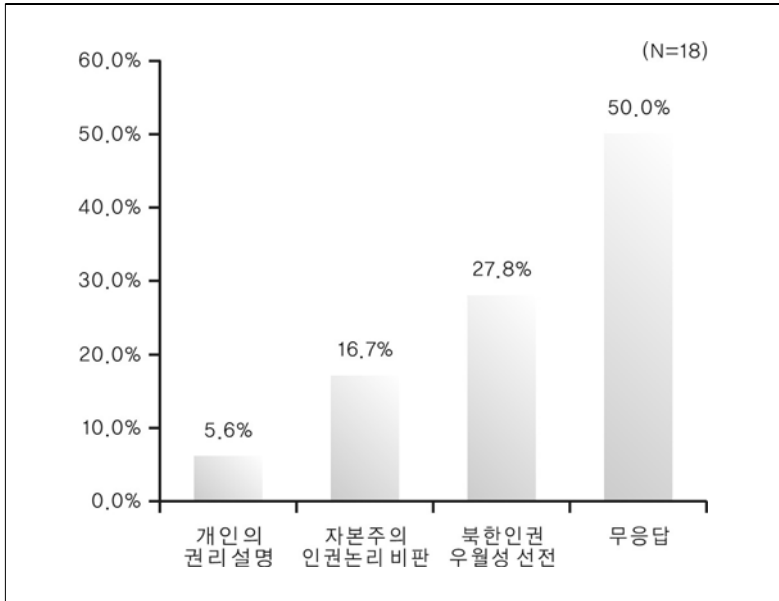
●표 III-16 북한인권교육 경험 여부(면접설문조사)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22.0	73.2	4.9		전체		22.0	73.2	4.9		
성별	남	19.2	69.2	11.5	p=0.160	학력	무학	0	100.0	0	p=0.000	
	여	23.2	75.0	1.8			소학교	12.5	87.5	0		
출생연도	35년-39년	0	100.0	0	고등중학교		21.1	78.9	0			
	40년-44년	0	100.0	0	전문학교		20.0	40.0	40.0			
	45년-49년	50.0	50.0	0	4년제		50.0	50.0	0			
	55년-59년	33.3	33.3	33.3	출신 지역	함경북도	15.9	79.5	4.5	p=0.749		
	60년-64년	100.0	0	0		함경남도	25.0	75.0	0			
	65년-69년	23.1	76.9	0		양강도	18.8	75.0	6.2			
	70년-74년	23.8	71.4	4.8		자강도	50.0	50.0	0			
	75년-79년	21.4	78.6	0		평안남도	50.0	25.0	25.0			
	80년-84년	11.1	77.8	11.1		평안북도	33.3	66.7	0			
	85년-89년	22.2	66.7	11.1		강원도	50.0	50.0	0			
90년-94년	0	100.0	0	평양특별시		33.3	66.7	0				
						구금시설 경험	있음	10.0	85.0		5.0	p=0.328
							없음	25.8	69.4		4.8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18명에 따르면, 북한에서 받았던 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 우월성 선전’ 27.8%, ‘자본주의세계의 인권논리 비판’ 16.7%, ‘개인의 권리 설명’ 5.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I-17 북한에서 받았던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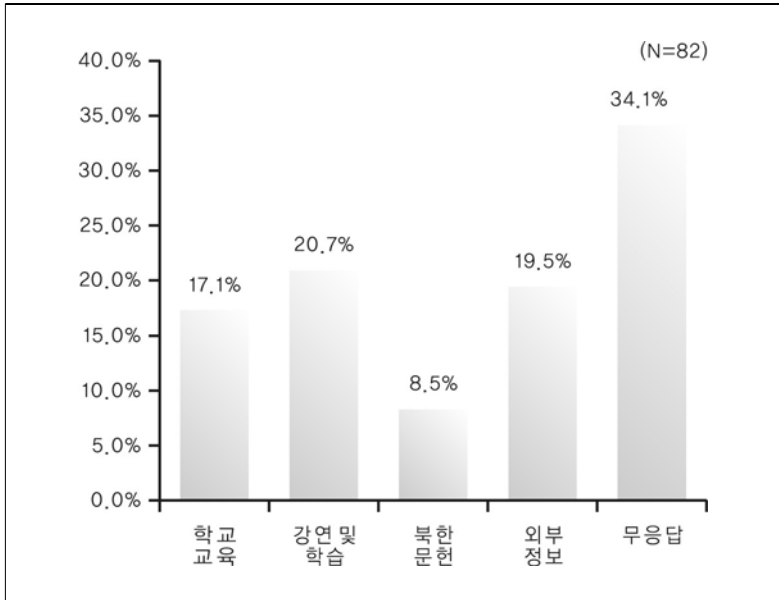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단위: %)

		개인의 권리 설명	자본주의 인권논리 비판	북한인권 우월성 선전	무응답	P
전체		5.6	16.7	27.8	50.0	
성별	남	0	20.0	20.0	60.0	p= 0.868
	여	7.7	15.4	30.8	46.2	
출생 년도	35년-39년	0	0	0	0	p= 0.018
	40년-44년	0	0	0	0	
	45년-49년	0	0	0	100.0	
	55년-59년	0	100.0	0	0	
	60년-64년	0	100.0	0	0	
	65년-69년	0	0	0	100.0	
	70년-74년	0	0	60.0	40.0	
	75년-79년	0	33.3	33.3	33.3	
	80년-84년	100.0	0	0	0	
	85년-89년	0	0	50.0	50.0	
90년-94년	0	0	0	0		
학 력	무학	0	0	0	0	p= 0.431
	소학교	0	0	100.0	0	
	고등중학교	8.3	25.0	33.3	33.3	
	전문학교	0	0	0	100.0	
	4년제	0	0	0	100.0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14.3	0	28.6	57.1	p= 0.431
	함경남도	0	0	0	100.0	
	양강도	0	0	33.3	66.7	
	자강도	0	100.0	0	0	
	평안남도	0	50.0	50.0	0	
	평안북도	0	100.0	0	0	
	강원도	0	0	100.0	0	
평양특별시	0	0	0	100.0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0	0	100.0	0	p= 0.119
	없음	5.6	16.7	16.7	50.0	

북한에서 본인의 인권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강연 및 학습’ 20.7%, ‘외부정보’ 19.5%, ‘학교교육’ 17.1%, ‘북한문헌’ 8.5%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무응답’이 전체의 34.1%이며, 이는 인권교육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변수 중의 선택을 어려워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의식 형성에 대한 변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구금시설 수감 경험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III-18 북한에서 본인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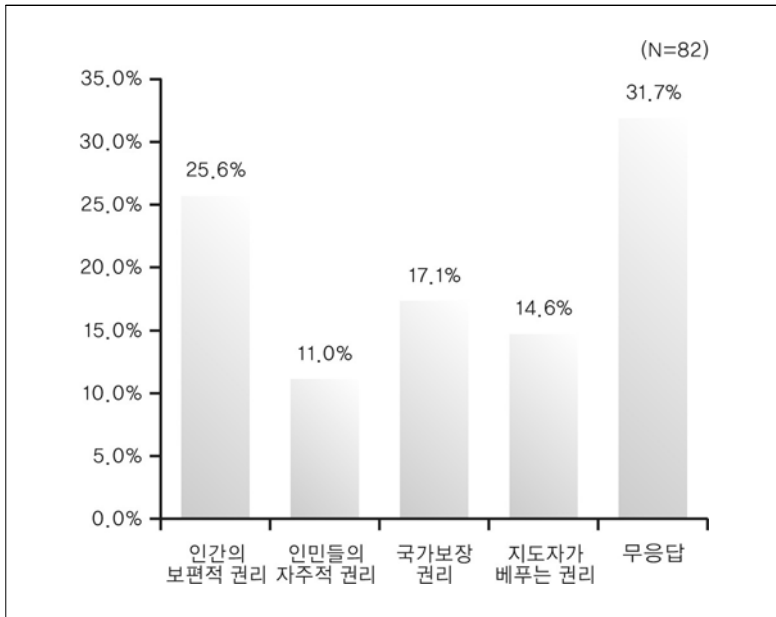
I
II
III
IV
V

(단위: %)

		학교교육	강연 및 학습	북한문헌	외부정보	무응답	P
전체		17.1	20.7	8.5	19.5	34.1	
성별	남	19.2	15.4	7.7	30.8	26.9	p=0.446
	여	16.1	23.2	8.9	14.3	37.5	
출생년도	35년-39년	0	0	0	0	100.0	p=0.250
	40년-44년	0	0	0	0	100.0	
	45년-49년	0	0	50.0	25.0	25.0	
	55년-59년	0	33.3	0	33.3	33.3	
	60년-64년	0	0	0	100.0	0	
	65년-69년	15.4	7.7	15.4	38.5	23.1	
	70년-74년	28.6	23.8	9.5	35.7	28.6	
	75년-79년	21.4	21.4	0	11.1	21.4	
	80년-84년	11.1	44.4	0	11.1	33.3	
	85년-89년	22.2	11.1	0	0	66.7	
90년-94년	0	40.0	20.0	0	40.0		
학력	무학	0	0	0	0	100.0	p=0.480
	소학교	25.0	12.5	0	25.0	37.5	
	고등중학교	17.5	24.6	7.0	19.3	31.6	
	전문학교	0	10.0	10.0	20.0	60.0	
	4년제	33.3	16.7	33.3	16.7	0	
출신지역	함경북도	20.5	13.6	4.5	20.5	40.9	p=0.372
	함경남도	12.5	25.0	25.0	0	37.5	
	양강도	6.2	18.8	12.5	31.2	31.2	
	자강도	0	100.0	0	0	0	
	평안남도	25.0	25.0	25.0	0	25.0	
	평안북도	0	33.3	0	33.3	33.3	
	강원도	50.0	0	0	50.0	0	
	평양특별시	33.3	66.7	0	0	0	
구금시설경험	있음	10.0	10.0	5.0	10.0	65.0	p=0.024
	없음	19.3	24.2	9.7	22.6	24.2	

북한에서 생각했던 ‘인권’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무응답’ 31.7%, ‘인간의 보편적 권리’ 25.6%, ‘노동·의식주·치료·교육 등의 국가보장권리’ 17.1%, ‘김정일이 베푸는 권리’ 14.6%, ‘정치·경제·사상문화의 자주적 권리’ 11.0%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III-19 북한에서 생활할 때 생각했던 ‘인권’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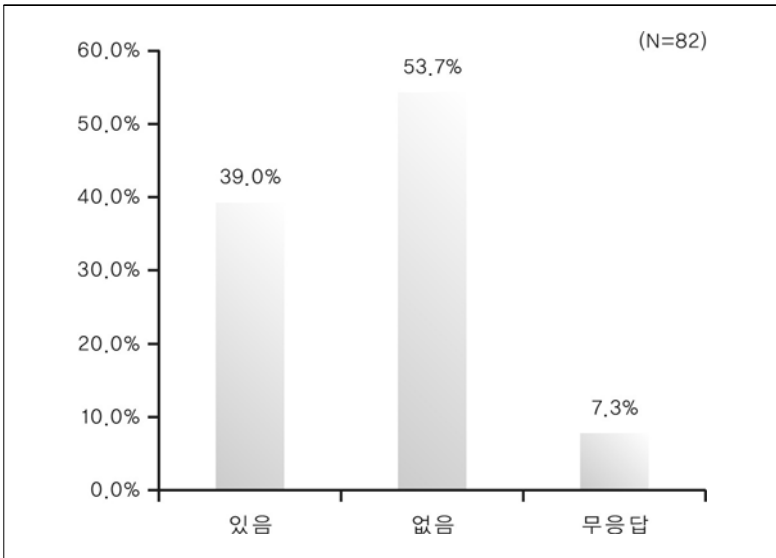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단위: %)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는 자주적 권리	먹고 살 권리 등 국가가 보장해 주는 권리	최고 지도자가 베풀어 주는 권리	무응답	P
전체		25.6	11.0	17.1	14.6	31.7	
성별	남	26.9	7.7	19.2	15.4	30.8	p= 0.971
	여	25.0	12.5	16.1	14.3	32.1	
출생 년도	35년-39년	0	0	0	0	100.0	p= 0.977
	40년-44년	0	0	0	0	100.0	
	45년-49년	25.0	25.0	0	0	50.0	
	55년-59년	0	0	33.3	33.3	33.3	
	60년-64년	0	0	0	0	100.0	
	65년-69년	38.5	23.1	15.4	15.4	7.7	
	70년-74년	23.8	14.3	23.8	9.5	28.6	
	75년-79년	21.4	7.1	21.4	21.4	28.6	
	80년-84년	33.3	11.1	11.1	11.1	33.3	
	85년-89년	22.2	0	11.1	22.2	44.4	
90년-94년	40.0	0	20.0	20.0	20.0		
학력	무학	0	0	0	0	100.0	p= 0.611
	소학교	50.0	0	25.0	12.5	12.5	
	고등중학교	24.6	8.8	17.5	17.5	31.6	
	전문학교	30.0	20.0	10.0	0	40.0	
	4년제	0	33.3	16.7	16.7	33.3	
출신 지역	함경북도	29.5	6.8	20.5	11.4	31.8	p= 0.567
	함경남도	12.5	12.5	25.0	12.5	37.5	
	양강도	31.2	18.8	6.2	6.2	37.5	
	자강도	0	0	50.0	50.0	0	
	평안남도	50.0	0	0	25.0	25.0	
	평안북도	0	0	0	33.3	66.7	
	강원도	0	50.0	0	50.0	0	
평양특별시	0	33.3	33.3	33.3	0		
구금 시설 경험	있음	20.0	0	20.0	20.0	40.0	p= 0.348
	없음	27.4	14.5	16.1	12.9	29.0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에 대해 들어본 비율은 39.0%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53.7%, 무응답은 7.3%이다. 이는 동일한 면접 조사대상자의 61.1%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것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 대중 속에 확산된 용어가 아니라, 북한당국차원에서 외부세계의 인권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차원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20 북한에서 ‘우리식 인권’ 용어 인지 여부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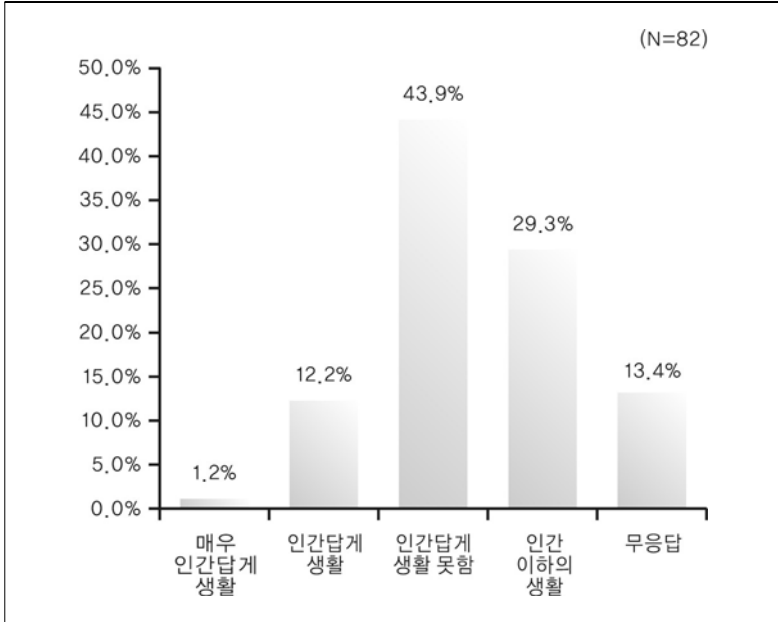
V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39.0	53.7	7.3		전체		39.0	53.7	7.3			
성별	남	50.0	38.5	11.5	p=0.154	학력	무학	100.0	0	0	p=0.081		
	여	33.9	60.7	5.4			소학교	37.5	50.0	12.5			
출생년도	35년-39년	50.0	50.0	0	p=0.846		고등중학교	35.1	61.4	3.5			
	40년-44년	100.0	0	0			전문학교	40.0	30.0	30.0			
	45년-49년	50.0	50.0	0			4년제	66.7	33.3	0			
	55년-59년	33.3	66.7	0			출신지역	함경북도	29.5	63.6		6.8	p=0.537
	60년-64년	100.0	0	0				함경남도	50.0	50.0		0	
	65년-69년	38.5	61.5	0				양강도	43.8	43.8		12.5	
	70년-74년	42.9	42.9	14.3				자강도	0	100.0		0	
	75년-79년	50.0	50.0	0				평안남도	75.0	0		25.0	
	80년-84년	22.2	66.7	11.1		평안북도		66.7	33.3	0			
	85년-89년	33.3	55.6	11.1		구금시설 경험	강원도	50.0	50.0	0	p=0.328		
	90년-94년	0	80.0	20.0			평양특별시	66.7	33.3	0			
								있음	25.0	65.0	10.0		
						없음	43.5	50.0	6.5				

북한에서 생활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인간다운 생활’ 1.2%, ‘인간다운 생활’ 12.2%, ‘인간답지 않은 생활’ 43.9%, ‘인간 이하의 생활’ 29.3%, ‘무응답’이 13.4%로 나타났다. 매우 인간답게 생활함을 1점, 인간답게 생활함을 2점,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함을 3점,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함을 4점으로 점수화 하였을 때 평균점이 3.16으로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III-21 북한 내 생활에 대한 평가



I
II
III
IV
V

(단위: %)

		매우 인간 답게 생활	인간답게 생활	인간답게 생활 못함	인간 이하의 생활	무응답	P
전체		1.2	12.2	43.9	29.3	13.4	
성별	남	0	7.7	46.2	34.6	11.5	p= 0.806
	여	1.8	14.3	42.9	26.8	14.3	
출생 년도	35년-39년	0	50.0	0	50.0	0	p= 0.736
	40년-44년	0	0	0	100.0	0	
	45년-49년	0	0	25.0	50.0	25.0	
	55년-59년	0	33.3	66.7	0	0	
	60년-64년	0	0	100.0	0	0	
	65년-69년	0	7.7	61.5	30.8	0	
	70년-74년	0	0	57.1	28.6	14.3	
	75년-79년	7.1	14.3	35.7	35.7	7.1	
	80년-84년	0	33.3	22.2	22.2	22.2	
	85년-89년	0	22.2	33.3	22.2	22.2	
90년-94년	0	0	40.0	20.0	40.0		
학 력	무학	0	0	0	100.0	0	p= 0.589
	소학교	0	0	37.5	37.5	25.0	
	고등중학교	1.8	14.0	47.4	26.3	10.5	
	전문학교	0	20.0	40.0	10.0	30.0	
	4년제	0	0	33.3	66.7	0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0	9.1	50.0	31.8	9.1	p= 0.109
	함경남도	0	0	37.5	37.5	25.0	
	양강도	0	18.8	37.5	18.8	25.0	
	자강도	0	50.0	50.0	0	0	
	평안남도	25.0	0	0	50.0	25.0	
	평안북도	0	33.3	66.7	0	0	
	강원도	0	0	50.0	50.0	0	
평양특별시	0	33.3	33.3	33.3	0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0	5.0	40.0	40.0	15.0	p= 0.622
	없음	1.6	14.5	45.2	25.8	12.9	

나. 차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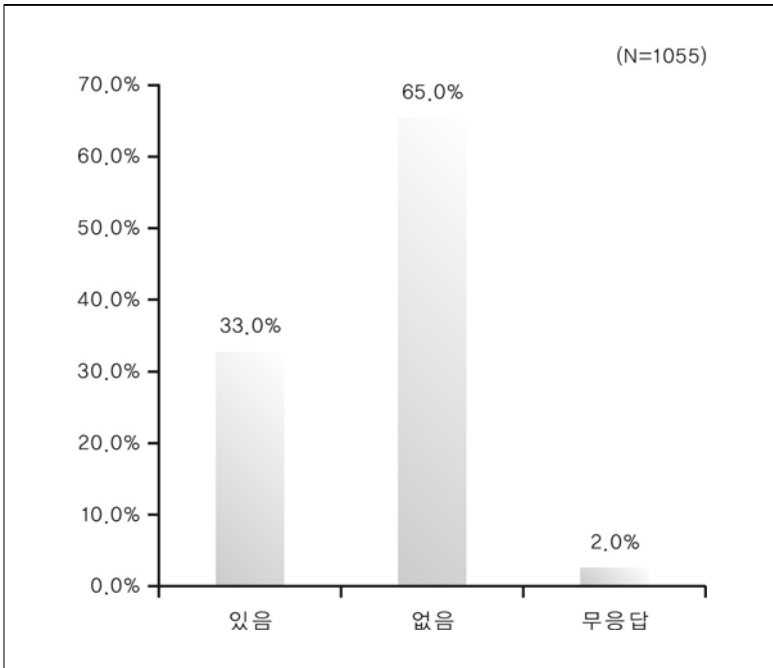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차별 중 성분 및 성별차별의 실태 및 이러한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식 인권’개념에서도 명확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계층에게만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계층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출신성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 및 친척들의 행적들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은 사회주의남녀평등을 법제화하였으나, 사회전반에서 전통적 남녀의 성역할이 구조화되어 있다.

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북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불이익)의 경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초설문 대상자의 33%가 토대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다수인 65%가 차별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실제 성분차별이 다소 완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북한주민들이 일정정도의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성분차별의 경험은 성별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평균보다 성분차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당원 혹은 군입대, 대학진학에서 이루어졌던 토대에 의한 차별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인식이 남성들의 경우 여성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토대에 따른 차별의 경험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4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의 연령대에서 평균보다 높은 차별 경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토대에 따른 차별의 경험은

I
II
III
IV
V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높은 학력에서 차별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차별정도보다 이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로 보인다.

● 표 III-22 북한에서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차별(불이익) 경험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33.0	65.0	2.0		전체		33.0	65.0	2.0		
성별	남	49.1	50.5	0.5	p=0.000	학력	무학	33.3	66.7	0	p=0.000	
	여	28.8	68.8	2.4			소학교	11.1	83.3	5.6		
35년-39년		0	100	0	p=0.002	출신지역	고등중학교	29.4	68.7	1.9		p=0.915
40년-44년		28.6	57.1	14.3			전문대	52.2	45.2	2.6		
45년-49년		52.6	42.1	5.3			4년제	64.4	35.6	0		
50년-54년		48.0	52.0	0			함경북도	32.1	65.7	2.2		
55년-59년		47.5	52.5	0			함경남도	33.3	64.0	2.7		
60년-64년		44.4	54.3	1.2			양강도	34.1	64.8	1.1		
65년-69년		37.0	61.6	1.4			자강도	14.3	85.7	0		
70년-74년		39.1	59.6	1.2			평안북도	53.3	46.7	0		
75년-79년		30.6	67.5	1.9			평안남도	31.4	64.7	3.9		
80년-84년		26.8	71.0	2.2			평양특별시	25.0	75.0	0		
85년-89년		22.2	74.1	3.7			강원도	39.1	60.9	0		
90년-94년		22.2	75.3	2.5			황해북도	54.5	45.5	0		
95년-99년		25.0	75.0	0			황해남도	33.3	66.7	0		
국내 입국 가족	있음	33.9	64.5	1.6	p=0.816	강제 송환 경험	있음	35.0	62.1	2.9	p=0.360	
	없음	32.6	65.2	2.1			없음	32.4	65.9	1.7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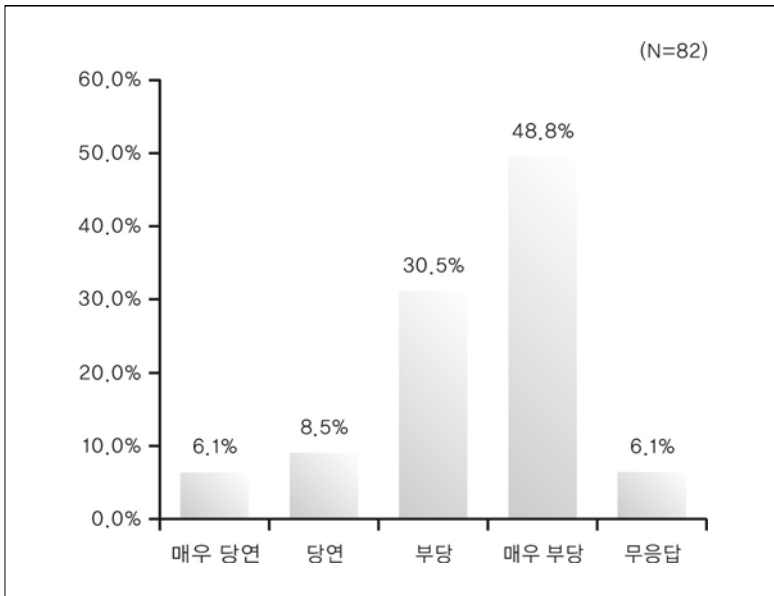
III

IV

V

성분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식을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성분차별이 ‘당연하다(매우 당연 6.1%, 당연 8.5%)’가 14.6%인 반면, ‘부당하다’ 79.3%(부당 30.5%, 매우 부당 48.8%)로 나타났다. 매우 당연함 1점, 당연함 2점, 부당함 3점, 매우 부당함 4점으로 측정했을 때 평균값이 3.4로 일반적으로 토대차별은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23 성분(토대) 차별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당연함	당연함	부당함	매우 부당함	무응답	평균	P
전체		6.1	8.5	30.5	48.8	6.1	3.40	
성 별	남	3.8	7.7	26.9	53.8	7.7	3.54	p= 0.929
	여	7.1	8.9	32.1	46.4	5.4	3.34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0	100.0	0	0	3.00	p= 0.848
	40년-44년	0	0	0	100.0	0	4.00	
	45년-49년	0	0	25.0	75.0	0	3.75	
	55년-59년	0	0	33.3	66.7	0	3.67	
	60년-64년	0	0	0	100.0	0	4.00	
	65년-69년	7.7	0	23.1	69.2	0	3.54	
	70년-74년	19.0	9.5	23.8	38.1	9.5	3.10	
	75년-79년	0	14.3	42.9	42.9	0	3.29	
	80년-84년	0	11.1	44.4	33.3	11.1	3.44	
	85년-89년	0	22.2	11.1	55.6	11.1	3.56	
90년-94년	0	0	40.0	40.0	20.0	3.80		
학 력	무학	0	0	0	100.0	0	4.00	p= 0.874
	소학교	0	12.5	37.5	37.5	12.5	3.50	
	고등중학교	7.0	10.5	31.6	47.4	3.5	3.30	
	전문학교	10.0	0	20.0	50.0	20.0	3.70	
	4년제	0	0	33.3	66.7	0	3.67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6.8	11.4	29.5	47.7	4.5	3.32	p= 0.857
	함경남도	0	0	37.5	50.0	12.5	3.75	
	양강도	6.2	0	37.5	43.8	12.5	3.56	
	자강도	0	0	50.0	50.0	0	3.50	
	평안남도	0	25.0	0	75.0	0	3.50	
	평안북도	0	0	33.3	66.7	0	3.67	
	강원도	50.0	0	0	50.0	0	2.50	
평양특별시	0	33.3	33.3	33.3	0	3.00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5.0	15.0	30.0	40.0	10.0	3.35	p= 0.658
	없음	6.5	6.5	30.6	51.6	4.8	3.42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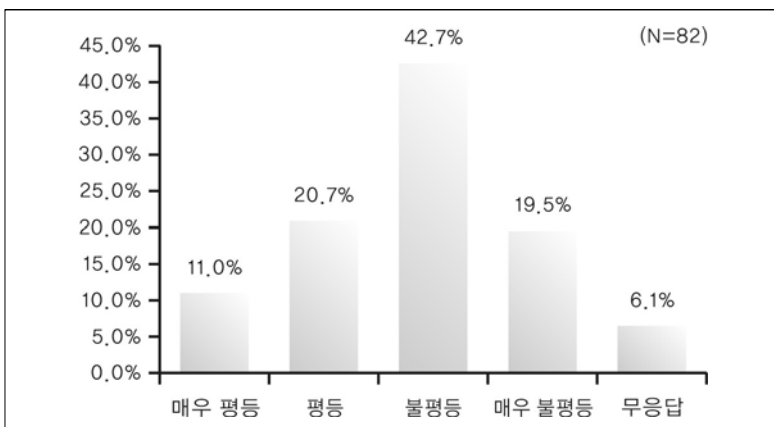
III

IV

V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면접조사자의 31.7%가 ‘평등하다’(매우 평등 11.0%, 평등 20.7%)고 응답한 반면, 62.2%가 ‘불평등하다’(불평등 42.7%, 매우 불평등 19.5%)고 답하였으며 ‘무응답’은 6.1%를 차지하였다.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연령별, 출신지역별, 구금시설 수감 경험별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 면접조사 결과 성별 차이는 $p=0.121$ 로 $p<0.1$ 에서조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불평등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개별 면접에서 식량난 이후 여성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남성의 위치가 불평등하게 변화하였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평균값에서도 남성이 3.23인 반면, 여성은 2.73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남성이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평균값은 2.89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4 북한 내 남녀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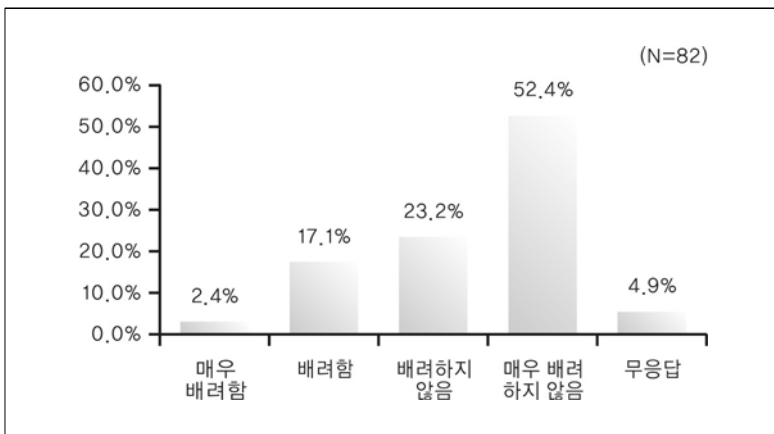
(단위: %)

		매우 평등함	평등함	불평등 함	매우 불평등함	무응답	평균	P
전체		11.0	20.7	42.7	19.5	6.1	2.89	
성 별	남	3.8	7.7	57.7	23.1	7.7	3.23	p= 0.121
	여	14.3	26.8	35.7	17.9	5.4	2.73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0	50.0	50.0	0	3.50	p= 0.513
	40년-44년	0	0	0	100.0	0	4.00	
	45년-49년	25.0	50.0	25.0	0	0	2.00	
	55년-59년	0	33.3	66.7	0	0	2.67	
	60년-64년	0	0	0	100.0	0	4.00	
	65년-69년	15.4	7.7	46.2	30.8	0	2.92	
	70년-74년	9.5	19.0	47.6	19.0	4.8	2.90	
	75년-79년	7.1	50.0	35.7	7.1	0	2.43	
	80년-84년	11.1	11.1	55.6	11.1	11.1	3.00	
	85년-89년	22.2	0	44.4	11.1	22.2	3.11	
90년-94년	0	20.0	20.0	40.0	20.0	3.60		
학 력	무학	0	0	0	100.0	0	4.00	p= 0.296
	소학교	12.5	0	37.5	37.5	12.5	3.38	
	고등중학교	10.5	21.1	45.6	19.3	3.5	2.84	
	전문학교	0	30.0	40.0	10.0	20.0	3.20	
	4년제	33.3	33.3	33.3	0	0	2.00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15.9	15.9	43.2	18.2	6.8	2.84	p= 0.892
	함경남도	0	12.5	50.0	25.0	12.5	3.38	
	양강도	12.5	37.5	31.2	12.5	6.2	2.62	
	자강도	0	50.0	0	50.0	0	3.00	
	평안남도	0	25.0	50.0	25.0	0	3.00	
	평안북도	0	0	66.7	33.3	0	3.33	
	강원도	0	50.0	0	50.0	0	3.00	
평양특별시	0	0	100.0	0	0	3.00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10.0	30.0	25.0	25.0	10.0	2.95	p= 0.389
	없음	11.3	17.7	48.4	17.7	4.8	2.87	

I
II
III
IV
V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역으로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국내입국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묻게 되면, ‘차별’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위에서 따돌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차별을 막연히 ‘불이익’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이를 경제적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해 ‘배려한다’ 19.5%(매우 배려 2.4%, 배려 17.1%)인 반면, ‘배려하지 않는다’ 75.6%(배려없음 23.2%, 매우 배려하지 않음 52.4%), ‘무응답’ 4.9%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은 연령과 출신지역과 $p < 0.05$ 에서는 상관성이 없으나, $p < 0.1$ 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 매우 배려함 1점, 배려함 2점, 배려하지 않음 3점, 매우 배려하지 않음 4점으로 측정했을 때 평균값이 3.4로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25 북한 내 장애인 차별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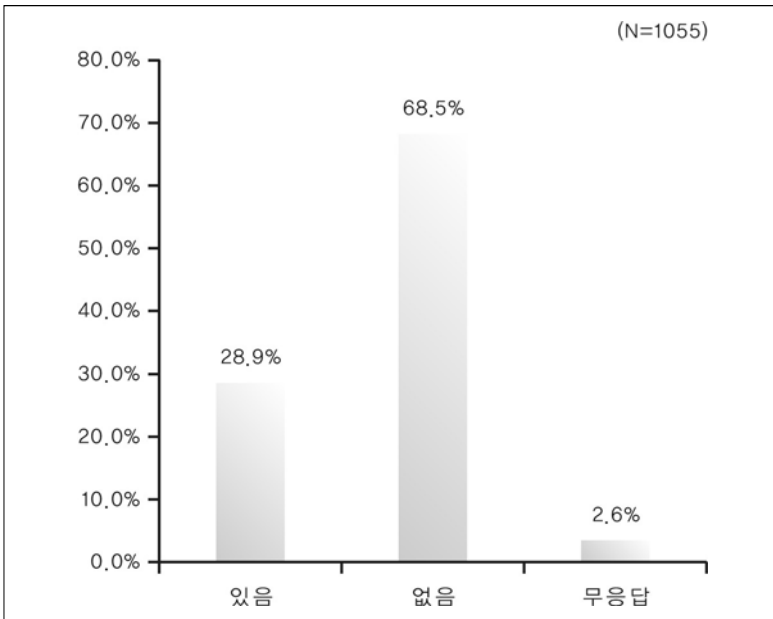
		매우 배려함	배려함	배려하지 않음	매우 배려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전체		2.4	17.1	23.2	52.4	4.9	3.40	
성 별	남	0	15.4	38.5	38.5	7.7	3.38	p= 0.143
	여	3.6	17.9	16.1	58.9	3.6	3.41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0	0	100.0	0	4.00	p= 0.093
	40년-44년	0	0	100.0	0	0	3.00	
	45년-49년	0	0	25.0	75.0	0	3.75	
	55년-59년	33.3	0	0	66.7	0	3.00	
	60년-64년	0	0	0	100.0	0	4.00	
	65년-69년	0	0	23.1	76.9	0	3.77	
	70년-74년	4.8	38.1	14.3	38.1	4.8	3.00	
	75년-79년	0	14.3	57.1	28.6	0	3.14	
	80년-84년	0	33.3	0	55.6	11.1	3.44	
	85년-89년	0	0	22.2	66.7	11.1	3.89	
90년-94년	0	20.0	20.0	40.0	20.0	3.60		
학 력	무학	0	0	100.0	0	0	3.00	p= 0.431
	소학교	0	12.5	25.0	50.0	12.5	3.62	
	고등중학교	3.5	21.1	22.8	50.9	1.8	3.26	
	전문학교	0	0	30.0	50.0	20.0	3.90	
	4년제	0	16.7	0	83.3	0	3.67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0	18.2	31.8	45.5	4.5	3.36	p= 0.059
	함경남도	0	12.5	25.0	50.0	12.5	3.62	
	양강도	6.2	6.2	18.8	62.5	6.2	3.56	
	자강도	50.0	50.0	0	0	0	1.50	
	평안남도	0	0	0	100.0	0	4.00	
	평안북도	0	33.3	0	66.7	0	3.33	
	강원도	0	0	0	100.0	0	4.00	
평양특별시	0	66.7	0	33.3	0	2.67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0	15.0	30.0	45.0	10.0	3.50	p= 0.567
	없음	3.2	17.7	21.0	54.8	3.2	3.37	

I
II
III
IV
V

다. 폭력에 대한 인식

기초설문 응답자 중 북한에서 고문 혹은 구타를 당한 비율은 28.9%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68.5%, 무응답은 2.6%로 나타났다. 고문 및 구타의 경험은 응답자의 성별, 강제송환 경험 여부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및 구타의 경험이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제송환 경험자의 경우 고문 및 구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송환 이후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I-26 북한 내 고문 혹은 구타 경험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28.9	68.5	2.6		전체		28.9	68.5	2.6	
성별	남	45.9	52.3	1.8	p=0.000		무학	47.6	47.6	4.8	
	여	24.5	72.8	2.7			소학교	20.4	75.9	3.7	
출생년도	35년-39년	0	100	0	p=0.225	학력	고등중학교	28.5	69.0	2.5	p=0.387
	40년-44년	0	85.7	14.3			전문대	33.9	64.3	1.7	
	45년-49년	26.3	73.7	0			4년제	25.4	71.2	3.4	
	50년-54년	16.0	80.0	4.0			함경북도	30.0	67.4	2.7	
	55년-59년	33.9	62.7	3.4		출신지역	함경남도	32.0	65.3	2.7	p=0.298
	60년-64년	32.1	66.7	1.2			양강도	24.4	73.3	2.3	
	65년-69년	26.7	70.5	2.7			자강도	14.3	85.7	0	
	70년-74년	32.9	63.4	3.7			평안북도	33.3	60.0	6.7	
	75년-79년	35.7	62.4	1.9			평안남도	15.7	80.4	3.9	
	80년-84년	33.3	65.2	1.4			평양특별시	0	100	0	
	85년-89년	22.8	74.1	3.1			강원도	43.5	56.5	0	
	90년-94년	19.8	79.0	1.2			황해북도	54.5	45.5	0	
	95년-99년	18.8	75.0	6.2			황해남도	41.7	58.3	0	
국내입국가족	있음	27.0	70.4	2.6	p=0.690	강제송환경험	있음	54.7	42.0	3.3	p=0.000
	없음	29.7	67.8	2.5			없음	21.2	76.5	2.3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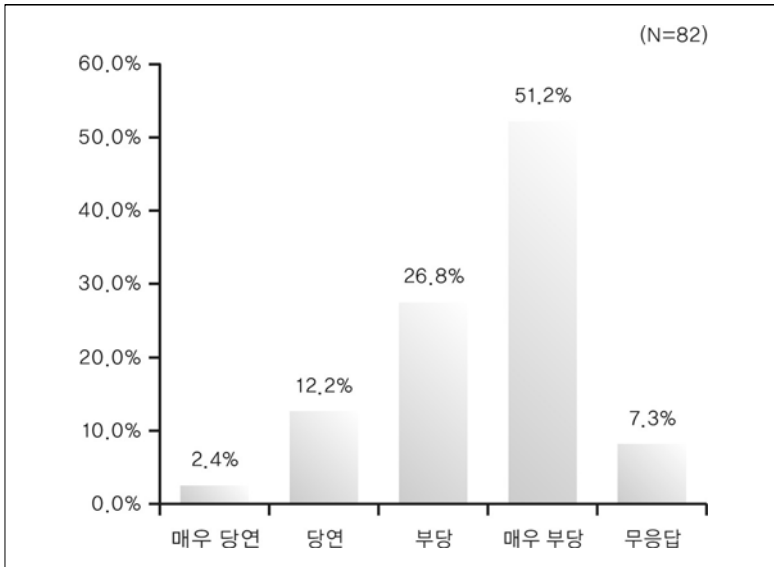
III

IV

V

면접설문조사에서 보안원, 보위원들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 2.4%, ‘당연하다’ 12.2%, ‘부당하다’ 26.8%, ‘매우 부당하다’ 51.2%로 응답하였으며, ‘무응답’이 7.3%를 차지하였다. 매우 부당함 4점, 부당함 3점, 당연함 2점, 매우 당연함 1점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이 3.49로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 -27 보안원·보위원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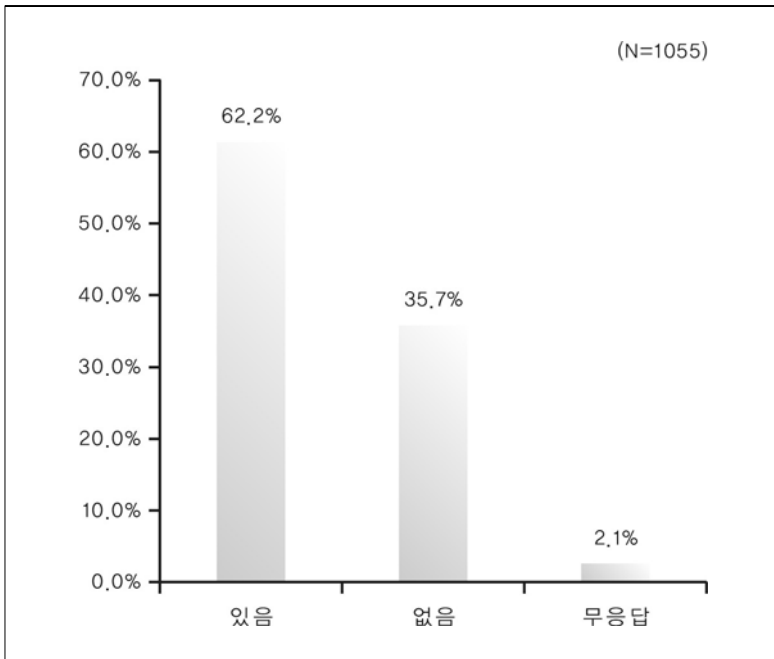
(단위: %)

		매우 당연함	당연함	부당함	매우 부당함	무응답	평균	P
전체		2.4	12.2	26.8	51.2	7.3	3.49	
성 별	남	3.8	11.5	26.9	42.3	15.4	3.54	p= 0.367
	여	1.8	12.5	26.8	55.4	3.6	3.46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0	0	100.0	0	4.00	p= 0.850
	40년-44년	0	0	0	100.0	0	4.00	
	45년-49년	0	0	0	100.0	0	4.00	
	55년-59년	0	33.3	0	33.3	33.3	3.67	
	60년-64년	0	0	0	100.0	0	4.00	
	65년-69년	7.7	0	23.1	69.2	0	3.54	
	70년-74년	4.8	14.3	33.3	42.9	4.8	3.29	
	75년-79년	0	14.3	35.7	50.0	0	3.36	
	80년-84년	0	22.2	44.4	22.2	11.1	3.22	
	85년-89년	0	11.1	33.3	33.3	22.2	3.67	
90년-94년	0	20.0	0	60.0	20.0	3.80		
학 력	무학	0	0	0	100.0	0	4.00	p= 0.794
	소학교	0	12.5	12.5	62.5	12.5	3.75	
	고등중학교	1.8	14.0	31.6	47.4	5.3	3.40	
	전문학교	10.0	10.0	20.0	40.0	20.0	3.50	
	4년제	0	0	16.7	83.3	0	3.83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2.3	13.6	29.5	45.5	9.1	3.45	p= 0.987
	함경남도	0	12.5	25.0	50.0	12.5	3.62	
	양강도	6.2	6.2	31.2	50.0	6.2	3.44	
	자강도	0	50.0	0	50.0	0	3.00	
	평안남도	0	0	0	100.0	0	4.00	
	평안북도	0	0	33.3	66.7	0	3.67	
	강원도	0	0	0	100.0	0	4.00	
평양특별시	0	33.3	33.3	33.3	0	3.00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0	15.0	25.0	45.0	15.0	3.60	p= 0.528
	없음	3.2	11.3	27.4	53.2	4.8	3.45	

I
II
III
IV
V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제기해온 공개처형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설문조사 대상자의 62.2%가 직접 공개처형을 목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35.7%, 무응답은 2.1%로 나타났다. 공개처형 목격 경험은 학력별,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학력자의 목격비율이 저학력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의 목격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의식하여 2000년대 이후 공개처형의 빈도를 줄여 온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28 공개처형 목격 경험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성 별	전체	62.2	35.7	2.1	p=0.088	학 력	전체	62.2	35.7	2.1	p=0.000		
	남	68.3	29.4	2.3			무학	47.6	42.9	9.5			
	여	60.6	37.4	2.0			소학교	42.6	53.7	3.7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100	0	p=0.000		출 신 지 역	고등중학교	60.7	37.5		1.9	
	40년-44년	42.9	42.9	14.3				전문대	78.3	20.0		1.7	
	45년-49년	63.2	36.8	0				4년제	74.6	23.7		1.7	
	50년-54년	72.0	28.0	0				p=0.314	함경북도	64.1		33.8	2.1
	55년-59년	79.7	18.6	1.7					함경남도	60.0		37.3	2.7
	60년-64년	63.0	33.3	3.7					양강도	56.8		42.6	0.6
	65년-69년	70.5	26.7	2.7					자강도	28.6		71.4	0
	70년-74년	62.7	34.8	2.5					평안북도	66.7		26.7	6.7
	75년-79년	68.8	29.9	1.3					평안남도	52.9		41.2	5.9
	80년-84년	66.7	31.2	2.2		평양특별시			62.5	37.5	0		
	85년-89년	59.3	38.9	1.9		강원도			73.9	21.7	4.3		
	90년-94년	25.9	72.8	1.2		황해북도			72.7	27.3	0		
	95년-99년	25.0	75.0	0		황해남도	66.7		33.3	0			
국내 입국 가족	있음	61.6	36.5	2.0	p=0.937	강제 송환 경험	있음		66.3	31.3	2.5	p=0.244	
	없음	62.4	35.4	2.1			없음		61.0	37.1	2.0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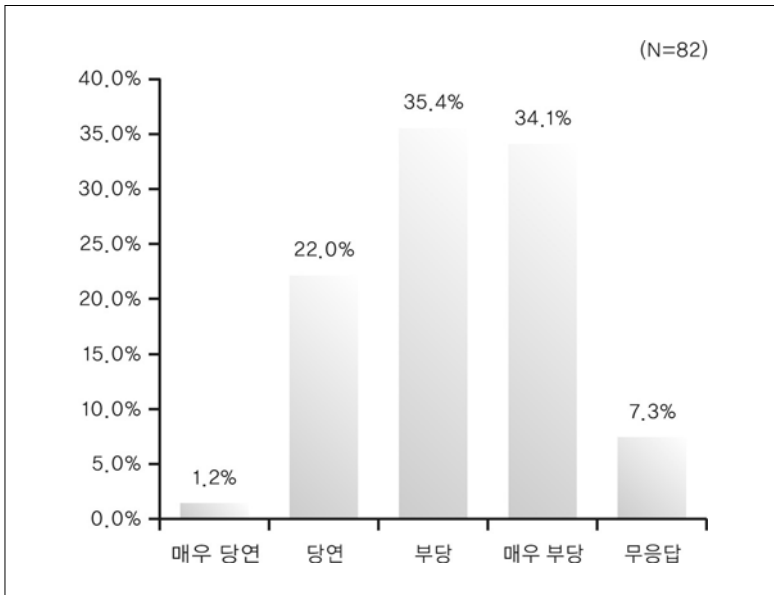
III

IV

V

면접설문조사에서 공개처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당연하다’ 1.2%, ‘당연하다’ 22.0%, ‘부당하다’ 35.4%, ‘매우 부당하다’ 34.1%, ‘무응답’ 7.3%로 나타났다. 매우 당연함 1점, 당연함 2점, 부당함 3점, 매우 부당함 4점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이 3.24로 나타났다. 공개처형에 대한 평가는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구금시설 수감 경험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구금시설 수감 경험이 있는 경우 공개처형이 당연한 처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표 III -29 공개처형(총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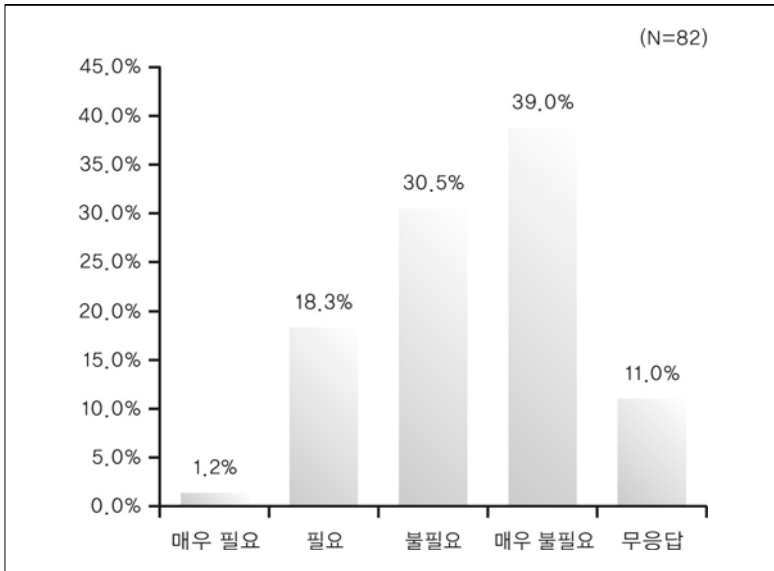
(단위: %)

		매우 당연함	당연함	부당함	매우 부당함	무응답	평균	P
전체		1.2	22.0	35.4	34.1	7.3	3.24	
성 별	남	0	19.2	42.3	26.9	11.5	3.31	p= 0.623
	여	1.8	23.2	32.1	37.5	5.4	3.21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50.0	0	50.0	0	3.00	p= 0.789
	40년-44년	0	0	0	100.0	0	4.00	
	45년-49년	0	0	25.0	75.0	0	3.75	
	55년-59년	0	33.3	0	66.7	0	3.33	
	60년-64년	0	0	0	100.0	0	4.00	
	65년-69년	7.7	7.7	30.8	53.8	0	3.31	
	70년-74년	0	19.0	42.9	21.4	2.4	3.29	
	75년-79년	0	35.7	42.9	21.4	0	2.86	
	80년-84년	0	33.3	44.4	11.1	11.1	3.00	
	85년-89년	0	11.1	44.4	22.2	22.2	3.56	
90년-94년	0	40.0	20.0	20.0	20.0	3.20		
학 력	무학	0	0	0	100.0	0	4.00	p= 0.415
	소학교	0	25.0	25.0	37.5	12.5	3.38	
	고등중학교	0	22.8	42.8	29.8	5.3	3.18	
	전문학교	10.0	10.0	20.0	40.0	20.0	3.50	
	4년제	0	33.3	16.7	50.0	0	3.17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0	18.2	47.7	27.3	6.8	3.23	p= 0.487
	함경남도	0	12.5	25.0	50.0	12.5	3.62	
	양강도	6.2	18.8	25.0	37.5	12.5	3.31	
	자강도	0	100.0	0	0	0	2.00	
	평안남도	0	25.0	0	75.0	0	3.50	
	평안북도	0	33.3	0	66.7	0	3.33	
	강원도	0	0	50.0	50.0	0	3.50	
평양특별시	0	66.7	33.3	0	0	2.33		
구 금 시 설	있음	0	45.0	20.0	20.0	15.0	3.05	p= 0.016
	없음	1.6	14.5	40.3	38.7	4.8	3.31	

I
II
III
IV
V

정치범 수용소의 필요성에 대한 면접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필요하다’ 1.2%, ‘필요하다’ 18.3%, ‘불필요하다’ 30.5%, ‘매우 불필요하다’ 39.0%, ‘무응답’ 11.0%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함 1점, 필요함 2점, 불필요함 3점, 매우 불필요함 4점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이 3.4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30 정치범수용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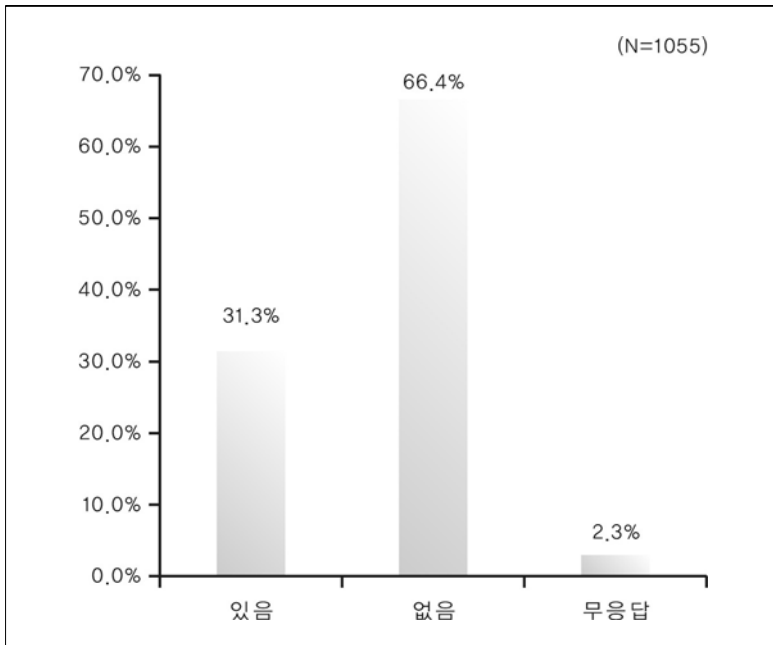
		매우 필요함	필요함	불필요 함	매우 불필요함	무응답	평균	P
전체		1.2	18.3	30.5	39.0	11.0	3.40	
성 별	남	0	11.5	26.9	46.2	15.4	3.65	p= 0.602
	여	1.8	21.4	32.1	35.7	8.9	3.29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50.0	0	50.0	0	3.00	p= 0.888
	40년-44년	0	0	0	100.0	0	4.00	
	45년-49년	0	50.0	0	25.0	25.0	3.25	
	55년-59년	0	33.3	0	66.7	0	3.33	
	60년-64년	0	0	0	100.0	0	4.00	
	65년-69년	7.7	0	30.8	53.8	7.7	3.54	
	70년-74년	0	14.3	52.4	28.6	4.8	3.24	
	75년-79년	0	28.6	28.6	28.6	14.3	3.29	
	80년-84년	0	22.2	22.2	44.4	11.1	3.44	
	85년-89년	0	22.2	22.2	33.3	22.2	3.56	
90년-94년	0	0	40.0	40.0	20.0	3.80		
학 력	무학	0	0	0	100.0	0	4.00	p= 0.987
	소학교	0	12.5	50.0	25.0	12.5	3.38	
	고등중학교	1.8	21.1	29.8	38.6	8.8	3.32	
	전문학교	0	10.0	20.0	50.0	20.0	3.80	
	4년제	0	16.7	33.3	33.3	16.7	3.50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0	18.2	31.8	36.4	13.6	3.45	p= 0.763
	함경남도	1.2	0	25.0	50.0	12.5	3.50	
	양강도	0	18.8	31.2	37.5	12.5	3.44	
	자강도	0	50.0	0	50.0	0	3.00	
	평안남도	0	50.0	25.0	25.0	0	2.75	
	평안북도	0	33.3	33.3	33.3	0	3.00	
	강원도	0	0	0	100.0	0	4.00	
평양특별시	0	0	66.7	33.3	0	3.33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0	10.0	30.0	40.0	20.0	3.70	p= 0.511
	없음	1.6	21.0	30.6	38.7	8.1	3.31	

I
II
III
IV
V

라. 법치에 대한 인식

법치에 대한 인식은 관련법에 대한 인지 여부와 법 적용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초설문대상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31.3%, 받아 보지 않은 비율은 66.4%, 무응답은 2.3%로 집계되었다. 재판 경험은 한국 입국 가족 유무 및 강제송환 경험 여부와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가족이 있거나 강제송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불법도강 등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 표 III-31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재판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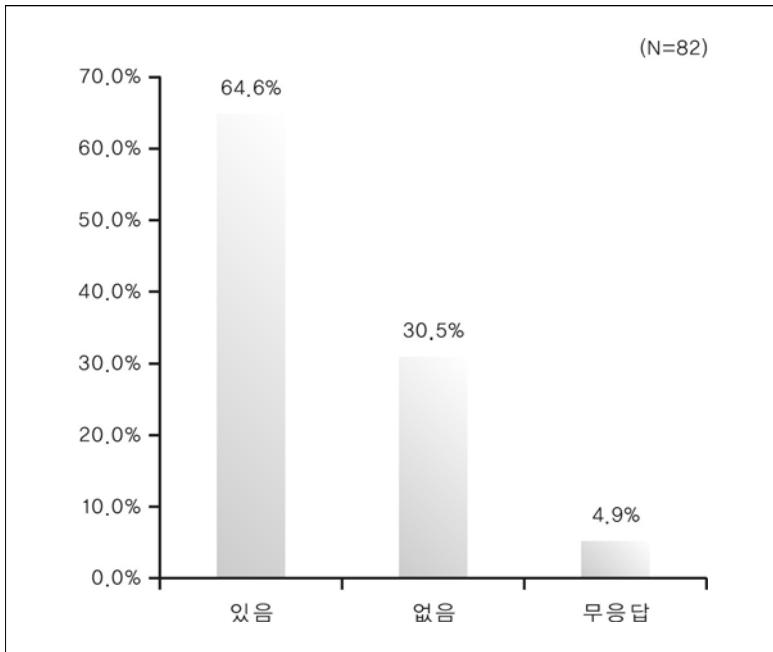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31.3	66.4	2.3		전체		31.3	66.4	2.3	
성별	남	33.0	65.1	1.8	p=0.751	학력	무학	38.1	57.1	4.8	p=0.560
	여	30.8	66.8	2.4			소학교	37.0	61.1	1.9	
출생년도	35년-39년	0	100	0	p=0.251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	30.5	67.2	2.2	p=0.345
	40년-44년	0	57.1	42.9			전문대	35.7	60.9	3.5	
	45년-49년	31.6	63.2	5.3			4년제	25.4	74.6	0	
	50년-54년	48.0	52.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34.0	64.1	1.9	
	55년-59년	33.9	61.0	5.1			함경남도	18.7	78.7	2.7	
	60년-64년	21.0	76.5	2.5			양강도	30.1	67.0	2.8	
	65년-69년	32.9	63.7	3.4			자강도	28.6	71.4	0	
	70년-74년	39.1	59.1	1.9			평안북도	20.0	80.0	0	
	75년-79년	25.5	73.9	0.6			평안남도	23.5	70.6	5.9	
	80년-84년	33.3	64.5	2.2			평양특별시	12.5	87.5	0	
	85년-89년	27.2	69.8	3.1			강원도	26.1	73.9	0	
	90년-94년	32.1	66.7	1.2			황해북도	45.5	54.5	0	
	95년-99년	25.0	75.0	0			황해남도	33.3	58.3	8.3	
	국내입국가족	있음	37.5	60.6		2.0	p=0.021	강제송환경험	있음	44.9	51.0
없음		28.7	68.9	2.4	없음	27.2			71.1	1.7	

I
II
III
IV
V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북한에서 생활할 때 사회주의헌법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비율은 64.6%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30.5%, 무응답은 4.9%이다. 국민의 기본권리 인지 여부는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일수록 국민의 기본 권리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2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국민의 기본권리’ 인지 여부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64.6	30.5	4.9		전체		64.6	30.5	4.9					
성별	남	69.2	23.1	7.7	p=0.490	학력	무학	100.0	0	0	p=0.033				
	여	62.5	33.9	3.6			소학교	25.0	75.0	0					
출생년도	35년-39년	50.0	50.0	0	p=0.687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66.7	20.8	3.5	p=0.888				
	40년-44년	100.0	0	0			전문학교	60.0	20.0	20.0					
	45년-49년	50.0	50.0	0			4년제	100.0	0	0					
	55년-59년	100.0	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61.4	34.1	4.5	p=0.888				
	60년-64년	100.0	0	0			함경남도	75.0	12.5	12.5					
	65년-69년	69.2	23.1	7.7			양강도	62.5	31.2	6.2					
	70년-74년	81.0	14.3	4.8			자강도	50.0	50.0	0					
	75년-79년	64.3	35.7	0			평안남도	100.0	0	0					
	80년-84년	55.6	33.3	11.1			평안북도	33.3	66.7	0					
	85년-89년	44.4	44.4	11.1			강원도	100.0	0	0					
	90년-94년	20.0	80.0	0			평양특별시	66.7	33.3	0					
									구금시설 경험	있음		50.0	45.0	5.0	p=0.259
										없음		69.4	25.8	4.8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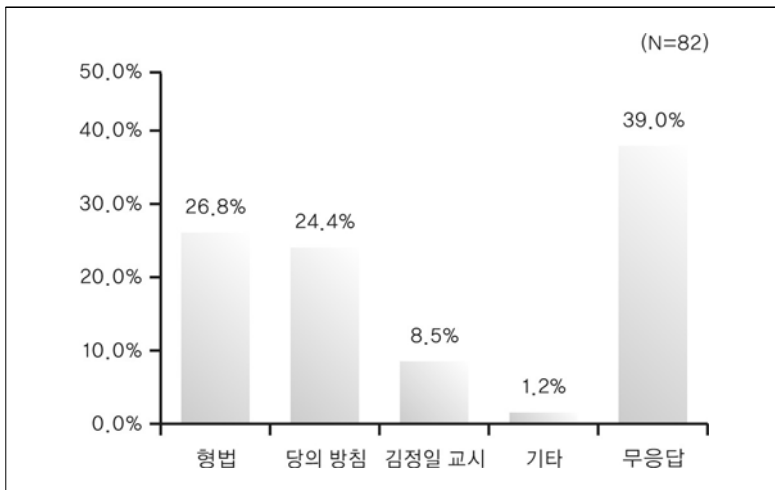
북한에 있을 때 알았던 ‘국민의 기본권리’ 조항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권리는 교육권리, 선거자유, 무상치료권리, 노동권리, 신소청원권리, 휴식권리, 과학예술활동 자유, 언론자유, 신앙자유, 사생활침해 보장, 거주여행자유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33 북한에서 알았던 ‘국민의 기본권리’ 조항(다중응답)

기본권리조항	순위	사례수(명)	비율(%)
선거자유	2	53	14.6
언론자유	8	18	5.0
신앙자유	9	16	4.4
신소청원권리	5	36	9.9
노동권리	4	39	10.7
휴식권리	6	34	9.4
무상치료권리	3	52	14.3
교육권리	1	54	14.9
과학예술활동자유	7	30	8.3
거주여행자유	9	16	4.4
사생활침해보장	10	15	4.1

면접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북한 내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 ‘형법’ 26.8%, ‘당의 방침’ 24.4%, ‘김정일 교시’ 8.5%, ‘기타’ 1.2%, ‘무응답’ 39.0%로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로는 형법이 약간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당의 방침이 형법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²⁹ 불법행위 처벌근거에 대한 인식은 학력과 출신지역별로 $p < 0.1$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불법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경험이 가장 많은 고등중학교 졸업학력, 함경북도 출신들이 처벌의 근거가 형법이라고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I-34 북한 내 불법행위 처벌 근거



²⁹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 연구: 대남, 대미,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p. 36.

(단위: %)

		형법	당의 방침	김정일의 교시	기타	무응답	P
전체		26.8	24.4	8.5	1.2	39.0	
성별	남	26.9	26.9	11.5	3.8	30.8	p= 0.506
	여	26.8	23.2	7.1	0	42.9	
출생년도	35년-39년	100.0	0	0	0	0	p= 0.425
	40년-44년	0	100.0	0	0	0	
	45년-49년	25.0	75.0	0	0	0	
	55년-59년	0	33.3	0	0	66.7	
	60년-64년	0	100.0	0	0	0	
	65년-69년	15.4	15.4	15.4	0	53.8	
	70년-74년	42.9	14.3	4.8	4.8	33.3	
	75년-79년	14.3	28.6	0	0	57.1	
	80년-84년	33.3	3.7	0	0	33.3	
	85년-89년	22.2	11.1	33.3	0	33.3	
90년-94년	20.0	20.0	20.0	0	40.0		
학력	무학	0	1.2	0	0	0	p= 0.021
	소학교	12.5	37.5	37.5	0	12.5	
	고등중학교	35.1	17.5	7.0	0	40.4	
	전문학교	0	40.0	0	1.2	50.0	
	4년제	16.7	33.3	0	0	50.0	
출신지역	함경북도	27.3	18.2	9.1	0	45.5	p= 0.083
	함경남도	37.5	37.5	0	0	25.0	
	양강도	12.5	37.5	12.5	0	37.5	
	자강도	0	0	0	0	100.0	
	평안남도	25.0	25.0	25.0	25.0	0	
	평안북도	33.3	66.7	0	0	0	
	강원도	50.0	0	0	0	50.0	
	평양특별시	66.7	0	0	0	33.3	
구금시설 경험	있음	35.0	15.0	20.0	0	30.0	p= 0.161
	없음	24.2	27.4	4.8	1.6	41.9	

북한 내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알고 있던 법률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형법, 사회안전단속법, 형사소송법, 신소청원법, 변호사법,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치적 관심이나 법률적 관심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가정되기도 하지만,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법률 인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여성들이 가족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 및 장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의 경우 형법보다 사회안전단속법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단속법보다 형법 인지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북한 내 인지 개별법률(다중응답)

알고 있는법	순위	사례수(명)	비율(%)
형법	1	52	29.5
형사소송법	3	32	18.2
변호사법	5	15	8.5
사회안전단속법	2	50	28.4
신소청원법	4	27	15.3
기타	6	0	0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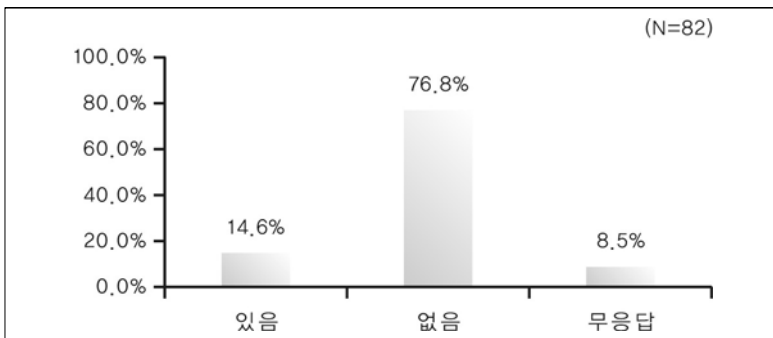
●표 III-36 성별에 따른 북한 내 인지 법률(다중응답)

(단위: %)

알고 있는 법	남	여
형법	85.0	68.6
형사소송법	60.0	39.2
변호사법	20.0	21.6
사회안전단속법	60.0	74.5
신소청원법	50.0	33.3
기타	0	0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의식하여 형법을 개정하였으며,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형법책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면접조사 결과 형법책을 본 비율은 14.6%, 그렇지 않은 비율은 76.8%, 무응답은 8.5%로 나타났다. 북한형법 책 접근 여부는 학력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자에서 형법책을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7 북한 내 형법책 접근 여부



(단위: %)

		있음	없음	무응답	P			있음	없음	무응답	P
전체		14.6	76.8	8.5		전체		14.6	76.8	8.5	
성별	남	26.9	65.4	7.7	p=0.100	학력	무학	100.0	0	0	p=0.038
	여	8.9	82.1	8.9			소학교	25.0	62.5	12.5	
출생년도		35년-39년	0	100.0	0		고등중학교	12.3	82.5	5.3	
		40년-44년	100.0	0	0		전문학교	20.0	50.0	30.0	
		45년-49년	50.0	50.0	0	4년제	0	100.0	0		
		55년-59년	0	100.0	0	함경북도	13.6	77.3	9.1		
		60년-64년	0	100.0	0	함경남도	25.0	62.5	12.5		
		65년-69년	15.4	76.9	7.7	양강도	25.0	62.5	12.5		
		70년-74년	14.3	76.2	9.5	자강도	0	100.0	0		
		75년-79년	14.3	85.7	0	평안남도	0	100.0	0		
		80년-84년	0	88.9	11.1	평안북도	0	100.0	0		
		85년-89년	22.2	55.6	22.2	강원도	0	100.0	0		
90년-94년	0	80.0	20.0	평양특별시	0	100.0	0				
					p=0.516	구금시설경험	있음	5.0	85.0	10.0	p=0.373
							없음	17.7	74.2	8.1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심, 재판, 수사, 상소, 기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면접대상자가 북한에서 본인 혹은 가족이 구금시설 수감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 일반주민과 비교하여 불법행위 처리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경우 예심과 재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예심과 수사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면담조사자 중 여성이 탈북 등으로 예심과 재판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
II
III
IV
V

●표 III-38 불법행위 처리절차 인지도(다중응답)

알고 있는 절차	순위	사례수(명)	비율(%)
수사	3	61	23.2
예심	1	70	26.6
기소	5	28	10.6
재판	2	69	26.2
상소	4	35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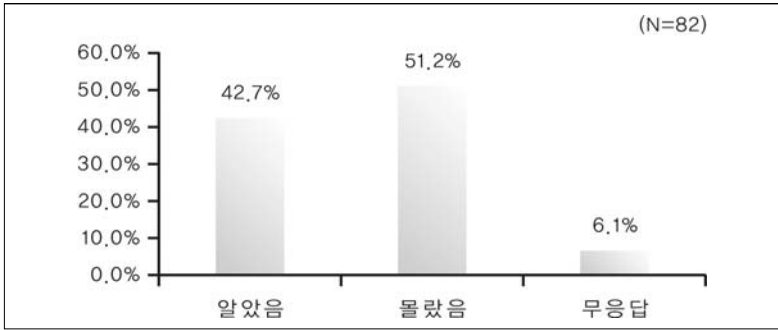
●표 III-39 성별에 따른 불법행위 처리절차 인지도(다중응답)

(단위: %)

알고 있는 절차	남	여
수사	95.5	78.4
예심	95.5	96.1
기소	54.5	31.4
재판	90.9	96.1
상소	63.6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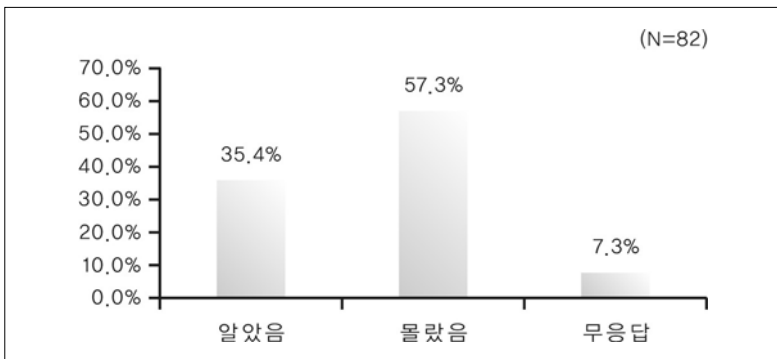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 중 하나는 정치범죄에 대한 자의적 처벌이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은 정치범죄자도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범죄자의 재판에 의한 처벌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조사자의 42.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1.2%가 ‘알지 못했다’이며 ‘무응답’의 경우도 6.1%로 나타났다. 정치범죄 재판이 형법에 명시되었다는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는 성별, 학력별, 출신지역별, 구금시설 수감 경험 여부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III-40 정치범죄 재판 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단속되었을 때 변호받을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변호받을 권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비율은 35.4%, 몰랐던 비율은 57.3%, 무응답은 7.3%이다. 이는 성별, 학력별, 출신지역별, 구금시설 수감 경험 여부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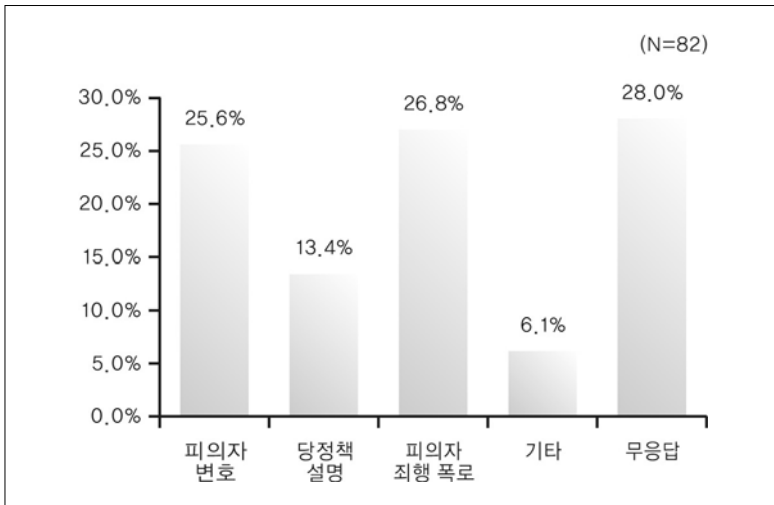
표 III-41 변호받을 권리 인지 여부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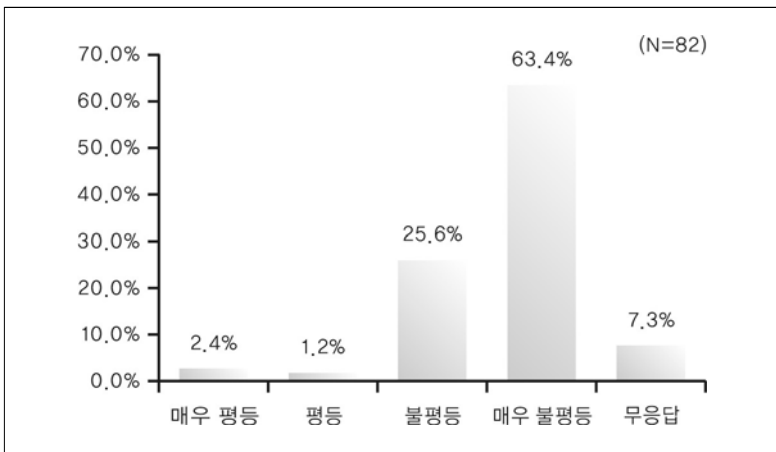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이 변호사의 역할을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인의 역할을 ‘피의자 변호’로 생각하는 비율이 25.6%, ‘당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3.4%, ‘피의자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6.8%, ‘기타’ 6.1%, ‘무응답’ 28.0%로 나타났다. 변호인의 역할이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당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판소에 변호사실이 별도로 운영되는 등 변호사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2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사회 내에서 법이 실제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법이 ‘매우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4%, ‘평등하게 적용된다’의 비율은 1.2%, ‘불평등하게 적용된다’의 비율은 25.6%,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4%, ‘무응답’은 7.3%이다. 이와 같이 북한 내 법적용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89%인 반면,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평가는 3.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법적용이 불평등하다는 평가는 성별, 학력별, 출신지역별, 구금시설 수감 경험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III-43 법적용상 평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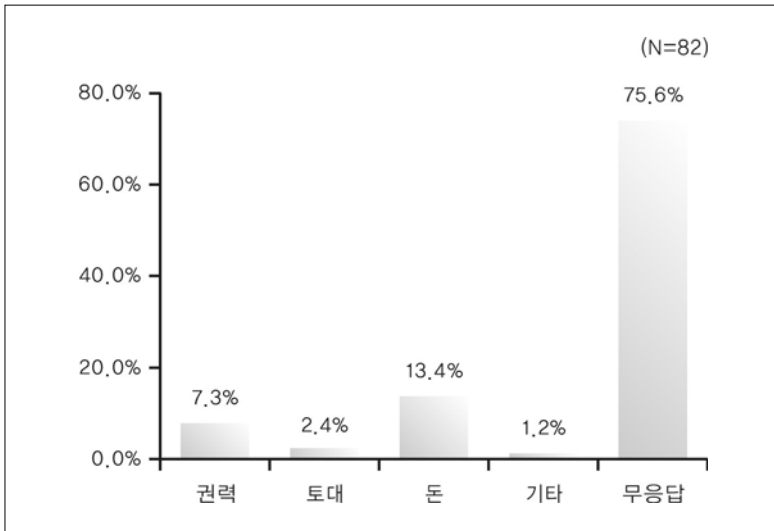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법적용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원인으로 ‘돈’ 13.4%, ‘권력’ 7.3%, ‘토대’ 2.4%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응답에서 ‘무응답’이 75.6%에 이르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

I
II
III
IV
V

사에서 다수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더라도 보위원이나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매우 가볍게 처리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기관별로 처벌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별히 중앙당의 시범검열에 단속될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기도 한다. 북한이 주민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공개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처벌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식량난으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4 법적용상 불평등 요인



(단위: %)

		권력	토대	돈	기타	무응답	P
전체		7.3	2.4	13.4	1.2	75.6	
성 별	남	3.8	7.7	7.7	3.8	76.9	p= 0.091
	여	8.9	0	16.1	0	75.0	
출 생 년 도	35년-39년	50.0	0	0	0	50.0	p= 0.466
	40년-44년	0	0	0	0	100	
	45년-49년	0	0	0	0	100	
	55년-59년	0	0	33.3	0	66.7	
	60년-64년	0	0	0	0	100	
	65년-69년	0	0	7.7	0	92.3	
	70년-74년	9.5	0	23.8	0	66.7	
	75년-79년	14.3	0	14.3	0	71.4	
	80년-84년	11.1	22.2	0	0	66.7	
	85년-89년	0	0	11.1	11.1	77.8	
90년-94년	0	0	20.0	0	80.0		
학 력	무학	0	0	0	0	100	p= 0.620
	소학교	0	0	37.5	0	62.5	
	고등중학교	8.8	1.8	14.0	1.8	73.7	
	전문학교	10.0	0	0	0	90.0	
	4년제	0	16.7	0	0	83.3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6.8	2.3	11.4	2.3	77.3	p= 0.756
	함경남도	0	0	0	0	100	
	양강도	0	6.2	25.0	0	68.8	
	자강도	0	0	50.0	0	50.0	
	평안남도	0	0	25.0	0	75.0	
	평안북도	33.3	0	0	0	66.7	
	강원도	50.0	0	0	0	50.0	
평양특별시	32.3	0	0	0	66.7		
구 금 경 험	있음	15.0	0	20.0	5.0	60.0	p= 0.108
	없음	4.8	3.2	11.3	0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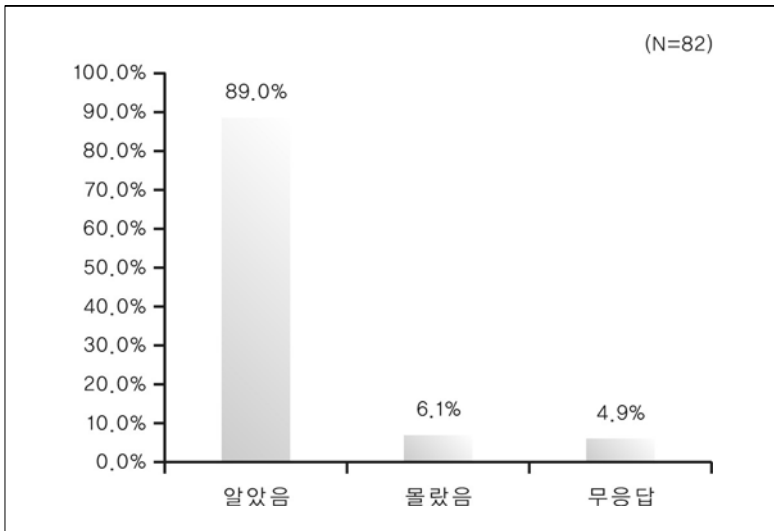
I
II
III
IV
V

3. 기타 인권사안에 대한 인식

가. 노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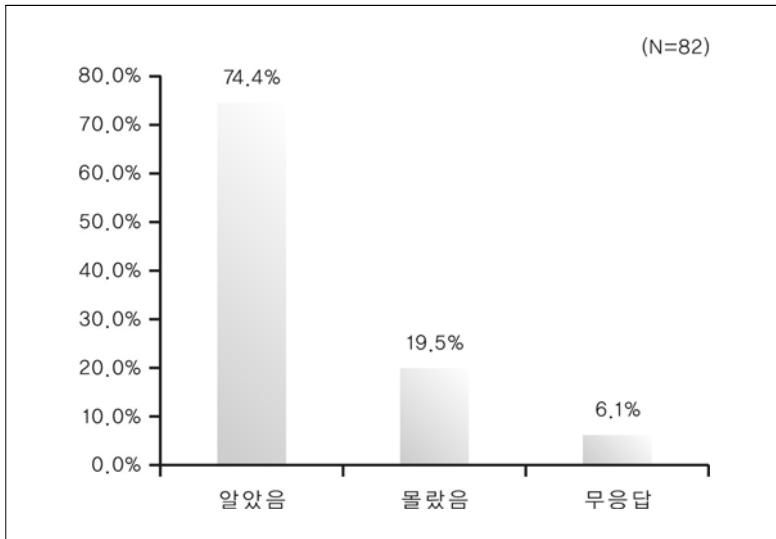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 89.0%, ‘몰랐다’ 6.1%, ‘무응답’ 4.9%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8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면접자는 실제 기업소 등이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 노동이 무의미하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시간 인지 여부는 성별, 학력별, 연령별, 출신 지역별, 구금시설 경험 여부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III-45 사회주의노동법상 근로시간 인지 여부



정기휴가 및 직종에 따른 보충휴가의 인지 유무에 대한 응답률은 ‘알고 있었다’ 74.4%, ‘몰랐다’ 19.5%, ‘무응답’ 6.1%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에 비해 인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는 학력별로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휴가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사회주의노동법상 휴가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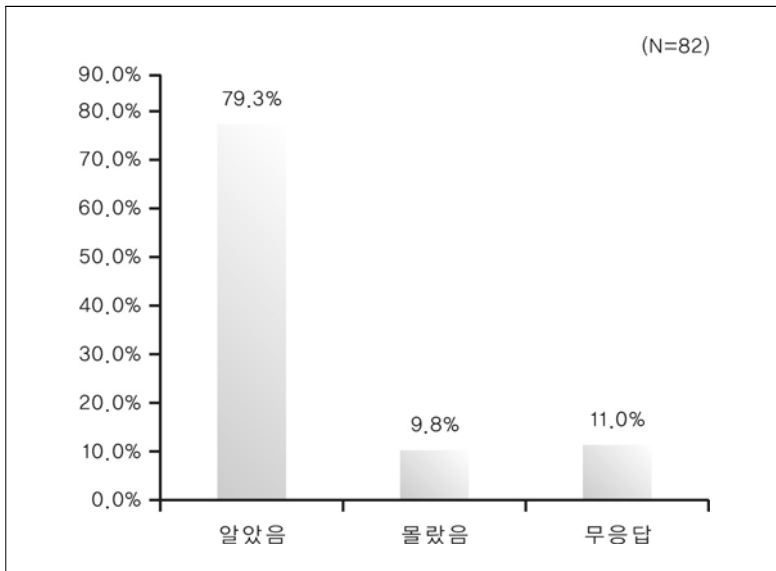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단위: %)

		알고 있었음	몰랐음	무응답	P
전체		74.4	19.5	6.1	
성별	남	80.8	7.7	11.5	p=0.092
	여	71.4	25.0	3.6	
출생년도	35년-39년	100.0	0	0	p=0.098
	40년-44년	100.0	0	0	
	45년-49년	100.0	0	0	
	55년-59년	100.0	0	0	
	60년-64년	100.0	0	0	
	65년-69년	84.6	15.4	0	
	70년-74년	76.2	19.0	4.8	
	75년-79년	92.9	7.1	0	
	80년-84년	66.7	22.2	11.1	
	85년-89년	44.4	33.3	22.2	
	90년-94년	0	80.0	20.0	
학력	무학	100.0	0	0	p=0.050
	소학교	50.0	25.0	25.0	
	고등중학교	73.7	24.6	1.8	
	전문학교	80.0	0	20.0	
	4년제	100.0	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77.3	15.9	6.8	p=0.958
	함경남도	75.0	12.5	12.5	
	양강도	62.5	31.2	6.2	
	자강도	50.0	50.0	0	
	평안남도	75.0	25.0	0	
	평안북도	100.0	0	0	
	강원도	100.0	0	0	
평양특별시	66.7	33.3	0		
구금시설경험	있음	60.0	25.0	15.0	p=0.101
	없음	79.0	17.7	3.2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전·후 휴가 인지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하면 ‘알고 있었다’ 79.3%, ‘몰랐다’ 9.8%, ‘무응답’ 11.0%로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자 본인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20대, 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7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인지 여부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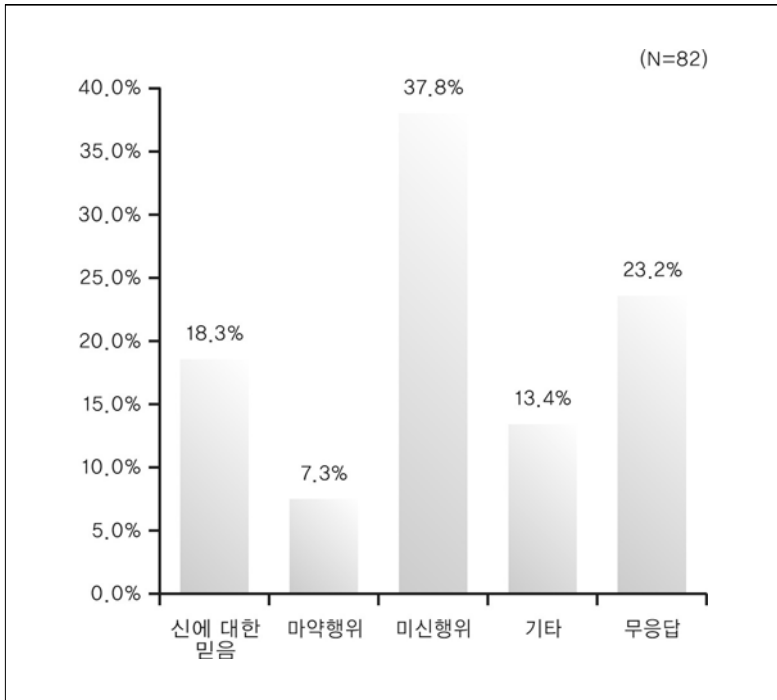
(단위: %)

		알고 있었음	몰랐음	무응답	P
전체		79.3	9.8	11.0	
성별	남	76.9	7.7	15.4	p=0.648
	여	80.4	10.7	8.9	
출생년도	35년-39년	100.0	0	0	p=0.008
	40년-44년	100.0	0	0	
	45년-49년	75.0	0	25.0	
	55년-59년	100.0	0	0	
	60년-64년	100.0	0	0	
	65년-69년	100.0	0	0	
	70년-74년	85.7	4.8	9.5	
	75년-79년	85.7	14.3	0	
	80년-84년	88.9	0	11.1	
	85년-89년	33.3	22.2	44.4	
	90년-94년	20.0	60.0	20.0	
학력	무학	100.0	0	0	p=0.508
	소학교	50.0	25.0	25.0	
	고등중학교	82.5	8.8	8.8	
	전문학교	70.0	10.0	20.0	
	4년제	100.0	0	0	
출신지역	함경북도	77.3	11.4	11.4	p=0.908
	함경남도	75.0	0	25.0	
	양강도	68.8	18.8	12.5	
	자강도	100.0	0	0	
	평안남도	100.0	0	0	
	평안북도	100.0	0	0	
	강원도	100.0	0	0	
평양특별시	100.0	0	0		
구금시설경험	있음	75.0	10.0	15.0	p=0.797
	없음	80.6	9.7	9.7	

나. 종교권

종교에 대한 인식 질문과 관련하여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3%, ‘마약과 같은 행위’ 7.3%, ‘미신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37.8%, ‘기타’ 13.4%, ‘무응답’ 23.2%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실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미신행위 혹은 마약과 같은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II-48 종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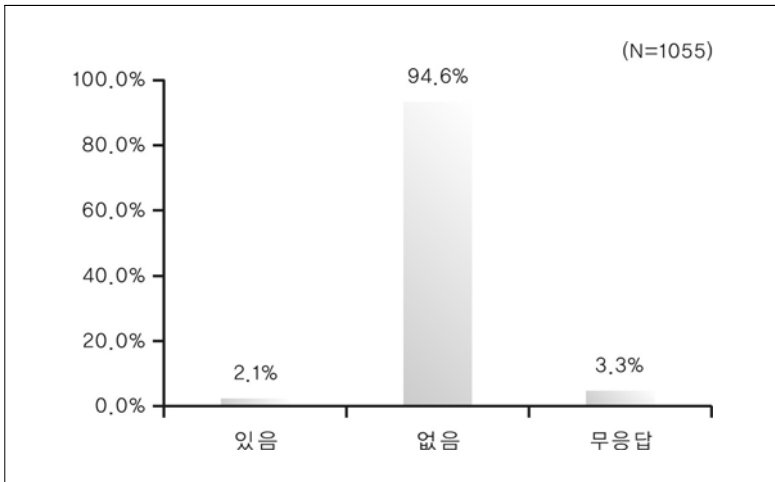
I
II
III
IV
V

(단위: %)

		신에 대한 믿음	마약행위	미신행위	기타	무응답	P
전체		18.3	7.3	37.8	13.4	23.2	
성 별	남	23.1	11.5	34.6	11.5	19.2	p= 0.761
	여	16.1	5.4	39.3	14.3	25.0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0	0	50.0	50.0	p= 0.439
	40년-44년	0	0	100.0	0	0	
	45년-49년	0	25.0	50.0	25.0	0	
	55년-59년	33.3	33.3	0	33.3	0	
	60년-64년	0	0	100.0	0	0	
	65년-69년	23.1	7.7	53.8	7.7	7.7	
	70년-74년	23.8	0	38.1	4.8	33.3	
	75년-79년	21.4	21.4	28.6	21.4	7.1	
	80년-84년	0	0	55.6	11.1	33.3	
	85년-89년	11.1	0	22.2	22.2	33.3	
90년-94년	40.0	0	20.0	0	40.0		
학 력	무학	0	0	100.0	0	0	p= 0.936
	소학교	37.5	0	37.5	0	25.0	
	고등중학교	15.8	7.0	36.8	15.8	24.6	
	전문학교	20.0	10.0	30.0	10.0	30.0	
	4년제	16.7	16.7	50.0	16.7	0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20.5	4.5	36.4	15.9	22.7	p= 0.705
	함경남도	12.5	12.5	37.5	0	3.7	
	양강도	18.8	12.5	37.5	6.2	25.0	
	자강도	0	50.0	0	0	50.0	
	평안남도	0	0	50.0	50.0	0	
	평안북도	0	0	33.3	33.3	33.3	
	강원도	50.0	0	50.0	0	0	
평양특별시	33.3	0	66.7	0	0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20.0	5.0	15.0	25.0	35.0	p= 0.087
	없음	17.7	8.1	45.2	9.7	19.4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종교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설문조사 분석결과,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종교행위로 인한 처벌을 당한 비율은 2.1%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94.6%, 무응답은 3.3%로, 실제 종교적 처벌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 처벌 경험은 학력 및 강제송환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특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으며, 성경을 소지하고 귀환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49 종교적 처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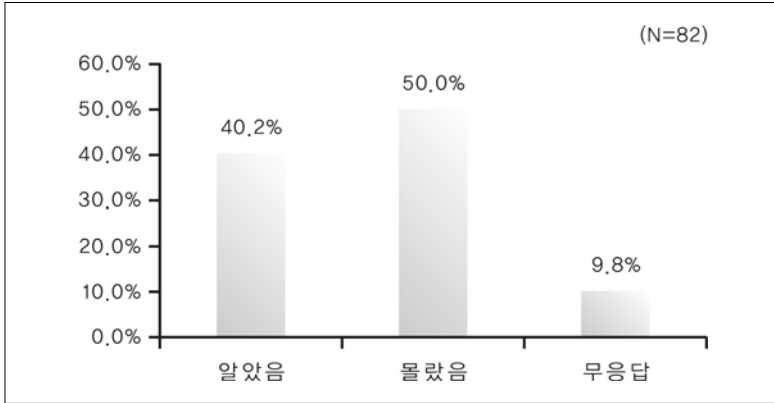


평양 내 종교시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해보면 ‘알고 있었다’ 40.2%, ‘몰랐다’ 50.0%, ‘무응답’ 9.8%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시설이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³⁰에 대하여 ‘신앙의 성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 ‘외국인 참관지’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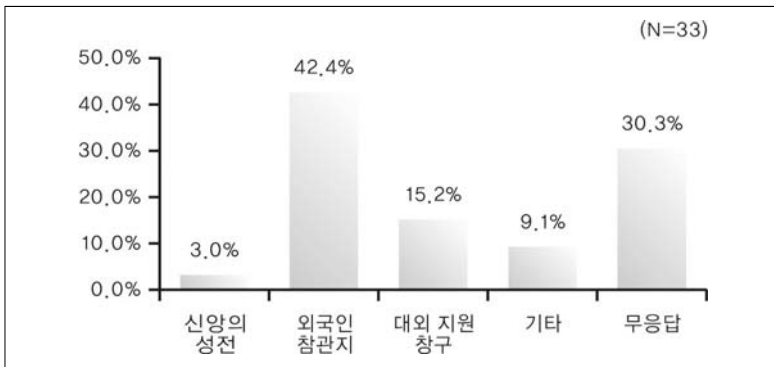
I
II
III
IV
V

‘대외 지원을 위한 교류창고’라고 답한 비율이 15.2%, ‘기타’ 9.1%, ‘무응답’ 30.3%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인식은 구금시설 수감 경험 유무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평양 종교시설 인지 여부



●표 III-51 종교시설에 대한 인식



30. 종교시설이 있음을 알았다고 답한 사람들만 응답한 것이므로 이 문항의 사례 수는 3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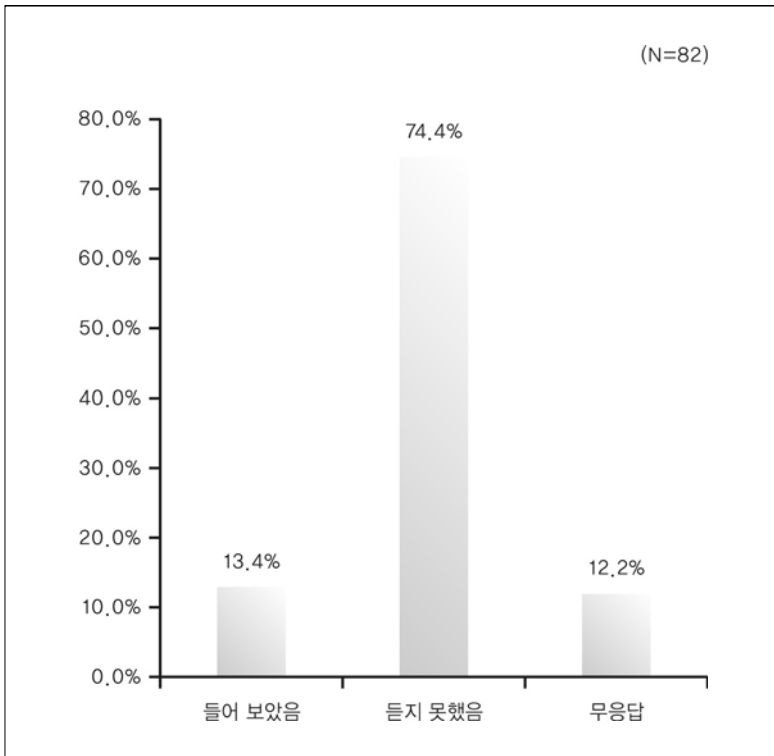
(단위: %)

		신앙의 성전	외국인 참관지	대외지원 창구	기타	무응답	P
전체		3.0	42.4	15.2	9.1	30.3	
성 별	남	0	58.3	8.3	8.3	25.0	p= 0.651
	여	4.8	33.3	19.0	9.5	33.3	
출 생 년 도	35년-39년	0	0	0	0	0	p= 0.499
	40년-44년	0	0	0	0	0	
	45년-49년	0	0	50.0	0	50.0	
	55년-59년	0	0	0	0	100.0	
	60년-64년	0	0	0	0	0	
	65년-69년	0	0	33.3	33.3	33.3	
	70년-74년	9.1	63.6	0	0	27.3	
	75년-79년	0	62.5	12.5	12.5	12.5	
	80년-84년	0	0	0	0	100.0	
	85년-89년	0	33.3	33.3	16.7	16.7	
90년-94년	0	0	0	0	0		
학 력	무학	0	0	0	0	0	p= 0.789
	소학교	0	25.0	25.0	25.0	25.0	
	고등중학교	4.3	47.8	13.0	4.3	30.4	
	전문학교	0	0	33.3	33.3	33.3	
	4년제	0	66.7	0	0	33.3	
출 신 지 역	함경북도	4.8	33.3	14.3	14.3	33.3	p= 0.969
	함경남도	0	0	0	0	0	
	양강도	0	50.0	16.7	0	33.3	
	자강도	0	0	0	0	0	
	평안남도	0	50.0	50.0	0	0	
	평안북도	0	0	0	0	0	
	강원도	0	100.0	0	0	0	
평양특별시	0	66.7	0	0	33.3		
구 금 시 설 경 험	있음	0	57.1	0	42.9	0	p= 0.003
	없음	3.8	38.5	19.2	0	38.5	

I
II
III
IV
V

북한 내에 가정예배처소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들어 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13.4%, ‘듣지 못했다’ 74.4%, ‘무응답’ 12.2%로 나타났다. 일부 면접자는 북한 내에서 생활할 때는 지하교회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나, 탈북하여 중국 내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관련 활동들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북한 내 지하교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표 III-52 북한 내 지하교회 인지 여부



4. 소결

가. ‘인권’ 용어 확산

북한주민들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 기회는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당국은 노동신문 등 기관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의식하여 미국 등 서방의 인권상황을 비방하거나, ‘우리식 인권’의 우위성을 홍보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명확히 ‘인권’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용어 자체를 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한민족방송 등이 북한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발히 관련 사업을 보도하여 왔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보위원이나 보안원으로부터 ‘인권’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한다.³¹ 이는 탈북자 개인의 권리보장이 가능하다는 차원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민감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인권’ 용어에 대한 노출은 확대되었지만,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나름의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오랜 기간 철저한 통제체제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존엄의 실현이 인권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

³¹ ‘인권’ 용어를 접하게 된 배경으로는 개별적 담화과정(군부대), 우리식 인권-군대 교양, 교화소에서 선생들의 학습-“인권유린을 한다고 해도 포용해서 새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김○○, 2010년 8월 10일 면접; 탈북 후 재판(법관사업) 예심원으로부터 인권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임○○, 2010년 6월 15일 면접; “권리는 무엇인지 모른다. 김정일에 충실해야 산다.” 유○○, 2010년 3월 16일 면접.

I
II
III
IV
V

출신 피면접자는 ‘존엄’이라는 말은 자신들과 같은 ‘일반백성들’에게는 적합한 개념이 아니며 높은 신분을 위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³²

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초보적 인식 형성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정치적 범죄로 규정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인다.³³ 이는 북한체제 하에서 정치적 범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척까지도 처벌 및 불이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의 배급제도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개인들은 자신들의 생존방안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침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뇌물공여가 만연하면서 불법행위로 단속될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사회에서 ‘돈’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당국의 배급이 중단되면서 장마당에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속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³⁴

32. “북한에서는 ‘존엄이다’ 이러면 큰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말이고, 개개인, 자그마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된다.” 김○○, 2010년 10월 5일 면접.

33. “나라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나니, 국가가 하라는 대로 살다나니, 권리를 향수하지 못했다. 후계자문제도 이견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고, 과거 조선력사에 비유하고 있지만 자기 권리와 의견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실현하자면 목숨을 내놔야하기 때문이다.” 탈북여성 52세, 2010년 10월 12일. 노귀남, “북한주민의 의식에 관한 보고서-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비공개논문, 통일연구원 자문).

34. “시장관리원이나 보안원, 보위부, 규찰대가 단속을 나오면 장사하는 물건

다. 법기관 영향력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법기관에 단속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배급제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탈행위가 급증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탈북 등 불법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법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막연한 인식이 형성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중국 등 외부세계를 경험하면서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더욱 발전된다. 탈북자들의 조사과정에서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장마당 단속 시 나이 어린 법기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 혹은 여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죄인’처럼 다룬다는 것이다.³⁵

라. 사안별 인식 차이

북한주민들의 북한 내 권리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면접조사

을 빼앗기는 손실을 입는다. 그래서 단속반이 보이면 사람들이 물건을 챙겨 후드득 뛰기 때문에 노점상에 ‘메뚜기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이런 단속을 슬쩍 넘어가는 방법으로 뇌물을 고이거나 한다. 그런데 한 할머니(강○○(60, 여)의 증언, 2010년 11월)가 단속원이 나왔는데 가만히 버티고 앉아있었다. 단속반이 화를 내면서, ‘이 에미나이, 뛰기라도 해라’고 욕을 했다. 그 할머니는 ‘죽은 메뚜기다’고 대답했다. 뭘 수 없다는 말이다. 시장에서 하루벌이하는 힘없는 사람의 우스갯말 같지만 자기 생존권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저항의 몸짓이다.” 노귀남, “북한주민의 의식에 관한 보고서-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³⁵ “사람이 아니라 개 같은 인생이다. 도덕이 없다.” 김○○, 2010년 10월 5일 면접.

I
II
III
IV
V

결과, 공개재판, 생활총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인식보다 부당하다는 인식에 가까우나, 비교적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다. 이와 반면 장마당 단속, 강제추방, 여행증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평가에 가깝다. 또한 보안원 및 보위원들의 가혹행위, 성분에 따른 차별, 라디오 청취나 남한 영상물 단속, 국가에 의한 일방적 직업배치, 공개처형 순으로 부당성을 평가하였다. 즉 공개처형은 부당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안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더욱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I-53 사안별 인식 비교

특정사안	평균값
보안원·보위원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	3.49
각 가정의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2.65
생활총화(자아 및 호상비판)	2.95
성분(토대)에 따른 차별	3.4
공개처형(총살)	3.24
현지공개재판	2.93
장마당 단속	3.59
국가에 의한 일방적 직업배치	3.25
여행증 제도	3.48
강제추방	3.57
외부 라디오 청취나 녹화물 시청 단속	3.31

마. 외부 정보의 영향력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외부정보 유입이 거론되어 왔다. 이는 통제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북한주민들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최근 대북방송단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청취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주민들이 라디오방송보다는 영상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 드라마 등 영상물이 북한주민의 권리의식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면접조사과정에서 대다수는 남한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생활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극중의 현실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한의 드라마가 국경지역 등 북한주민들의 주요 흥밋거리로 자리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남한 혹은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막연히 남한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드라마에 나타난 개인의 삶이 “자유스럽고 생활적인 면에서 사람 같다”라는 평가도 있다.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주민의 권리의식 형성에 장기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이 드라마나 영화의 유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장애인 혹은 빈곤층 등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등이 북한주민들에게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북한 내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³⁶

³⁶ “조선은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세상을 돌아보고

듣고 하면서 인심은 쌀독에서 난다고 나라가 못살고 주민들이 ‘생존권리가 고생이니’ 인심도 박하고 도덕도 없으며 남존녀비가 머리에 차 있어, 시장장사군들 사이에 매일 다투고 폭력행위를 하면 거기에 안전원은 더 큰소리 치며 옷사람 관계없이 도덕없이 욕도 무서운 욕으로 일과를 시장에서 보는 데 타국에선 공손하고 레의바르고 기차 공공시설에서 도덕을 준수하는 것을 보니 조선주민들은 온몸에 악만 남았다고 생각된다. 세상에서 제일이라 교육받고 생각만 해오던 조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조선시장에서 한국상품 일본상품을 구매·판매하지 못하게 하나,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해 주고 옷 500키로를 중국상품으로 교체하여 해관을 넘을 작정이며, 이것으로 돈을 벌어 밀천을 마련해 놓고 내 자신의 생활로 자기 의사대로 살아나가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자기가 몰랐던 정세를 좀 더 파악하게 됨으로써, <말하고 싶다>는 자기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억압에 의해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식도 부족하게 되어 있음>을 말한다. 탈북여성 58세; “중국체험이후 1. 세상을 알게 되다 2. 왜 내 권리를 여태 주저했나 3. 국가가 속히 개방되어야 한다. 자유세상을 개척해야 한다. 인권문제 해결해야 한다.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등등을 알게 되었다.” 탈북 여성 54세; “조선사회 울타리 즉 테두리에서 조직에 얽매워(얽매어) 살다가, 중국여행을 통하여 보고 인식됨은 사회가 너무 곤란해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게 살았구나, 나라에선 우리 인민이 참좋은 인민이라고 얼리면서 보지도 듣지도 말도 마음대로 하며 살지 못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나 하는 수가 없다. 고난의 행군시기 시장보다 현재 시장시기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라진시장을 돌아보고 눈과 의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과 담화도 해보고 국가는 팔지 못하게 하는 상품도 눈을 속여가며 팔고사니, 돈도 많이 벌어지고 세상물정을 알게 되고 라진을 개방하니 좋는데 조선도 빨리 개방되었으면 한다.” 탈북여성 57세; “나라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나니, 국가가 하라는 대로 살다나니, 권리를 향수하지 못했다. 후계자문제도 이견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고, 과거 조선력사에 비유하고 있지만 자기 권리와 의견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실현하자면 목숨을 내놔야하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국가에 자금이 없으면서 화폐교환을 진행한 결과, 주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주민이 의식도 마비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여성 52세. 노귀남, “북한주민의 의식에 관한 보고서-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IV.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신소청원 사례를 중심으로

1. 신소청원법 제정 배경과 신소청원 과정

가. 배경

북한체제의 특성은 주지한 바대로 수령일인지배체제로서 모든 권력이 수령 및 그 후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수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권력에 도전할 수도 없다.³⁷ 만일 누군가 수령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3족’이 멸족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록 ‘3대 세습’이 이루어진다 해도 ‘2대 수령’인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는 한 이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수령 후계자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상으로는 언론·집회·결사·이동 등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실제 상으로는 철저히 봉쇄당해왔다. 사회주의 체제나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하찮은 정책에 대해서조차 금지되었고 이것을 어길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았다.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실제로 정치적 측면이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는 불만표출을 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부터는 정치가 아닌 경제부문에서의 불만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나 당원들은 ‘말반동’이나 낙서, 항의 등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다. 신소청원도 그 일종이다. 수령과 그 일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본적으로 수령의 ‘교시’가 틀릴 수도 있고 간부들이 수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³⁷ 자세한 내용은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참조.

I
II
III
IV
V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한 오류들이 축적되어 오늘날의 북한을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의 주장처럼 수령이 ‘무오류의 인간’인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다.³⁸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에 따른 주민불만이 고조되자 북한은 법적 정비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곳곳에서 하급 및 지방간부들의 비리가 저질러졌고 이로 인한 충돌이 자주 발생하자 당국은 제도화 및 법제화를 통해 주민불만을 무마하려 했다. 신소청원법이 그것이다. 북한은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이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것은 1999년 2월, 2000년 7월 등 2회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³⁹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과오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에 대한 불만이 김정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소청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 원칙을 규정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접수 등록, 료해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

³⁸ 관련된 글은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12) 참조.

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下)』 (평양: 법률출판사, 주체93(2004)), pp. 581~588.

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국민의 신소청원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신소청원을 바로하는것은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처리받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민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료해처리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신소청원을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 사업, 최고주권기관 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는 법적제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검찰기관이 한다.
4. 재판, 중재, 공중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중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I
II
III
IV
V

제24조 중요신소청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가운데서 중요한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또는 신소청원사업 일군이 료해한다.

제27조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31조 신소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이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료해할수 있다. 공동료해사업에는 신소내용과 관계있는 일군을 참가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은 공동료해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수 있다.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에 지적된 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바로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정형을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 이 법을 어기고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국가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여기에서 신소와 청원에 관한 북한의 개념규정을 『조선말대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사전’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당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신소: 《신소는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며 공민은 누구나 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들은 국가기관이나 개별적 일군들에 의하여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법기관에 신소할 수 있습니다.》(김정일)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들의 요구. 공화국 공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언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소하여 그에 대하여 제때에 해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⁴⁰

청원: ((법학))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요구나 국가기관, 사회협동단체 및 공무원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하고 풀어줄것을 바라는것.⁴¹

탈북자는 신소와 청원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신소가 더 강하죠. 일반적으로 내가 가서 신소를 하면 많이 생각하고 이러다가 내가 또 지금도 지장이 있는데 올려오자고 하다가도 곱게는 안봅니다. 이런 중앙당 신소과도 솔직히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좋게는 안 봐요. “조금 더 혁명화시키자” 이런 경우는 자꾸 제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청원은 많이 할 수 있죠. 그때도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청원

40.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916.

41.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548.

I
II
III
IV
V

을 했어요. 정말 근거를 가지고 딱 이렇게 초급당 비서는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어긋난다.”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다.⁴²

한편 인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북한은 1948년 정권수립 이후부터 헌법상에 형식적이지만 인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권리를 적시해 놓고 있다. 특히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소와 청원에 관한 규정이 모든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 표 IV-1 헌법에서의 신소와 청원에 관한 규정

헌법	규정 내용
1948년 헌법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72년 헌법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1992년 헌법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1998년 헌법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2009년 헌법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42.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나. 과정

북한주민들은 아직까지 ‘인권’이라는 개념을 거의 잘 알지 못한다.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서 2009년 개정헌법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즉 개정헌법 제8조에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⁴³

그러나 인권개념이 주민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개인은 집단이나 국가에 충성하는 ‘충성동이’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기 때문에 ‘집단이나 국가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해서 개인은 수령에게 절대복종해야 하고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다. 물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부 북한주민들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인권개념조차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은 안 쓴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간이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등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것 같다. 우리는 벌레보다 못하구나 하던 식으로 말을 보통한데... 보통 억울하고 인간대접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인권을 표현하면서 신소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으로는 연결이 되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⁴⁴

⁴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로동신문』, 2009년 4월 10일.

⁴⁴-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에는 인권개념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인권이 보장된다고 기술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인 북한만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인권: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인권유린: 반동통치계급들이 사람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고 짓밟는 것.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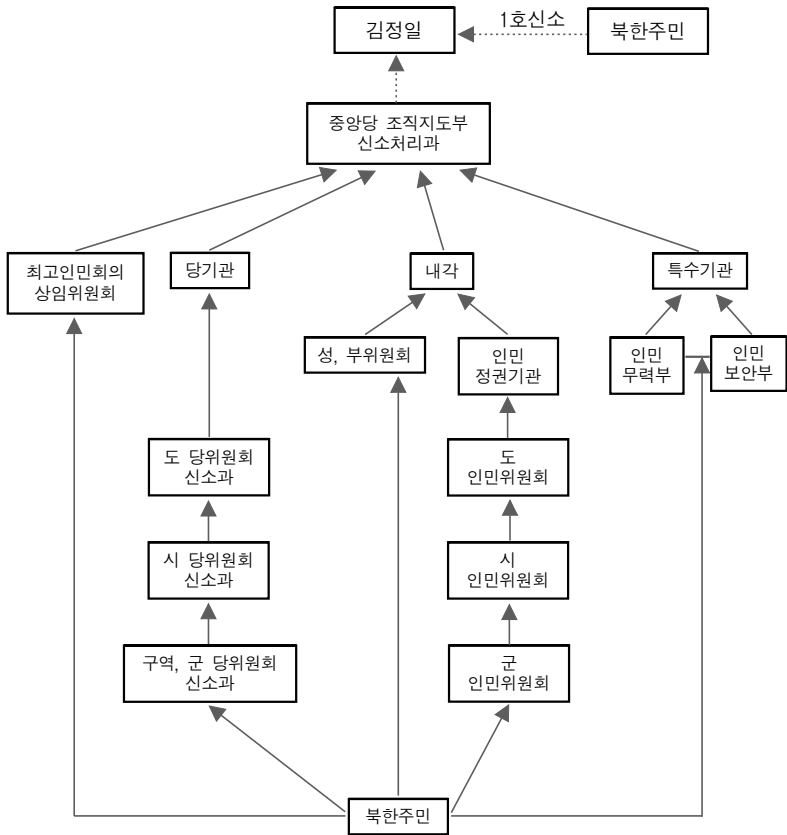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은 신소청원할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소과를 통한다. 북한 신소청원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 사업, 최고주권기관 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는 법적제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검찰기관이 한다.

⁴⁵. 『조선말대사전 2』, p. 1696.

4. 재판, 중재, 공중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중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림 IV-1 신소청원 단계



* 실선은 공식 경로, 점선은 비공식 경로

I
II
III
IV
V

2. 신소청원 피면담자 개요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 신소와 청원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신소청원 경험이 있는 탈북자 15명을 면접하였다. 15명 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5명이다. 신소를 제기한 시점은 2000년 이전이 8명, 2000년 이후가 7명이다. 신소처리기관은 당소속 신소과에 제기한 것이 10건이고 보안기관은 3건, 구 중앙인민위원회가 1건, 중앙비사그루빠가 1건이다. 정치문제 즉, 출당, 철직, 추방, 입당 등과 관련된 내용이 4건,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이 7건, 기타(오토바이 불법면허, 이력서 오류, 주택신설, 이직)가 4건이다. 이들 중 신소청원이 해결된 경우가 7건, 미해결의 경우가 8건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IV-2>, <표 IV-3>, <표 IV-4>와 같다.

표 IV-2 신소청원 연구 면담대상 자료(해결/미해결에 따른 분류)

해결	이름	성별	시기	대상	이유	비고
해결	차○○	여	'90	선교구역당	전사자대우 이력오류	기본계층 신소 (인민반장)
	한○○	여	'95	중앙인민위원회	부기검열	비핵심계층 서비스부문 신소
	전○○	남	'96	자재상사	간부해임	집단신소
	김○○*	남	'97	도 안전국 정치부	보안원 신소	비핵심계층 신소 (철도부문)
	문○○	여	'99	보안성	돈장사	조선족 위장신소
	조○○	남	'03	군당	주택보수	교원계층 신소
	이○○	여	'04	연합당	이직	가동여성 신소 (탄광부문)
미해결	김○○**	여	'80	중앙당	추방	기본계층 1호신소건 사례
	신○○	남	'85	무산광산당	출당	이남출신
	정○○	남	'87	중앙당	입당, 외화벌이	핵심계층 신소 군부신소사례
	채○○	남	'94	보위부4국	철직	(전)중앙당 지도원 신소
	권○○	남	'01	도당	외화벌이	전문당일군 신소
	박○○	남	'02	도당	입당	교원계층 신소
	최○○	남	'08	도당	비리	당일군 신소 (직속부문)
	이○○	남	'08	양강도 보안국	불법운전면허	보안기관 신소처리 행태

* 이후 김○○1로 표기

** 이후 김○○2로 표기

I
II
III
IV
V

●표 IV-3 신소청원 연구 면담대상 자료(성별에 따른 분류)

성별	이름	해결	시기	대상	이유	비고
남	신○○	미해결	'85	무산광산당	출당	이남출신
	정○○	미해결	'87	중앙당	입당, 외화벌이	핵심계층 신소 군부신소사례
	채○○	미해결	'94	보위부4국	철직	(전)중앙당 지도원 신소
	전○○	해결	'96	자재상사	간부해임	집단신소
	김○○1	해결	'97	도 안전국 정치부	보안원 신소	비핵심계층 (철도부문)
	권○○	미해결	'01	도당	외화벌이	전문당일군 신소
	박○○	미해결	'02	도당	입당	교원계층 신소
	조○○	해결	'03	군당	주택보수	교원계층 신소
	최○○	미해결	'08	도당	비리	당일군 신소 (직속부문)
	이○○	미해결	'08	양강도 보안국	불법운전면허	보안기관 신소처리 행태
여	김○○2	미해결	'80	중앙당	추방	기본계층 1호신소건 사례
	차○○	해결	'90	선교구역당	전사자대우 이력오류	기본계층 신소 (인민반장)
	한○○	해결	'95	중앙인민위원회	부기검열	비핵심계층 서비스부문 신소
	문○○	해결	'99	보안성	돈장사	조선족 위장신소
	이○○	해결	'04	연합당	이직	가두여성 신소 (탄광부문)

표 IV-4 | 신소청원 연구 면담대상 자료(시기에 따른 분류)

시기	이름	성별	해결	대상	이유	비고	
2000년 이전	'80	김○○2	여	미해결	중앙당	추방	기본계층 1호신소건 사례
	'85	신○○	남	미해결	무산광산당	출당	이남출신
	'87	정○○	남	미해결	중앙당	입당, 외화벌이	핵심계층 신소 군부신소사례
	'90	차○○	여	해결	선교구역당	전사자대우 이력오류	기본계층 신소 (인민반장)
	'94	채○○	남	미해결	보위부4국	철직	(전)중앙당 지도원 신소
	'95	한00	여	해결	중앙인민위원회	부기검열	비핵심계층 서비스부문 신소
	'96	전○○	남	해결	자재상사	간부해임	집단신소
	'97	김○○1	남	해결	도 안전국 정치부	보안원 신소	비핵심계층 (철도부문)
2000년 이후	'99	문○○	여	해결	보안성	돈장사	조선족 위장신소
	'01	권○○	남	미해결	도당	외화벌이	전문당일군 신소
	'02	박○○	남	미해결	도당	입당	교원계층 신소
	'03	조○○	남	해결	군당	주택보수	교원계층 신소
	'04	이○○	여	해결	연합당	이직	가두여성 신소 (탄광부문)
	'08	최○○	남	미해결	도당	비리	당일군 신소 (직속부문)
	'08	이○○	남	미해결	양강도 보안국	불법운전면허	보안기관 신소처리 행태

I
II
III
IV
V

3. 신소청원 실상과 특징

가. 신소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

(1) 신소에 대한 불신(불만무마수단)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신소청원 제도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소는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제도이고 신소가 직원들이 신소를 신속히 조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든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신소를 제기해도 ‘가진자’ 위주로 사회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신소처리가 잘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신소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폭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지 않겠는가. 개인들이 신소를 많이 했다면 뽑아낼 수야 뽑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김정일이 나쁘다고 다 말을 한다. 내가 북한에서 주패치기랑 하면서 김정일이 그 새끼 나쁘다고 말을 하면서 참자하고 얘기를 은근슬쩍 한다. 김정일이가 북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산층을 잘 유지시켰단 말이야. 그러다보니 중산층이 비리를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살다보니까 신소가 들어가도 제대로 신소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⁴⁶

신소청원법을 들어보니까 의심스럽다 그거죠.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소가 없다 이겁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 북한정권에서도 우리도 국민들의 고통을 안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소청원법을 만들지를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실례로 당위원회 청사 앞에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배급을 안 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급을 줄 때에는 이렇

⁴⁶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게 하지를 않았다. 신소청원법도 마찬가지로 북한정권도 잘 알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 기만하기 위해 신소청원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능마비를 복귀하기 위해서 신소청원법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말이다.⁴⁷

제가 해본 결과 신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해보야 해결도 안되고 자꾸 중앙당이나 찾아 다녀야 하고⁴⁸

신소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은 마구잡이니까. 내부가 다 썩었잖아요. 우리가 돈 보내면 김 아무개라는 여자를 통해서 중국의 친척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보위부, 안전부 아이들을 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셋이서 같이 먹는답니다.⁴⁹

조직부 통보기능이라기 보다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소를 해서 됐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소과에 다녀보아서 아는데 그게 잘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해결 되는 것보다. 북한이 무력부 검열 붙는다, 중앙당 검열 나온다 이렇지만 제가 비사회주의 검열을 받아봤잖아요. 비사회주의 검열을 받고 총화까지 해 보았는데 일반사람들의 제기는 들어주지도 않아요.(과거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⁵⁰

그리고 제가 수산물 상점에 있으면서 검열을 받아 봤었는데 검열하는 동안에 판매원들 사이에 이간을 시켜요. 와서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점장이 5명이다 하면 판매원들은 서로를 다 알잖아요. 또 둘이서 점장이 없을 때 좋은 미역이나 명태나 물건이 들어오면 둘이서 “우리 가지가자” 하고 둘이서 문건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판매원 간에는 아는데 점장은 모르잖아요. 검열을 들어오면

47- 전○○, 2010년 7월 23일 면접.

48-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49-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50-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일하는 곳에 와서 이간을 시켜요. “어느 판매원이 당신이 이런, 이런 것을 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 사람이 반감이 생겨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을 시켜 놓고는 검열을 하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처리는 알아보지도 않고 교화 보내고 교양소를 보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검열을 받아 봤고 또 인민 반장을 하면서 비사회주의도 받아보고, 이거는 국가가 주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간질 시켜서 흠집을 잡아서 잡아넣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같겠죠. 과거에는 신소라는 기능이 살아 있어서 개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일단 곁에서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결백해도 밝혀낼 수 없어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옆집의 말을 듣고서 처리한다면 이 사람이 밝히려고 아무리 신소를 해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더라고요.⁵¹

교화 몇 년 등의 권한은 가지지 못하고 검찰에 넘기고 이것은 재판에 넘기고 하는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직 부서는 직접 김정일한테서 신임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왜 신소담당자들이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간다. 신의주도 그렇고 남포도 그렇고 시당책임비서도 목이 달아났다. 그 때 이 사람들이 지하에 병커를 건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하에서 산다고... 그런데 이런 책임비서와 같은 간부들은 신소를 해도 바로 바로 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소를 하면 해결이 거의 안된다.⁵²

국가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 토대가 이래서 억울하다고 신소를 해도 해결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된 이런 사회에서 신분이 좋으면 어떻게 신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서 장사를 잘해서 생계를 유지

⁵¹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⁵²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출근을 안 하면 신분이 좋던 나쁘든 다 반동으로 불리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⁵³

예외적으로 보위지도원이 개인감정으로 보위부장을 죽이려고 해서 퇴출된 경우는 보았다. 개인감정이라는 것도 다 물물교환(뇌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보위부와 안전부등은 저희들끼리 비리를 통해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서로가 비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려고 한다. 안전부, 보위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물물교환도 다 농장의 작업반장, 관리위원장, 리당비서 등 농장간부들과 뇌물 등에 관련하여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전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못 보았다.⁵⁴

신소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죠. 북한에서 사람들이 신소하면 잘 안 들어주잖아요. 솔직히, 이길 승산이 있으면 신소하는데, 억울해서 신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다 안되고 오히려 거꾸로 물려요. 그래서 될수록 신소 안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⁵⁵

신소를 해도 80~90%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소를 하는 경우에는 더 신소가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신소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소하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신소하는 사람의 경력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신소한 사람이 불평분자가 되고 신소한 사건도 잘 해결이 안되는 것이다.⁵⁶

53-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54-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55- 문○○, 2010년 7월 22일 면접.

56- 이○○, 2010년 8월 27일 면접.

I
II
III
IV
V

(2) 신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물론 신소청원자들은 막연하게나마 신소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신소하기 전의 기대이기 때문에 신소에 성공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체제나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다.

법은 몰라도 신소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있다.⁵⁷

정확히는 모르는데 “억울한 게 있으면 신소를 하면 정확히 풀어준다” 이걸로 알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풀어주지 않고 애매하니까.⁵⁸

저 당시에는 믿음받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⁵⁹

(3) 신소 전후의 심경

주민들은 신소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신소 전 심경은 이판사판인데 신소나 해보자는 식이다. 죽을 각오로 신소를 하는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도 한다.

신소가 해결이 안되면 개인복수라도 해야겠다. 북한에서는 개인복수도 할 수 없지만 속으로 품고 있다고 그러죠.⁶⁰

57.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58. 한○○, 2010년 7월 22일 면접.

59.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60.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방법이라는 북한에서는 각오하지 않으면… 첫째로는 각오예요. “내가 내 자리를 내놓아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 이렇게 자기 운명을 걸지 않으면 안돼요. 일반주민들은 “난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좋으니까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각성하면 할 수도 있어요.⁶¹

나. 신소제도 활용 배경: 억울함의 호소

북한주민들이 신소를 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억울한 것도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되면 신소가 불가능하다.

너무 어이가 없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집행위원회에서 나를 나가라는 소리도 없이 흘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때 당시는 그랬는데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을 찾아가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신소과에 신소처리까지도 하면서도 나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출당처리를 하는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 신소한 아줌마들을 도끼로 찍어죽이겠다고 하니까 당원등록과 과장이 나를 막 얼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⁶²

내가 아까 불평불만이라고 했던 것은 노랑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억울한 심정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⁶³

신소는 그저 억울해서 한다. 그 정도다.⁶⁴

61-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62- 신○○, 2010년 7월 23일 면접.

63-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64-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신소내용을 보면 초급당비서하고 틀려서 왔다 하면 초급당 비서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걸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매장됐으면 하는 경우에서 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되지. 요해사업 내려가지, 매 사람을 부르지.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두건이 다 나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지 정치위원하고 관계는 나는 그때는 노동자가 감히 책임비서를, 정치위원동지를, 나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단지 그걸 해결해 달라는 것뿐이지 내가 정치위원동지를 잡아달라고 했나. 나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난 받을만한 일이 아니었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저도 억울은 하죠.⁶⁵

너무 억울하니까. 신소해도 안될걸 알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행어나 해서 한 경우죠. 그 경우에는 김정일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백성들이 언제 내가 권리를 찾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인권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게끔 하기위해서 만든 게 신소과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편견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⁶⁶

북한사회에서 왜 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함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로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신소를 하면 내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내가 신소자라면 통보지도원이 그래도 같이 앉아서 3자를 불러놓고 당신 이렇게 해주라. 보복이 더 크더라도 내가 그 순간 조금이나마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⁶⁷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은 안 쓴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간이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등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65. 정○○, 2010년 7월 24일 면접.

66.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67.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대체하는 것 같다. 우리는 벌레보다 못하구나 하던 식으로 말을 보통한데... 보통 억울하고 인간대접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인권을 표현하면서 신소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으로는 연결이 되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⁶⁸

다. 주민들의 신소제도 활용 양태

(1) 기명 신소

당사자가 신소청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한다. 물론 증거도 충분해야 한다. 만일 증거없이 신소할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

과거에 신소함에 무기명신소가 많이 들어간다. 무기명신소는 웬만해서는 신소과에서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증거를 가지고 신소를 하면 잘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기명신소는 신소처리조차도 하지 않고 한다. 해도 한 사람을 찾아내서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들어온다.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신소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주고 그 선에서 처리를 한다.⁶⁹

지금은 무기명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한두 건이 있었는데 90년대 후로는 무기명한 사람들을 더 안 좋게 봐요. “네가 떳떳하면 밝히지.” 그건 모호한 거로 봐요.⁷⁰

이 시기에 리당비서의 비리를 신소를 했는데 자꾸 신소가 취소되어서 되돌아오자 무기명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무기명신소가 당기관에 올라갔는데 무기명신소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명신소자의 신원을 필체를

68- 전○○, 2010년 7월 23일 면접.

69-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70-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통해 잡아낸다. 예를 들면 당총회 때 필기한 노트를 다 거두어 간다던지 심지어 그 자식들의 노트까지도 거두어가서 필체를 대조하여 그 신소한 사람도 잡아내는 것이다.⁷¹

그러나 반대로 ‘비사회주의그루빠’가 무기명 신소를 제안한 경우도 있다.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통로로는 자기들에게 와야 할 물자나 배급이 안 오자 신소를 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부사장신소사건을 통해 탄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소를 하게 되었다. 비사회주의그루빠에서도 부정축재에 대한 무기명신소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⁷²

(2) 근거있는 신소

당연히 신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신소청구장에 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신소과 담당 직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 개인감정 때문인 것으로 취급하여 신소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신소를 한다. 주변사람들이 나쁘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소를 꺼려한다. 내가 부기원이나 저 사람이 나쁘다고 신소를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신소당한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난다면 내가 오히려 더 나쁘게 된단 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제풀에 물러난다. 차라리 이렇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도장을 하

⁷¹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⁷²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는 사람들이 많다. 신소를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걸렸다면 리당비서한테서 더 추궁을 받을 텐데 그럴 바에는 중국으로 도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⁷³

손도장은 안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걸 다 적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감정 때문에 한 것이면 그 후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는가?” 이런 건 물어보는데 손도장은 안 찍은 것 같아요.⁷⁴

(3) 안전한 신소장 접수방법

신소장이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신소자는 등기를 해서 역무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받아 두어야 한다. 때로는 직접 신소과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증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미 전에 삼봉역에서 화물원을 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기에 등기를 해서 신소장을 부쳤다. 역에서 등기를 해서 화물원에게 인계를 해주고 도장을 박아서 넘겨주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챌래야 가로챌 수가 없다.⁷⁵

그런데 돌아서면,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증명서하고 통행증이 없으면 신소를 안 받아줘요. 대부분 통행증이 없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무조건 증명서는 가지고 들어와야 해. 그렇게 들어오면 친절하게 상담을 다 받고 나가진 못해요. 분주소에 전화를 해서 평양역 분주소에서 와서 모셔 가라고 하는데 빨리 가져다가 쫓아 버려라 이거지.⁷⁶

73.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74.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75.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4) 신소 후 권력과 인맥 동원

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신소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맥이 동원되어야 한다. 대부분이 당 고위직이나 보위부 등 권력기관이 동원된다.

후에 얘기에 의하면 신소처리지도원이 정치위원 형한테도 또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얘기했나 봐요. 정치위원 운전수가 얘기하는데, 후에 형한테 죽도록 욕먹었대요. 정치위원이 “네가 정치위원이 어떻게 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어” 결국에는 제가 잘못이 없었던 거고 순전히 인간사이의 감정 때문에 맞았던 경우예요. 내가 중앙당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감히 신소할 엄두를 냈겠어요? 신소를 하게 되면 내가 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관련된 거 내놓고 다 단위들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들어갔다거나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걸렸다거나 하면 반드시 중앙신소처리 지도원이 내려가서 딱 해줘요. 아니면 도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 와서, 이게 안면이지. 이런 거는 안면문제죠, 안면 없으면 안되요. 그거는.⁷⁷

신소를 하는 사람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든다. 권력과 뺨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고나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소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에서 법대로 한다면 못살게 되었다. 북한법에 의하면 100% 걸리게 되었다.⁷⁸

내 아는 친구의 남편이 분주소 지도원을 했는데 사촌형이 사회안전성에서 높은 간부 했어요. 죽죽 올라가서 2부과장

76. 정○○, 2010년 7월 24일 면접.

77. 정○○, 2010년 7월 24일 면접.

78. 이○○, 2010년 8월 27일 면접.

되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증명서 하나만 떼도 별난 것이 다 생기니까 안면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로, 군당 조직부 책임지도원과 안면관계가 없으면 이거 해결 받지 못해요. 내가 정통을 찢었어요. 북한은 좀 잘 생기고 급이 있으면 모든 여자들이 제 거잖아요. 쪽지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고, 북한은 간부들과의 안면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조선 사람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중국 사람으로 가장하고 했으니까 해결됐죠.⁷⁹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내가 보기에다 신소를 하면 신소를 당한 사람이 신소를 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 신소를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다. 신소 당한 사람이 간부이기 때문에 사실의 정확성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대화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소의 처리결과도 달라진다.⁸⁰

신소를 하는데 ‘배경이 있어야 신소된다’ 하는 인식이 있어서 일반사람들은 신소를 안 하고, 하면 “머저리”라고 한다… 사형판결 받았다가 교화소에 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3년 했다가 죽었지만, 314군수동원국참모장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2005년에 사형판결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국방위원회 군수동원국 산하 총참모장으로 직급이 있어요. 밑에 참모장이 ○○○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쯤 되니까 가족배경이 있으니까, 여러 라인으로 해서 신소를 했어요. 국방위원회로 해서 중앙당 비서국까지 올라갔어요. 김정일이 안 지는 모르겠는데 비서국에서 내려와서 배경도 좋은 사람인데 15년 먹었어요. 사형을 면제하고, 배경이 좋은 거는 북한에서 신분 상승하듯 잠수함 탄다던가, 비행기 탄다던가 하면 당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가계가 있는 사람들은 교화에 넣지 않은 거죠.⁸¹

79-문○○, 2010년 7월 22일 면접.

80-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81-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신소를 해도 그 사람의 경력이 좋거나 평이 좋다고 하면 신소가 잘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북한의 법기관이 공정하지 못하게 신소사건을 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극소수 이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⁸²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해결 안 해줘도 뻔하다. 일반적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걸렸지 중국파로 걸렸지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건 다치려고 하지 않아요. 신소자들이 다 자기 신소가 해결돼야 공정하다고 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데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신소자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⁸³

원칙이야 공정하게 하라인데 제가 신소처리한 사람이라 보면 아무래도 편견은 두게되어 있어요. 그니까 투사가족이다 당비서다 하면 뭐 준비정도에 따라서 원칙대로 안하고 편견을 가지고 같은 문제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존중해 주지 북한에서 더구나 그렇지요. 인맥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도 편견을 가지고 이제처럼 같은 문제지만 계층에 따라 편견을 가지게 돼요. 또 신소 받는 사람들 자체도 편견을 가져요.⁸⁴

지금은 안전부에 신소를 해도 리당비서나 관리위원장의 비리는 죄가 없음으로 풀려나거나 신소를 해도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풀려나는 것이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장대로 기술지도원은 기술지도원대로 농장원은 농장원대로 밭에 있는 옥수수 등 먹을거리를 집으로 암암리에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국영농장의 옥수수 밭과 개인이 재배하는 옥수수 밭의 수확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북한사회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각 개인 사람마다 생계유지를 위해 비리를 하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비리로 얽혀있기 때문에 신소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82. 이○○, 2010년 8월 27일 면접.

83.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84.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것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리당비서가 자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강냉이 몇 백 킬로그램을 해결해서 달라고 작업반장에게 요구를 하면 해주어야 한다. 작업반장이 리당비서의 지시를 거역하면 리당비서의 권한으로 작업반장을 군당 등에 고소를 하면 작업반장은 리당비서에 대해 신소를 해도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⁸⁵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책임비서한테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그렇게 안하고 책임비서를 만나고자 하면 도당청사에 가서 기다리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책임비서의 집 근처에 가 있는 방법이 두 번째 책임비서 연줄이나 친척을 하나 끼는 게 세 번째예요. 안 그러면 절차로 가자고 하면 못해요. 조직부선에서 신소처리부에서 신소가 들어오면 과장이나 부장이 받아서 처리 못하고 조직비서한테 올리면 조직비서 자체가 “이거는 네 선에서 처리 못하고 왜 나한테까지 올라와?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네가 나가서 이해시키고 열려라”⁸⁶

그렇죠. 체계적으로 걸치지 않으면 도당에서는 더 안 만나 줘요. 그러면 중앙당에 가서 청원을 하는 거죠. 그때는 편지를 써서, 내가 중앙당가서 신소과장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신소청원으로 가는 거죠. 그걸 신소지도원이 청원을 봐 가지고 “아 이거는 중재사안이네. 이거는 바로 들어갈 거고” 거기서도 깔아뭉개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신소 같은 거를 만약 한다면 내가 어느 농장작업반장인데, 그해 농사를 짓느라고 알곡을 빼돌려가지고 깔았다가 비료철에 팔아서 비료를 사서 뿌렸는데 그게 부당한 이유로 했는데 검찰소에서도 부정이라고 밝혀 줘어도 자기 먹은 게 아니고 일단 농장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책임비서가 이걸 엄중하게 봐서 작업반장을 해임으로 해서 해임된건데 거기다가 출당까지 시켰어요.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정치적 생명에 관해서 중앙당에다

⁸⁵-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⁸⁶-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신소를 하는 거죠. “책임비서 동지에 대해서 이러한 신소를 합니다. 책임비서는 아무 아무 날에 와서” 이게 신소청원이죠. 그거는 군당신소과에 가면 안 되잖아요.⁸⁷

(5) 신소 후 뇌물 제공

당연한 논리이지만 배경이 없을 경우에는 뇌물이 동원된다. 경제난으로 인해 하위 당 관료 및 권력기관원들도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뇌물을 챙긴다. 신소과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신소를 해봤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도 북한에 나갔을 때, 옛날에는 한국상품을 몰래 팔았었는데 그때는 한국상표가 있는 한국상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장에서 원래는 한국상품을 팔수 없었잖아요.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저 사람이 한국상품을 판다”고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살기 힘들고 아무렇게 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 신소를 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너나 나나 다 바쁜데. 예를 들어, 불법이 아닌데 시장에 나가서 팔다가 빼앗겼다 해서 안전부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10만원 가지고 오라 누굴 먹여야지 찾아 올 수 있다 하니까 신소를 하는 자체가 머저리죠. 10만원의 돈이 어디에 있어요. 국경연선이라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10만원을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10만원을 가져다 주는 것 보다 그거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⁸⁸

뭐 신소함에 쪽지를 넣었는가 물어보기에 어차피 알게 될 거하고 그 처장에게 내가 신소함에 쪽지를 넣었다고 말을 했다. 그게 결국에 해결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인맥관

⁸⁷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⁸⁸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계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니까 계속 신소를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 나와 같이 위조하여 발급하는 번호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차량사업소에 등록을 하여 평양보안성에 번호를 부여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보류를 시키니까 아마도 안전국차원에서 번호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압수당하여 안전부에 2달 가까이 구류를 시켰다. 나중에 그 오토바이를 찾으려고 담배와 술을 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이런 위조문건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겠다고 없는 잘못이지만 시인을 해서 오토바이를 찾게 되었다.⁸⁹

그런 것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잡혀나가 보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안전원들도 신소 받는 사람들도 그냥 안 해주더라고요. “돈을 10만원 가지고 오라. 얼마를 주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⁹⁰

조직적으로 돌아간다고보다는 통보원이었던 사람이 군당 조직부 담당지도원으로 조직부 내에서 리로 파결될 수도 있고, 통보지도원을 하다가 당원등록과장으로 가라, 당원등록지도원으로 가라, 당원등록과도 조직부 계통이니까 돌아요. 돌다나니까 우리 형은 한 1년차 됐는데 신소과장하고는 게임이 안돼요. 신소과 과장은 군당 안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고 우리 형은 이제 조직부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된 신빠니까 만나서도 하고 같은 군당에서 일한다고 해도 신소과장한테 가서도 뭐라고 권해 드릴 정도가 안 되니까, 집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갈 때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고양이 담배 한 곱에 120원에 하는 거 다른 담배는 80원, 90원 할 때 제일 비쌌거든요. 그 고양이가 담배는 온성군 당책임비서만 피우는 줄 알았어요. 조직비서나 책임비서가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 고양이가 담배를 한 막대기 사

⁸⁹- 이○○, 2010년 8월 27일 면접.

⁹⁰-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가지고 갔어요. 그 당시 강냉이 1kg이 40~50원 정도였을 때라 고양이 담배를 사려면 강냉이 20kg를 팔아야 그 담배를 한 막대기를 못 구입하거든요. 그 강냉이를 한 배낭 팔아서 담배 한 막대기를 구입했어요. 신소과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3호님이 “왜 왔나?”해서 “온성군 11반에 사는 누구인데 과장동지 만나러 왔다”고 하니 “안 계신다” 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들어가는 거 봤는데 꼭 말씀드릴게 있습니다”라고 하니 “집에 찾아오지 말고 사무실에 가서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소과장이 “야 누구야?” 했는데 “누구, 아빠 누가 찾아왔어요?”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나와서 “어디서 왔어요?” 해서 “제가 중학교 음악교원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집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려고 왔다” 하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교원인 점이 많이 먹힌 것 같아요.⁹¹

그 사람들도 그런 건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담당부원들도 1,200원을 팔아서 자기 집을 먹여 살려야, 그렇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신소에 한해서는 잘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신소를 해도 안 되거니와 신소받기도 어렵고 신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⁹²

그렇죠. “북한에서 신소한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는가?” 당의 방침에 따라 그시그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 신소를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의 방침을 근거로 해서 신소처리는 하되 거기에 누가 더 얼마만큼을 주는가에 따라 해결이 빨리 되는가, 초기에 더 시원하게 되는가에 따라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만족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른 거지.⁹³

⁹¹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⁹² 위의 면접.

⁹³ 위의 면접.

(6) 김일성 및 김정일에게 직접 신소(1호신소과)

매우 희귀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신소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1호신소'라고 하는 이것은 김정일과 안면이 있는 경우이나 가능하다.

초기에 직접 중앙당신소과에 가서 김일성한테, 1호신소과에 했어요.⁹⁴

(7) 신소에 대한 검증

만일 신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부서의 신소과 직원은 신소내용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여 사실유무를 파악한다.

서너 달 후에 중앙당에서 신소과 지도원하고 조직부 지도원이 내려 왔었어요. 우리군에 와서 삼일 목어서 저를 만나서 제가 “우리는 억울하다 여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천대 받는다. 세대주가 힘든 일을 하고 천대를 받는데 왜 우리가 이래야하나.” 이거를 제가 열렬하게 호소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서 정착을 하면 자식들은 편안한 자리에다 교체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일자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군당에다 몇 번 제기해서 군당책임비서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이 문제는 하부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 해해달라고 만약에 이 세대가 다시 평양에 올라가려면 하부단에서 못해도 서너 명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다.⁹⁵

⁹⁴-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⁹⁵- 위의 면접.

I
II
III
IV
V

(8) 집단신소

신소자가 정말 억울할 경우 주변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상급당에 알려질 경우 ‘비사그루빠’가 파견되어 실상을 파악해서 억울할 경우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집단신소가 이루어져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할 때 신소가 여론화되어가지고 비사회주의그루빠가 내려와서 해결을 하면 다 해결이 되었다. 여론이 조성되어 신소된 사건은 다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제기된 신소는 공식화가 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해결이 안 되고 신소를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처리도 안 되면서 말이다.⁹⁶

과거에는 일대일로 신소를 해서 처리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우선, 일대일로 잘 안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해서 한사람씩 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살아 있다” 이렇게. 일대일로 안 하고 5명이 제기했다 하면 “이놈은 처야 한다” 하고 하나치는 거다..⁹⁷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다 목이 떨어져나가고 부지배인은 연합운동장에 군중을 집합시켜 놓고 사형을 해버렸다. 간부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차원에서 여론이 형성되어서 신소가 들어오면 엄중한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영광군당책임비서도 정신을 차리지요. 영광군모범을 따라서 하천정리를 잘하라고 교시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이 조성되어 신소가 되니까 영광군당책임비서도 철직을 해버렸던 것이다. 아무튼 영광군당책임비서가 일을

⁹⁶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⁹⁷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도 여론이 형성되어 신소를 하니까
철직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로 떨어지는 않고 다
른 군에 책임비서로 간 것이 아니라 행정 간부로 갔다고 한
다.⁹⁸

(9) 신소의 성공 사례

대표적인 신소 성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권개념이 나오고 인민보안부의 구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이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향
후 북한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유의해
서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저도 실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흑간 있었
어요. 그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러나 99%가
평양에 못 올라갔죠.⁹⁹

2000년 9월. 바꾸기 전에 중앙당지도원이 있었는데 해임 철
직됐던 보안원들이 신소를 해서 온성에 파견된 중앙당 지
도원이 해임 철직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사회안
전부를 너무 가혹하게, 미산에 내가 교원으로 갔을 때 당시
분주소가 있었는데 분주소 소장, 담당지도원, 경비지도원,
주민등록지도원이 몽땅 다 바뀌었어요. 근데 분주소장이 출
당 해임, 철직되서 온성탄광 공무직장 노동자로 갔어요. 두
번째로 담당보안원이 출당 해임 철직을 받고 감옥에서 예심
을 받고 징역갔어요. 경비지도원 자체가 출당은 안 맞고 해
임 철직이 되서 은덕 77공장에서 경비주재를 하다가 경비
주재가 사회안전성에 넘어가면서 우리 온성군 쪽에 군안전
부 국경경비지도원으로 왔다가 그냥 안전원 되었는데 해임
철직되서 은덕으로 갔어요. 다음에 주민등록지도원의 별이

⁹⁸-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⁹⁹-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I
II
III
IV
V

강등했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떨어졌죠.¹⁰⁰

그 뿐만 아니라 내 친구 동포 분주소 소장하던 사람이 또 출당 철직 해임 됐어요. 온성군 안전부를 정말 19명인가 몇 명이 출당 해임 철직이 됐고 몇 명이 강직되고 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어요. 한 2~3년은 안전원들이 장마당에 나와서 “이 쌍 간나새끼”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속이 시원해서 막 대들고 신소하겠다고 이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나왔어요. “보안원들이 너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다” 해서 처음으로 인권문제가 나왔어요. 분주소에 들어가면 애들이 때리고 구타를 했잖아요. 그것도 신소를 하면 그 사람이 철직 해임되게 됐어요. 지금 들어가면 담당지도원들이 사람을 구타를 잘 안 해요. 옛날에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몽통한 구두로 차고 주먹질을 하고 인권을 무시하게 유린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차차 없어졌어요. 지금은 분주소에 가면 “야, 이 새끼” 때려도 한대나 치고 누군가가 하다가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 가족이 중앙당에 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소를 처리해서 사회안전성 모든 기관들을 몽땅 다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인민보안성으로 바뀌고 그때 인민보안성 정치부장하던 사람이 그때 총살당했죠. 최○○이라고.¹⁰¹

북한에 있을 때 연합기업소에서 강철을 중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 절반 밀가루 절반을 받아서 노동자들에게 공급을 해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단천제련소에서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아가지고 밀가루 같은 것을 받아왔는데 여기서 사장과 책임비서가 외화벌이 명목으로 엄청나게 부정 축재하게 되었다. 중국에 강철을 팔아서 받아왔을 때는 3배 정도의 밀가루를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 10킬로그램씩 가게 된 것이 5킬로그램씩 밖에 가지를 못하게 된 것이다. 도당 책임비서랑 이런 것이 신소가 되었는데 묵과가 되었다. 초급당비서하고 세포비서만 남기고 다 신소를 했는데 신소가

¹⁰⁰-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¹⁰¹- 위의 면접.

접수가 되지를 않고 반송이 되었다.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가 강직이 되고 그리고 사장이 철직이 되고 출당 당하고 그리고 후방부지배인이 사형을 당하였다. 사형을 당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다. 그래서 나중에 은밀하게 다시 신소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자동차도 일본닛산차를 가지게 되게 되었고 후방부지배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형을 하게 된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¹⁰²

(10) 신소대상의 예외

거의 모든 내용이 신소대상이지만 군부와 관련된 내용은 신소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군정치의 현주소인 것이다.

군사훈련 가지고 신소를 제기한 것은 없었다. 아무래도 호랑이 가죽이니까 무서워하지요. 본능적으로 의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소리이다. 군대들이 도둑질을 해도 말을 못한다. 김정일이 보천군에 왔을 때 보천군 리당비서가 군대들이 주민들의 부락에 내려와서 도둑질을 하고 해서 힘들다고 하자, 김정일이 내가 통일이 되면 다 갚아주겠는데 하고 말을 하자 더 말을 하지 못하고 김정일이 가고 나서 그 리당비서가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통보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다. 어디라고 밝히지 않고 김 아무개 리당비서라는 정도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왔더라.¹⁰³

라. 신소자의 명예

북한에서 신소자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주민등록에 신소자로 기록되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으로 규

¹⁰²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¹⁰³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정된다. 일종의 불평불만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간부가 되려는 사람은 신소를 하지 않는다. 신소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쁜 곳으로 철직되기도 한다. 심지어 신소를 잘못하면 ‘3대’가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용감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이후에는 ‘바보’, ‘나쁜 사람’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신소하는 행위가 매우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꼬리표 붙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일반적으로 신소는 딱지가 붙는 게 무서워서 잘 못해요. 출세할 사람은 신소를 안 하죠.¹⁰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소로 해결 못해서 더 나빠졌고 더 험한 곳으로 갔어요.¹⁰⁵

이제처럼 어느 단위를 지도하다가 그 사람이 출판과 과장이었는데 중앙방송도 보고 통신사도 보고 각 잡지사도 보고 텔레비도 보는데 “금 초급당비서가 어떻다”고 말했는데 몇 사람이 잘못 듣고 이것을 통보과에 말해서 비밀보장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보과에서 심한 거는 수령님한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말한 것과 같이 “통신사는 인민의 귀와 눈입니다” “통신사가 자면 나도 잡니다.” 이렇게 해서 초급당비서 “어떻다” 해서 일부 편협한 복수주의자들 약간의 결함을 가지고도 그것을 확대해서 신소과에 제기해서 주○○이라고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항일투사 자제하고 또 살고 주○○ 자체는 지주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 성분이 그러니까 종합대학에서 쟁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관계가 안 좋고 그 양반은 부하권이 많거든요, 방송원들을 자꾸 다쳐서 그것이 재개돼서 모가지 떼겠다 했는데 주○○이 아주머니가 수령

¹⁰⁴-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¹⁰⁵- 위의 면접.

님이 귀엽게 보고 충애를 받는 분이라 “우리 남편이 지금 이러는데 난 인정 안한다”이래서 “아내가 좋지 뭐, 나는 어쨌든 이 사람과 살겠다” 해서 보도과 과장이 이 말을 듣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인데 “○○ 동무 이혼을 해” 하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서 같이 혁명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과에 이야기 해서 거꾸로 당비서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당비서들도 저희들도 결정하니까. 당장 올려오라 해서 그 양반이 5층에 사는데 그 이튿날 이불을 감고 자살했어요. 그런 실례가 있어요. 잘해야지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¹⁰⁶

북한에서 신소를 잘못하면 3대 멸족해서 정치범교화소에 간다는 소리도 있고 했으니까. 만약 중앙당 신소과까지 올라가도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쟁참가자이고 영예군인이고 김일성이 표창장도 받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면서 영예군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¹⁰⁷

그런데 부기원은 리당비준이에요. 리당에서 선발해서 리당 위원들이 모여서 리당에도 위원들이 계획지도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사람 부기로 쓰겠다하면 찬반으로 써요. 원래 부기하던 여자를 작업반 통계로 내보내고 우리친구 엄마를 부기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해친 리당비서를 일단 물었어요(통보했어요) 물었는데 부기들이 리당비서의 비리를 제일 잘 알아요. 부기들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리당비서의 전표를 부기한테 내려 보니까 리당비서의 뒤편으로 있어요. 남새 얼마 “오늘은 어디서 가는데 리당비서한테 남새 얼마를 주라.” 그거는 관리위원장보다 리당비서께 더 많아요. “리당비서가 가는데 빨간 고추 10kg를 주라” 리당비서의 권한이 막강해요. 근데 이게 점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점표를 부기를 통해서 부기는 점표를 받아서 해서 군당지도원도 받아서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암암리에 그런 게 많아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부

¹⁰⁶-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¹⁰⁷-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기니까. 부기가 부기장을 마지막으로 통털어해요. 뭐 남새 얼마 하는 거, 원래는 부기장이 그런 거 잘 안해요. 부기가 다 떼주거든요. 부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 부기가 리당비서를 했는데 그 리당비서가 검열을 받게 되었는데 검열을 받고 나서 별 큰 문제가 아니다 해서 살았는데 그 리당비서는 안되고 다른 리당비서로 동급조정을 시켰어요.¹⁰⁸

그렇죠. 일반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다 쓰죠. 신소를 하면 주민등록상에 아빠나 엄마가 신소를 했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영향이 많이 가요. 대학가도 제재를 받고 군대 갈 때 제재를 받아요.¹⁰⁹

그래서 평양에서 사상투쟁회 같은 것을 하고 뺨으로 교화는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양에 가서 사상투쟁회까지 하고 난 주제에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평양철도정치국에 신소를 하다보니까 이 신소를 받은 중앙철도정치국에서 평양에서 사상투쟁회까지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다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신소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아직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재신소한 것이 더 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교화소까지 가게 되었다.¹¹⁰

안전부에 후에 온 사람들이나 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록에 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경계를 하거나 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¹¹¹

이런 사람들은 신소를 하는 각오 자체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평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

¹⁰⁸-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¹⁰⁹- 위의 면접.

¹¹⁰-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¹¹¹- 위의 면접.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본 신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 노랑지고 불평이나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신소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할 때 이러한 것은 불평분자들이 하는 신소의 성격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¹¹²

용기 낸 사람으로 평가를 했고 다음은 불평분자다. 90년대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했고, 첫 번째는 불평분자다 하는 관점이 많았죠. 지금은 첫째로 머저리예요 “왜 제기 하나?” 두 번째로 감시대상이고.¹¹³

대담성이 있고 양심상 가책이 없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용기가 있어도 안돼요. 거기서 조회를 다시 다 하기 때문에. 용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해요. 용기도 있어야죠. 안 그러면 중앙당을 쉽게 떠 올리지도 못하죠.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으면 똑 그 사람이 해결 받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니까 동정을 받죠.¹¹⁴

지금은 달라졌죠. 용기있다, 동정이 간다, 이런 쪽으로 다 흘러요.¹¹⁵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신소를 하면 불평불만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다. 신소가 공정하게 처리가 되지를 않다보니깐 나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다. 신소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조용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¹⁶

신소한 자들을 불평불만자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없잖아요.¹¹⁷

¹¹²-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¹¹³-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¹¹⁴-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¹¹⁵- 정○○, 2010년 7월 24일 면접.

¹¹⁶- 이○○, 2010년 8월 27일 면접.

I
II
III
IV
V

그렇지. 안다고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신소를 하는 사람이 어느 리나, 군이나 고정되어 있어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직장에 관련된 군당조직부에 가서도 “야 너 입마 뭐야 계속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압박감은 직장에 가면 지배인이 그러고 당비서가 그러고 이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공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빙빙 떠돌게 되면 노동과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공장의 말썽꾸러기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갈 곳은 농장이면 탄광, 그게 뭐 어째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회적분위기가 왕따를 시키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신소를 되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권유를 많이 받죠.¹¹⁸

신소한 사람들의 동태을 일주일에 두 번씩 보고를 하더라. 자기 상급당에 보고를 한다. 초급당비서가 자기 상급당비서에게 하고 상급당비서가 책임비서에게 하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다. 안전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90년대까지는 신소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비리도 2000년대에 비해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에 용기 있는 자로 불렸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평분자로 많이 불렸고 신소를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많았는데 신소를 하지 않더라. 많이 생계가 힘들다 보니 본의아니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북한사회의 경제적 특수성 때문인 것 같다. 지금은 누구나 다 불평분자이기 때문에 다 용기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¹¹⁹

바보나 같지요. 해결도 안 되는데, ‘신소하면 처리도 안 될 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¹²⁰

117-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118-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119- 전○○, 2010년 7월 23일 면접.

120- 문○○, 2010년 7월 22일 면접.

마.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신소 상황

1990년대만 해도 신소는 그런대로 처리되고 신소지들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면서 신소하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로 배타시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만 해도 신소처리가 어지간히는 됐어요.¹²¹

지금은 신소를 하는 사람자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2008년 12월 당시). 90년대에는 신소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000년 이후에 신소를 하는 사람은 머저리라고 생각을 한다. 신소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실태와 상태에서 신소를 아무리 해도 80~90%는 해결방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¹²²

지금 전반적으로 신소를 안 한대요. 하나는 국가가 과거처럼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 않고 돈이 개입되고, 신소를 하는 문제가 하나는 본인문제이고 다른 것은 국가 잘못으로 두 가지인데 90년대 경우에는 국가가 공정하게 평가하니까, 그때 하는 사람은 지금은 국가가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신소지들에 대한 사람들의 보는 시각인데, 제가 두 번 잡혀나가서 무산 쪽에 두 달 있었는데 “신소를 해봐야 해결되지도 않는 거 뭐 신소하고 어디에 가서 뭘 제기해” 이러더라고요. 90년도에는 제가 신소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신소를 하는 게 바보라고 할 것 같아요.¹²³

¹²¹-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¹²²-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¹²³-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동정 가는 사람은 아니죠. 2000년에 신소하면 바보로 알죠. 해결도 안 될걸 왜 하나, 바보로 알죠. 90년도 전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조금 불평분자라고 했죠. 2000년 후에는 불평분자가 아니고 바보라고 했죠.¹²⁴

2000년도에는 먹고살기 힘들니까 먹고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먹고 살아야지” 인데 그때 당시는,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식량이 한두 달씩 밀리고 했는데 이때 와서는 식량이 95년 이후부터는 일이년씩 한 번도 못타고 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아도 “그까짓 거 배가 고프는데 신소를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는 꼭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신소를 하죠. 90년도 그때는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번해서 해야 하니까. “그거 해명 되지 않으면 끝까지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명을 벗어야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신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개인이 장사하고 벌어들여 먹고 사니까 국가 것 뜯어 먹고 하는 게 없이 하니까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살자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¹²⁵

바. 신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처

(1) 신소청원법 비공개

북한은 1998년에 신소청원법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공개할 경우 신소가 붓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경험이 있거나 법을 아는 사람만이 신소를 하고 있다.

¹²⁴-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¹²⁵- 한○○, 2010년 7월 22일 면접.

신소청원법이라는 거는 절대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안 해요. 신소청원법이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없고 왜 해설하면 당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네 내적으로 처리하지 주민들이 아는 것은 안 좋아해요.¹²⁶

(2) 당국의 여론 악화 고려

북한에서는 일단 간부에게 신소가 제기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특히 어떤 사안이 여론화될 경우 당국은 신속히 해당 간부를 책벌함으로써 사건의 확대를 차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간부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내 개인 신상에서는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사건차원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을 간부의 말을 듣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 피해를 입었고 부정적이면 간부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소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만약 군당책임비서라고 했을 때 군 주민들이 나를 신소를 하게 되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철직을 당하게 되었다. 북한 신소법에 그렇게 된 거 같다. 그래서 영광군당책임비서가 철직을 당하게 되었다. 성천강자갈을 모으다가 무너져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때 자갈을 주었던 사람들이 죄수들을 동원해서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죄수들이 자꾸 죽어나갔는데 죄수도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자꾸 죽어나간다고 하는 신소가 들어가서 영광군당책임비서가 철직을 당한 것이다. 이일을 시킨 것은 검찰소장이 직접 시킨 것인데 군당책임비서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당책임비서가 시켰다고 신소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군당책임비서는 무조건 철직을 하게 되었다.¹²⁷

¹²⁶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I
II
III
IV
V

(3) 김정일과 당의 권위훼손 행위로 규정

신소가 되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지만 가능하면 신소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것은 김정일의 권위를 동원하여 신소를 하는 것은 김정일과 당에 대한 도전이고 자칫 정치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여 해당자가 신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저도 당기관에 있어서 신소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역시 저 자리에 먼저 있던 사람도 신소를 해서 떨어져 나갔고, 초급당비서를 하나 잡았는데 한○○ 당비서가 중앙당에 올라가서 식건책 검열을 받고 내 자리에 먼저 있던 ○○이 했거든 개가 해서 한○○가 목이 떨어져 나가고 역시 또 ○○이 자체도 죽어야지... 애들이 사회적 여론이 관련이 되서 “아 이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신소한 사람도 죽여요. 조용한 경로로 신소를 했을 경우는 위에서 저들끼리 조용히 무마시키고 본인한테는 이해시키죠.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다. 사회적 환경을 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다. 이러면 상대방이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걸 신소해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게 되니까. 신소가 편안치는 않죠. 차라리 내가 나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같은 내 앞의 살점을 다치면 참지를 않지.”¹²⁸

들어 와서 첫마디로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올라가면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다.” 이러는 거예요. “전체 조선 국민이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면 안되지. 굶어 죽어도 죽는다고 말 못하는 게 북한사람들인데. 굶었다고 말하면 나쁜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극복을 해야지 왜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신소하

¹²⁷-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¹²⁸-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¹²⁹

사. 신소의 기능

북한은 신소청원법을 만드는 등 원칙적 차원에서는 신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난, 정치사회적 통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반장사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연구자들은 가마가 끓어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끓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이러면 확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통치가 세고 무조건 잡아넣고 이것도 맞는데 문제는 한쪽으로 신소로 해서 국가가 주민들의 불만을 뽑아내는데 이게 신소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통제를 해요. 장사를 하는 것만 봐도 무질서하게 하는 거 하고 돈도 받으면서 여기서 하시오 하면서 살피는데 신소도 그런 하나의 통제수단인데 이게 마비되었다면 안 되단 말이죠. 그럼 국가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않나,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지 않겠나?¹³⁰

¹²⁹-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¹³⁰-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의식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관련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에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 전수에 대한 기초설문조사와 선별된 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 내에서 권리구제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신소청원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전과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당국의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대응 논리가 북한매체에 보도되거나, 혹은 북한의 법기관 인력들이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나름 민감한 반응을 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로 설정한 인간의 존엄 실현으로서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을 더 이상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권 자체도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¹³¹ 이에 따라 배급제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사회통제 제도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활동자유의 폭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스스로 생존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체제를 비방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면 적

¹³¹- 2009년 탈북자 인권교실 학습교재 “우리는 인민이다” (NK 지식인연대, 2009.6~10).

I
II
III
IV
V

극적인 의견개진도 허용되는 단계로 변화되었다. ‘돈이면 처벌도 피할 수 있다’는 현실 하에서 ‘돈이 곧 권리’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체제의 민주화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투명한 제도, 선거에 의한 지도자 선출, 법에 의한 지배가 실현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북한 내에서 민주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의 권리개념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약하나마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비교의식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들의 준수요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막연하나마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는 북한 내 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조사나 처벌을 경험하고, 탈북 이후 외부세계를 경험하면서부터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존여건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세계와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정보유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민인권익총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리서치, 2005.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2008.

대한변호사협회. 『2008년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통일연구원, 2009.

이우영 외. 『북한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좋은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최의철 외. 『북한인권 종합대책개발』. 통일연구원, 2004. 1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홍우택 외. 『북한주민 인권익 고취를 위한 인권외교의 방향』. 통일연구원, 2009.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下)』. 평양: 법률출판사, 주체 93, 2004.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Reardon, Betty. *Human Rights Learning: Pedagogies and Politics of Peace*. UNESCO, 2009.

2. 논문

노귀남. “북한주민의 의식에 관한 보고서-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비공개논문, 통일연구원 자문, 2010.

박채복. “EU의 대북인권외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문제의 연계.”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 연구: 대남, 대미,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경섭.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_____.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2월호, 1990.

3. 기타

『로동신문』.

2009년 탈북자 인권교실 학습교재 “우리는 인민이다.” NK 지식인연
대(사), 2009.

〈탈북자면담〉

권○○. 2010년 7월 23일 면접.

김○○1. 2010년 7월 23일 면접.

김○○2. 2010년 7월 24일 면접.

문○○. 2010년 7월 22일 면접.

신○○. 2010년 7월 23일 면접.

이○○. 2010년 8월 27일 면접.

전○○. 2010년 7월 22일 면접.

전○○. 2010년 7월 23일 면접.

정○○. 2010년 7월 24일 면접.

조○○. 2010년 7월 20일 면접.

차○○. 2010년 7월 23일 면접.

채○○. 2010년 7월 19일 면접.

최○○. 2010년 7월 19일 면접.

한○○. 2010년 7월 22일 면접.

〈부록 1〉

■ 북한인권실태 기초조사 설문

본 조사는 북한의 인권침해사례 면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 북한에서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4.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재판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5.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노동단련대에 수용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6.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교화소에 수용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7.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수용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8. 북한에서 고문 혹은 구타를 당하거나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9.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직접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0. 북한에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를 당하거나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1. 북한에서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2. 탈북이후 중개인(브로커) 등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3.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4.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팔린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5.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종교행위 및 미신행위로 인한 처벌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6. 본인이나 가족이 한국 방송 및 비디오를 시청하다 발각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6-1 단속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① 노동단련 () ② 교화 ()
③ 뇌물로 처벌면제 ()

17. 본인이나 가족이 손전화(핸드폰)를 사용하다 발각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7-1 단속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① 노동단련 () ② 교화 ()
③ 뇌물로 처벌면제 ()

18. 북한에서 가족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9. 귀하는 북한에서 남한출신(납북자 및 국군포로)을 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20. 귀하는 북한에서 귀국자(북송교포)를 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21. 본인이나 가족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 단속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21-1 단속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① 물건압수 () ② 뇌물로 처벌면제 ()
 ③ 기타 ()

22. 북한에서 생활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매우 당연하다	당연하다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
각 가정의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생활총화(자아 및 호상비판)				
성분(토대)에 따른 차별				
공개처형(총살)				
여행증 제도				
강제 추방				
장마당 단속				
현지공개재판(동지재판)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학력 (학교이름)	인민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결혼상태	미혼 / 기혼
북한주소	최종거주지 :				
남한 내 가족	이름		관계		입국일자
입국 경로 (남한에 오기 위해 거친 국가)	체류지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국(브로커) 비용	만원
			-	입국비용 부담자	
			-	입국 중개인 이름	
			-		
탈북 (도강) 이후 중국 내 생활	회수	언제(시기)	체류지역	생활수단 (결혼/직장 등)	도강비용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4차	년 월 일			
	5차	년 월 일			
강제송환	회수	언제(시기)	풀려난 시기		처벌내용 (노동단련/교화)
	1차	년 월 일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년 월 일		
	4차	년 월 일	년 월 일		
	5차	년 월 일	년 월 일		

감사합니다.

〈부록 2〉

■ 북한주민의 인권인식 설문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실 때 현재의 인식이 아니라 북한에 생활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 인식의 형성과 주요 내용

1.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있을 경우 문항 2-1로 가세요.

☞ 없을 경우 문항 3으로 가세요.

2-1 북한에서 받았던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
- ② 자본주의 인권논리에 대한 비판

③ 남한 등 자본주의 세계의 열악한 인권 실상 비판

④ 북한인권 우월성에 대한 선전

3. 북한에서 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교육

② 직장, 인민반, 근로단체 등에서의 강연 및 학습

③ 노동신문 등 북한문헌

④ 한국방송 등 외부정보

4. 북한에서 생활할 때 생각했던 ‘인권’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보편적 권리

②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

③ 노동의 권리, 먹고 살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국가가 보장해 주는 권리

④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베풀어 주는 권리

5. 북한에서 생활할 때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북한에서 생활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까?

- ① 매우 인간답게 생활하였다
- ② 인간답게 생활한 편이다
- ③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한 편이다
- ④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다

II.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

7. 북한에서 생활할 때 사회주의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 있을 경우 문항 7-1로 가세요.

☞ 없을 경우 문항 8로 가세요.

7-1 다음은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알았던 권리조항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해당하는 답을 여러개 선택 가능).

- 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 ②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 ③ 신앙의 자유
- ④ 신소와 청원의 권리
- ⑤ 노동에 대한 권리
- ⑥ 휴식에 대한 권리
- ⑦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 ⑧ 교육받을 권리
- ⑨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
- ⑩ 거주, 여행의 자유
- ⑪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보장

8. 북한에서 생활할 때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할 때 근거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형법
- ② 당의 방침
- ③ 김정일의 교시
- ④ 기타()

9. 북한에서 불법행위를 처벌할 때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법이 있다면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 ① 형법
- ② 형사소송법
- ③ 변호사법
- ④ 사회안전단속법
- ⑤ 신소청원법
- ⑥ 기타()

10. 북한에서 형법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1. 북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① 노동단련형

* 2004년 형법에 새롭게 추가된 형벌로서 공식 재판을 거쳐야 하며 보안원이 보내는 노동단련대와는 다른 처벌임

② 유기 노동교화형

③ 무기 노동교화형

④ 사형

12. 북한에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중 알고 있는 절차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① 수사

② 예심

③ 기소

④ 재판

⑤ 상소

13. 정치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에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14. 불법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15. 북한에서 생활할 때 변호인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피소자(범죄인)을 위하여 변호하는 역할
- ② 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
- ③ 피소자(범죄인)의 죄행을 폭로하는 역할
- ④ 기타()

Ⅲ. 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

16. 북한에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 ① 매우 평등하다
- ② 평등한 편이다
- ③ 불평등한 편이다
- ④ 매우 불평등하다

☞ ③, ④항을 선택하였을 경우 문항 16-1로 가세요

16-1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 ① 권력
- ② 토대
- ③ 돈
- ④ 기타()

17. 북한에서 생활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매우 당연하다	당연하다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
보안원, 보위원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				
각 가정의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생활총화 (자아 및 호상비판)				
성분(토대)에 따른 차별				
공개처형(총살)				
현지공개재판				
장마당 단속				
국가에 의한 일방적 직업배치				
여행증 제도				
강제추방				
외부 라디오 청취나 녹화물 시청 단속				

18. 북한에서 생활할 때 관리소(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불필요하다
- ④ 매우 불필요하다

19. 북한사회에서 생활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다
 - ② 조금 있다
 - ③ 거의 없다
 - ④ 없다
20. 사회주의로동법에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21. 사회주의로동법에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른 보충휴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22. 북한에 있을 때 남녀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평등하다
 - ② 평등한 편이다
 - ③ 불평등한 편이다
 - ④ 매우 불평등하다
23. 북한에 있을 때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전 30일, 출산후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IV. 종교에 대한 인식

24. 북한에서 생활할 때 종교는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 ① 신앙으로서 신에 대한 믿음
- ② 아편이나 마약과 같은 행위
- ③ 비사회주의적 행위(미신행위)
- ④ 기타()

25. 평양에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 있을 경우 문항 25-1로 가세요.

☞ 없을 경우 문항 26으로 가세요.

25-1 평양의 종교시설 중 알고 있었던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선택 가능).

- ① 봉수 교회
- ② 칠골 교회
- ③ 장충 성당
- ④ 러시아 정교 정백사원

25-2 종교시설에 대해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 ① 신앙의 성전
- ② 외국인 참관지

③ 대외 지원 획득을 위한 교류 창구

④ 기타()

26. 북한에서 생활할 때 북한 내에 ‘가정 예배처소’(처소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① 들어보았다

② 들어보지 못했다

27. 종교서적들입니다. 북한에서 생활할 때 들어보았던 종교서적이 있으면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① 성경

② 불경

③ 천도교 경전

④ 기타()

28. 북한에서 생활할 때 알고 있었던 종교단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① 조선불교도연맹

② 조선그리스도교연맹

③ 조선카톨릭교협회

④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⑤ 정교회조선신도연맹위원회

⑥ 조선종교인의협의회

〈부록 3〉

■ 북한주민의 신소청원행위 설문

본 조사는 북한주민의 신소청원행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실 때 현재의 인식이 아니라 북한에 생활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소청원에 대한 인식

1. 북한에서 신소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 ①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 해보나 마나 한 것이다
 - ③ 오히려 화를 입는다
 - ④ 기타

2. 북한에서 신소자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순서를 매겨 여러개 선택)
 - ① 용기 있는 사람이다
 - ② 동정 가는 사람이다 ☞ 이곳에 답변한 사람은 2-1번으로 가세요
 - ③ 감시대상이다
 - ④ 불평분자다
 - ⑤ 함께 생활하기에 시끄러운 사람이다
 - ⑥ 기타

2-1. 북한에 계실 때 신소자를 왜 동정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 ① 앞으로 그 사람에게 부닥칠 일이 걱정되어서
- ②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어서
- ③ 기타

3. 북한에서 생활할 때 본인이 신소·청원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이곳에 답변한 사람은 3-1, 2, 3, 4, 5, 6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 ⇨ 이곳에 답변한 사람은 4번으로 가세요.

3-1. 어떤 생각을 품고 신소를 하였습니까?

- ①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 이곳에 답변한 사람은 3-2번으로 가세요.
- ②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함을 풀려고 ⇨ 3-3번으로 가세요.
- ③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보려고 ⇨ 3-4번으로 가세요.
- ④ 기타

3-2. 신소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왜 가졌습니까?

- ① 당에 대한 믿음
- ② 안면이 있어서(특정개별간부와의 친분관계)
- ③ 막연하게
- ④ 기타

3-3. 왜 신소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① 북한생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느낀바가 있어서
- ② 신소자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 ③ 개인적 이유로(복잡계층이어서, 지난기간 신소경력이 있어서)
- ④ 기타

3-4. 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습니까?(순서를 매겨 여러개 선택)

- 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 ② 주변사람들의 나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이 문제로 자녀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 ④ 기타

3-5. 신소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결심을 했었는가? (순서를 매겨 두개 선택)

- ① 조용히 살아가기
- ② 개인복수
- ③ 자살
- ④ 탈북
- ⑤ 기타

3-6. 북한에 계실 때 신소처리를 받고 나서 신소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싶었습니까?

- ① 신소는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② 될 수 있는 한 신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꼭 해라

- ④ 해도 좋다
- 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 ⑥ 기타

4. 북한에서 신소를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모름

5. 신소를 해본적이 없는 북한주민들은 왜 사람들이 신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② 개별간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억울해서
- ④ 원래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 ⑤ 모름
- ⑥ 기타 ()

II. 신소청원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

6. 북한에서 생활할 때 신소청원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7. 북한에서 신소자가 제기한 문제를 무엇에 근거해 처리하고 생각합니까?

- ① 신소내용의 정확성
- ② 간부 의견
- ③ 당의 방침
- ④ 기타

8. 북한에서 신소처리 담당자들이 주민들의 신소처리를 공정하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조금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아주 그렇지 않다
- ⑤ 모르겠다

9. 신소처리 담당자들이 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소받은 사람이 간부이기 때문에
- ② 신소받은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때문에
- ③ 신소자가 존재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기타

10. 북한사회에서 신소가 필요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이곳에 답변한 사람은 10-1번으로 가세요.

- ③ 불필요하다
- ④ 매우 불필요하다

10-1. 북한사회에서 신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신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기 때문에
- ② 주민들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일부라도 해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 ④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간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타

11. 북한에 있을 때 본인의 친구가 신소자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 ① 멀리할 것이다
- ②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할 것이다
- ③ 크게 개의치 않는다
- ④ 변함없이 대할 것이다
- ⑤ 기타

12. 북한사람들은 신소자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봅니까? (순서를 매겨 두 개 선택)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동정 가는 사람이다		
감시대상이다		
불평분자다		
함께 생활하기에 시끄러운 사람이다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예의 함의	황병덕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입금자 (입금일자)	-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www.kinu.or.kr